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조명식 예산분석관
이동현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장유진 행정실무관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예산안 개요 / 5

- 1. 현 황 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9

II. 주요 사업 분석 / 13

〈일반회계〉

- 1. 지방교부세 정률분 산정방식 개편안 분석 13
- 2. 사회연대경제 총괄·조정 기능 신설에 따른 기존 지원체계 재구축 필요 23
 - 2-1.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간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24
 - 2-2.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사업의 추진방식 및 운용구조 검토 필요 28
- 3. AI통합민원플랫폼 제도적 기반 및 수요 검토 필요 34
- 4.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분석 39
 - 4-1. 공공데이터 TOP100사업 성과·품질 검증에 기반한 개방계획 수립 필요 40
 - 4-2. AI학습용 데이터 범정부 사전 조정체계 강화 필요 44

CONTENTS

5. 햇빛소득마을 확산사업 추진단의 정책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50
6.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사업 분석	56
6-1.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의 유사 사업 간 과업 조정 필요	57
6-2. 재난안전 AI데이터구축 타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62
7. 법적 근거 없이 예비비로 신설된 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66
8. AI행정업무 적용사업 부처별 AI Agent와의 연계방안 모색 및 협업·소통AI 구독료 지원 규모 적정성 재검토 필요	71
9. 국민참여정책 추진 사업계획 보완 필요	79
10.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난안전 분야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84
1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89
12.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필요	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 사회연대경제 정책추진 지원 사업 일원화 필요	101
14.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규모 및 주기 재검토 필요	106
1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방우대원칙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11
16.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기준 재설계 방안 검토 필요	116
〈미래대응기금〉	
17. 지역거점시설 활용실태에 기초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투자계획 재검토 필요	120

[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127

1. 현 황	12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1

II. 주요 사업 분석 / 133

〈일반회계〉

1.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 필요	133
2. 진술영상녹화실 신설 전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필요	140
3.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의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필요	143
4. 공무원 대체 일용인력 채용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48
5.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용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51

[소방청]

I. 예산안 개요 / 157

1. 현 황	15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59

II. 주요 사업 분석 / 161

〈일반회계〉

1. 시범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4족보행로봇 도입 물량 및
시범운영 계획·평가체계 수립 필요 161
2. 119항공정비실 정비조직인증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조속 추진 필요 167
3.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산정근거 보완 및 사업준비 철저 필요 ... 170
4. 응급헬기 통합관제체계 항공국 비용분담 및 이중화 구성·배분 재검토 필요 ... 175
5. 연기감지기 보급 관련 유사사업의 부처 간 중복·분산 추진 조정 및
확대 수요 반영 필요 180

[인사혁신처]

I. 예산안 개요 / 187

1. 현 황 18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9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92

II. 주요 사업 분석 / 193

〈일반회계〉

1. 5급 조기승진제 적정 운영 필요 193
2.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도입에 따른 교육예산 정비 및
사업의 신속 확대 검토 필요 199

〈공무원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규모의 적정성 확인 필요 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209

1. 현 황 20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1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11

II. 주요 사업 분석 / 212

〈일반회계〉

1. 선상투표의 전자팩스 방식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 검토 필요 212
2. 위탁선거경비에 관한 국회의 재정통제 강화 필요 217
3. A-WEB 운영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23

[중대범죄수사청]

I. 예산안 개요 / 229

- 1. 현 황 22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3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1

II. 주요 사업 분석 / 232

〈일반회계〉

- 1. 중수청 인력의 적기 총원 및 관리 필요 232
- 2. KICS 구축 전 업무 수행 문제점 최소화 필요 23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241

- 1. 현 황 24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3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59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01억원(44.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8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11억원이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7,065	153,126	153,126	148,639	△4,487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2,781	26,469	26,469	111,064	84,595	319.6
합 계	129,846	179,595	179,595	259,703	80,108	44.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84조 7,03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6,899억원(△2.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조 5,39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조 1,643억원이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2,677,673	73,173,076	82,661,055	80,539,253	△2,121,802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15,772	3,732,472	3,732,472	4,164,362	431,890	11.6
합 계	86,093,445	76,905,548	86,393,527	84,703,615	△1,689,912	△2.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상 품권 발행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교부세 정률분 개편안은 추세치 상회분에 대해 법정 산식에 따라 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하회 시 보전 여부와 규모는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 세수 변동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귀속되므로, 적립과 보전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재정안정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주요 일반재원을 축소하고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 재량을 확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가용재원 변화를 점검하고 재정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원 구성과 운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별 지역 공동체시설의 활용 저조와 운영상 한계에 대응하여 기존 공간의 재활용·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대규모 복합센터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기존 시설의 분포·이용실적과 유희화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자규모와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다부처·다수 사업 분산구조 개선을 위해 근거 법령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 총괄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연계하여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지원대상 조직을 포괄하는 또 다른 집행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존 부처별 지원체계의 총괄·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을 통한 투·융자 재원 출자에 앞서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의 한계와 미충족 금융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전담기관의 역할과 적정 지원방식 및 사업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국비지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사업 추진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국비교부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집행부진 사례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차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963억 7,900만원 규모이다.

①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의 수립,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인재 발굴, 사회연대경제 자생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지원 및 전문적 연구 수행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반영되었고, ②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2026.6.2.)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③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 시 발생하였던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민군복합항 주변지역의 발전 촉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신규로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5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40
	햇빛소득마을 확산	461
	국민참여정책 추진	1,271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44,930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3,661
	사회연대경제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	2,704
	정보보안혁신 및 정보시스템 복원력 강화(정보화)	4,688
	과천청사 주변도로 관련 배상	10,183
	빛의위원회 운영	7,882
	AI기반원스톱법과학플랫폼연구개발(R&D)	3,900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	3,282
	재난심리회복지원플랫폼 구축(정보화)	1,000
	현장맞춤형재난정보전달기술개발(R&D)	2,700
	기후위기극한재난대응지역문제해결AI플랫폼(R&D)	4,000
	소하천·세천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789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개)	민군복합항 주변 도로개설	3,388
합 계		96,379

자료: 행정안전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재해위험지역정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등이 있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여 증액되었고, ②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은 공공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비용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운영 중인 노후 공통장비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또한, ③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되었고, ④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사업은 지역안전지수 자살분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개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증액되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개)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정보화)	69	69	171	102	147.8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 (정보화)	838	838	1,099	261	31.1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671	7,671	10,660	2,989	39.0
	부동산교부세	4,698,208	4,698,208	6,763,931	2,065,723	44.0
	정부조직진단관리	681	681	931	250	36.7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26,152	26,152	60,338	34,186	130.7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92,045	192,045	258,962	66,917	34.8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3,973	3,973	7,891	3,918	98.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 활성화지원(정보화)	40,662	40,662	72,252	31,590	77.7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정보화)	22,524	22,524	40,039	17,515	77.8
	정부포상	13,368	13,368	22,021	8,653	64.7
	국가상징선양	147	147	547	400	272.1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 구축(정보화)	190	190	821	631	332.1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 (정보화)	292	292	2,797	2,505	857.9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 (정보화)	3,484	3,484	8,602	5,118	146.9
	기록정보서비스	1,254	1,254	1,689	435	34.7
	기록관보존시설관리	7,637	7,637	12,573	4,936	64.6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7,763	27,763	40,672	12,909	46.5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3,390	3,390	5,975	2,585	76.3
	지역안전개선컨설팅	5,588	5,588	12,049	6,461	115.6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215	215	2,218	2,003	931.6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109	109	145	36	33.0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 연계형기술개발(R&D)	1,500	1,500	5,500	4,000	266.7
	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 지원(R&D)	2,000	2,000	5,000	3,000	150.0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 운영(정보화)	509	509	788	279	54.8
	정부혁신조직실(총액)	85	85	111	26	30.6
	기록원기본경비	653	653	2,081	1,428	218.7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351	351	629	278	79.2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3,476	3,476	4,855	1,379	39.7
	보통교부세	61,698,352	66,237,321	67,575,437	1,338,116	2.0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63,247	819,399	835,984	16,585	2.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90,811	204,849	208,996	4,147	2.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54,058	1,024,248	1,044,981	20,733	2.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410,722	410,722	514,181	103,459	25.2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47,880	147,880	160,223	12,343	8.3
	인건비(본부)	192,236	192,236	204,345	12,109	6.3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11개)	접경권발전지원(자율)	53,271	53,271	89,113	35,842	67.3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자율)	11,581	11,581	18,938	7,357	63.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자율)	4,715	4,715	6,657	1,942	41.2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1,700	1,700	2,605	905	53.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23,753	23,753	32,034	8,281	34.9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2,837	2,837	6,198	3,361	118.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제주)	164	164	315	151	92.1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세종)	26	26	37	11	42.3
	특수상황지역개발	199,449	199,449	230,932	31,483	15.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50,000	1,150,000	1,450,000	300,000	26.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1,062,959	1,062,959	1,152,998	90,039	8.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지방교부세 정률분 산정방식 개편안 분석

가. 현 황

지방교부세 정률분(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¹⁾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근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025년 교부세 모수의 결산액에 내국세 10년 이동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2025년 정산분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조 3,381억원이 증액된 67조 5,754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8,359억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2,089억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1조 449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통교부세	60,401,769	61,698,352	66,237,321	67,575,437	1,338,116	2.0
지역현안특별교부세	658,551	763,247	819,399	835,984	16,585	2.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38	190,811	204,849	208,996	4,147	2.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23,189	954,058	1,024,248	1,044,981	20,733	2.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 1632-300, 1632-301, 1644-300

나. 분석의견²⁾

첫째, 지방교부세 개편안은 세수 호황에 따른 추세치 상회분은 법정 산식에 따라 기금에 적립하는 반면 하회 시 보전 여부와 규모는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어 세수변동 위험이 지방에 비대칭적으로 귀속되므로, 적립과 보전을 제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재정안정화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세수 변동의 이익과 위험을 법정률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구조이다. 반면 개편안에서는 추세치 상회분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어 교부세가 사실상 추세선을 상한으로 하게 되나, 하회 시에는 감소한 내국세에 법정률을 적용한 만큼 현행과 같이 교부세가 줄어든다. 이때 적용되는 것은 ‘국가에 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뿐이며, 보전의 개시 요건, 보전규모,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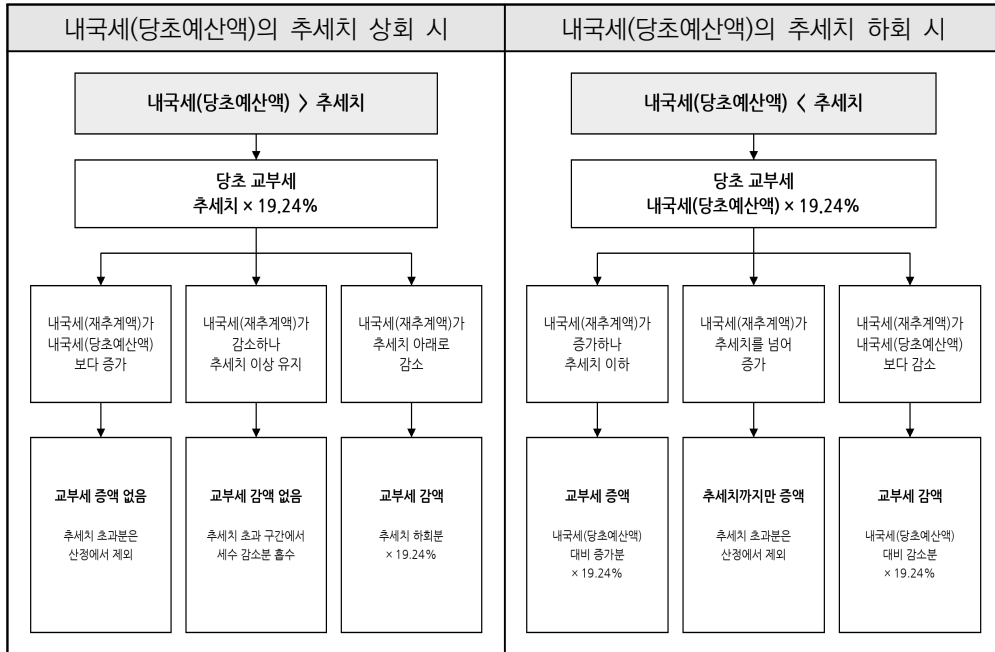
[지방교부세 정률분 현행 및 개편안 산정방식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재원이전 기준	세수 증가·감소를 동일 법정률에 따라 반영		추세치 상회분 제외는 법정 산식으로 결정, 하회 시 지원 여부는 정부 재량 결정	
세수 증가 (추세치 상회)	증가분의 19.24%만큼 교부세액 증가		추세치 상회분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해당 증가분의 교부세 미배분	
세수 감소 (추세치 하회)	감소분의 19.24%만큼 교부세액 감소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 반영, 지방재정 여건 악화 시 지원 가능	
지방의 사전 예측 가능성	산식과 기초자료에 따라 교부세 감소효과 추계 가능		지원 여부·규모가 정해지기 전에는 확보재원 예측에 한계	
2027년 예산안 (백만원)	보통교부세	97,150,757	보통교부세	67,575,437
	특별교부세	3,004,662	특별교부세	2,089,961
	합 계	100,155,419 ¹⁾	합 계	69,665,398

주: 1) 현행 방식 적용시 보통·특별교부세 합계액은 101조 6,715억원이나 전년도 정산분 반영시 100조 1,554억원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2026.10.) 내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에 기술하였다.

[내국세 변동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구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컨대 추세치를 330조원으로 가정할 때 내국세가 30조원 상회하면 현행 산식에서는 정률교부세가 5조 7,720억원 증가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증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30조원 하회하면 같은 규모의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할지는 정부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세입 증가 국면에서는 증가분이 중앙재정에 귀속되고, 세입이 추세치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은 지방교부세 재원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추세치 대비 내국세액 상회·하회 시 보전방식별 지방교부세 비교]

(단위: 조원)

구분	보전방식 가정	내국세	현행 교부세(A)	개정안 교부세(B)	B - A
추세치 30조원 상회	-	360	69.264	63.492	△5.77
추세치 30조원 하회	보전 없음	300	57.720	57.720	-
	50% 보전	300	57.720	60.606	2.89
	전액 보전	300	57.720	63.492	5.77

주: 추세치 내국세 330조원, 법정률 19.24%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모두 내국세가 2027~2028년에는 추세치를 상회하고 2029~2030년에는 추세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⁴⁾에 따르면 추세치 상회분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편안의 지방교부세(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포함)는 현행 산식보다 2027년 32.3조원, 2028년 13.8조원 적게 산정된다. 반면 2029년과 2030년에는 내국세가 추세치를 하회하여 기금 적립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편안과 현행 산식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는 같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세수입 전망	NABO	480.5	593.7	621.9	647.7	673.3															
	정부	478.6	584.4	606.7	625.5	644.8															
지방교부세 전망	NABO	74.0	77.4	103.1	122.3	127.3															
	(현행대비 감소분)	-	△32.3	△13.8	-	-															
	정부	74.0	77.2	101.0	117.1	120.7															
추가세수 전망	<table><thead><tr><th>연도</th><th>NABO</th><th>정부</th></tr></thead><tbody><tr><td>2026</td><td>167.8</td><td>158.5</td></tr><tr><td>2027</td><td>71.7</td><td>57.3</td></tr><tr><td>2028</td><td>-53.8</td><td>-63.4</td></tr><tr><td>2029</td><td>-49.7</td><td>-56.0</td></tr></tbody></table>						연도	NABO	정부	2026	167.8	158.5	2027	71.7	57.3	2028	-53.8	-63.4	2029	-49.7	-56.0
	연도	NABO	정부																		
2026	167.8	158.5																			
2027	71.7	57.3																			
2028	-53.8	-63.4																			
2029	-49.7	-56.0																			

주: 1. 추가세수는 내국세 실적 및 전망 추이를 바탕으로 추세치를 계산하여 연도별 내국세 전망치와 추세치 차액으로 산정

2. 지방교부세 전망액은 교부세 정률분과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모두 합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세치는 과거 내국세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2년 전 내국세 증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추세치가 상승하면서 내국세가 추세치를 하회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 NABO 중기재정전망」.(2026.10.)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정악화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급격한 수입·지출 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2023년과 같이 세입 재추계 시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세치 상회분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미리 제외한 데 따른 결과로서, 세수 변동에 대응한 별도의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손 규모가 추세치를 하회하는 수준에 이르면 지방교부세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감액되므로, 세수 감소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무엇보다 재정안정화는 세입 증가기에 적립한 재원을 감소기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때 이루어진다. 보전 여부가 사후적 재량에 맡겨지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전 결정 전까지 자체 적립재원 사용, 지출 조정, 지방채 발행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동일한 국세 변동이라도 자치단체별 세입구조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달라, 개별 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중앙의 단일 기준으로 보전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총세입 대비 보통교부세 비중은 1.2%에서 83.8%까지 분포하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에도 불교부단체인 A시의 최종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교부단체인 B시는 10.4% 감소하였다. 재정여건이 유사한 C시($\Delta 16.3\%$)와 D군(0.7%)은 변동 방향도 서로 상이하다.

[2023년도 내국세 세수결손발생 시 자치단체별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A시	당초예산(A)	2,206,071	2,323,515	117,444	5.3
	최종예산(B)	3,301,163	3,177,699	△123,464	△3.7
	당초대비증가율 ¹⁾	49.6	36.8	-	-
B시	당초예산(A)	649,930	616,683	△33,247	△5.1
	최종예산(B)	841,051	753,637	△87,414	△10.4
	당초대비증가율 ¹⁾	29.4	22.2	-	-
C시	당초예산(A)	696,838	704,298	7,460	1.1
	최종예산(B)	1,035,394	866,209	△169,185	△16.3
	당초대비증가율 ¹⁾	48.6	23.0	-	-
D군	당초예산(A)	273,649	285,848	12,199	4.5
	최종예산(B)	408,292	411,316	3,024	0.7
	당초대비증가율 ¹⁾	49.2	43.9	-	-

주: 1)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가율(B-A)/A를 의미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점에서 개별 자치단체의 세입 변동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그런데 개편안은 보전의 실시 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여 자치단체가 여전히 자체 안정화 재원을 적립해야 하므로, 안정화 재원의 중복 보유와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재원의 관리·배분 권한만 중앙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보전재원의 규모도 제한적이다. 보전지출로 편성된 5조원은 현행 대비 교부세 감소 규모의 16.4% 수준인데, 2023년과 2024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 규모는 각각 9.9조원과 4.5조원으로 2023년 한 해 감소분만으로도 보전재원의 두 배에 가깝다. 반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재원의 상당 부분은 계속적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에 배정되어 있어, 세수가 둔화되어 신규 적립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기존 사업의 지출수요는 남게 된다.

[2023·2024년 세수결손 규모와 교부세 정률분 감정산 규모]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 결손	교부세 정률분 감정산				
		2023	2024	2025	2026	합계
2023년	51.9조원	71,689	-	28,301	-	99,990
2024년	23.4조원	-	21,140	-	23,769	44,90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내국세가 추세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추세치에 법정률을 적용한 교부세액이 확보되도록 보전 의무와 보전액 산식, 지급 시기 및 정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 정률분 산정방식 개편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주요 일반재원을 축소하고 자원배분에 관한 정부 재량을 확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가용재원 변화를 점검하고 재정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원 구성과 운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정 수요와 주민 선호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재정부족액('22년, 61.7조원→'26년, 85.4조원) 대비 교부세('22년, 53.0조원→'26년, 59.8조원)의 증가가 제한되어 왔다. 조정률이 개별 자치단체의 실제 재원 부족 정도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보전 수준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이러한 여건에서 세수 증가분 배분을 제한하면 지방의 재정 수요와 가용재원 간 불균형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5년간(2022~2026년) 보통교부세 규모 및 조정률]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준수요액(A)	1,214,619	1,478,110	1,427,691	1,417,947	1,473,438
기준수입액(B)	597,694	690,396	656,924	607,736	619,424
재정부족액(C=A-B)	616,925	787,714	770,767	810,211	854,013
보통교부세 총액(D)	530,492	643,016	578,195	584,752	598,474
조정률(D/C)	89.3	81.6	75.0	72.2	70.1

주: 1. 본예산 기준

2. 불교부단체 분권교부세 보전분 및 제주특별자치도분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나아가 세수 호황의 효과 역시 지역에 고르게 귀속되지 않는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그 효과는 사업장 소재 지역의 세입에 반영된다. 실제 화성·평택·용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약 7,600억원 수준에서 2027년 각각 1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관련 세원이 적은 대다수 지역은 자체세입의 증가가 제한적이어서 지방교부세가 세수 증가의 효과를 공유하는 주된 경로가 된다. 이를 감안하면 추세치 상회분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편안은 이들 지역의 재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측면에서도 지방재정은 재원활용의 자율성 제약이 커지는 추세이다. 국고 보조사업은 2020년 110.4조원에서 2026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7.4%, 대응지방비는 같은 기간 29.8조원에서 44.9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은 40.5%에서 34.1%로 낮아졌다.

2027년 대응지방비 추계액도 47.1조원으로 전년보다 2.2조원 증가하였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법정 복지지출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더라도 축소되기 어려우므로, 교부세의 형식적 증감률과 별개로 지방의 실질 가용재원과 자체사업 여력이 충분히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7년간 지방세입 구조 및 세출여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2	2024	2026	연평균 증가율
재원 구조	지방교부세	50.3	81.0	64.5	69.3	5.49
	세입대비비중	16.4	23.1	18.3	20.3	3.62
	국고보조금	60.7	73.2	83.7	99.0	8.49
	세입대비비중	19.8	20.8	23.8	29.0	6.57
	재정자주도	69.30	75.95	73.13	69.09	△0.05
세출 여건	세출예산	252.3	288.3	310.1	341.9	5.19
	국고보조사업	110.4	132.4	146.9	169.1	7.36
	대응지방비	29.8	36.4	38.5	44.9	7.07
	사회복지지출액	75.1	88.1	103.2	117.8	7.79
	자체사업 비중	40.5	37.4	36.2	34.1	△2.83

- 주: 1. 지방교부세: 2025년까지는 최종예산 2026년은 당초예산 기준
 2. 국고보조금 각 연도 당초예산 순계 기준
 3. 세입·세출예산: 2025년까지는 최종예산, 2026년은 당초예산 기준(일반+특별회계)
 4. 재정자주도: 2025년까지는 최종예산, 2026년은 당초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개편안 기준 69조 6,654억원으로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약 30조 4,900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15조 2,662억원을 지방에 지원할 계획이나 이 가운데 5조원은 향후 보전에 대비한 예치재원이고 용도 제한 없이 교부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원이다. 나머지 6조 7,662억원은 특정 지역 지원과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계정 전체를 당해 연도 지방의 가용재원 확충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세출 측면에서도 특정지역 지원과 중앙부처 설계 사업이 44.3%를 차지하는 반면, 용도 제한이 없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의 11.5%에 해당하며 배분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원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 재량이 확대되는 점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배분하는 지방의 고유재원으로, 법정률 방식은 총액 변경에 국회 입법절차를 요구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도 특별교부세 수시배정과 세수결손 시 미교부·불용 등 집행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재량이 상당한데, 개편안은 이를 재원 규모 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교부세 총액은 추세치와 기금 전입액에 따라 달라지고, 하회 시 보전 여부와 수준도 정부가 결정하며, 기금 이전 재원의 상당 부분은 사업계획 평가 등을 거쳐 배분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실질적 재정통제가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할 재원의 규모·시기·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행 및 개편안 정부 재량범위 비교]

단계	결정 사항	현행	개편안
규모 산정	추세치·초과세수 산정	해당 없음	정부 추계에 따라 결정
	추세치 하회 시 보전	해당 없음 (내국세 증감 반영)	보전 여부·수준 정부 재량 결정
배분	산정 제외 재원의 지방 환원	해당 없음	기금 지방계정 사업 선정·배분을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으로 결정
	일반재원 배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법령)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정부 재량 결정
집행	배정 시기·규모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지정,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정 시기 정부 재량	
정산	재추계-결산 차이 조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산	기금 전입액·교부세 정산액 간 조정 기준 정부 재량 결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별 일반재원 감소와 목적재원 증가, 실질 가용재원의 변화를 제시하고, 법정 이전재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 재량의 범위와 행사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 총괄·조정 기능 신설에 따른 기존 지원체계 재구축 필요

사회연대경제조직 추진체계 구축 사업¹⁾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및 교육·인재양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49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	-	-	44,930	44,93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조직 추진체계 구축 내역사업별 목적 및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목적 및 내용	예산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체계적 추진전략, 통합 정책방향 제시	90
사회연대경제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및 민관협력을 통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전문 인재 발굴	2,315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	· 민간기금 조성 지원 및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원·육성	41,300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 운영	· 총괄지원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설치·운영	1,225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938-301

2-1.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간 연계·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¹⁾ 중 교육훈련 부문은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2억원, 현장 기반 교육운영 및 성과측정에 16억 1,500만원, 사회연대경제 전문인재 육성 등에 5억원이 편성되었다. 아울러 연구 부문은 정책개발, 통계 작성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정책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12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회연대경제 주요 교육·연구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안
교육훈련· 인재육성	교육콘텐츠 개발·확산	· 영상형·시각화형 콘텐츠 제작 · 나라배움터 등과 연계	200
	현장기반 교육운영· 성과측정	· 교과·산학연·해외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연계 교육운영 및 성과측정	1,615
	사회연대경제 전문인재 육성	· 재직자 교육, 취업준비생·전직 희망자 직업훈련 · 학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연구자 육성 등	500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		·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추진실적 평가 지원, 실태조사·통계 작성 · 국내외 교류·협력	1,22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938-301

나. 분석의견

첫째,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부처별 분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근거법 제정으로 행정안전부에 총괄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이와 연계한 신규사업은 기존 부처별 지원 체계에 더하여 지원대상 조직 전반을 포괄하는 집행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을 포괄하며, 각 조직 유형별로 소관부처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훈련, 판로지원 등 유사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어 사업 간 중복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총괄부처는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하면서 사업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목표와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령 제정과 연계한 동 사업은 개별 조직 사업에 더해 해당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사업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신규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례로 교육·인재양성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대학연계 교육, 직업훈련 등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사회연대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조직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사업의 대상·내용·실적과 지원 공백에 대한 분석 없이 별도의 포괄적 교육·인재양성 체계를 추가할 경우 기능 및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나, 현 사업계획에는 기존 사업과의 기능조정이나 역할분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학연계 교육의 경우에도 사회연대경제를 구성하는 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에 대해 기획예산처 소관 사업에 15개 선도대학 운영 및 특화교육·취창업 연계 예산 154.4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재 육성에 21억원을 편성하였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대체로 소규모로 지역 현장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조직 유형별 운영방식도 다양하므로, 특정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기

보다 기존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에 연계하거나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특강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연계 교육은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양 부처의 사업계획에서 개별 추진의 필요성이나 조정·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연대경제 해당 개별 조직 지원사업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7년 예산안 내역사업 및 주요내용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 자활기업 사업관리 및 보조금 지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교육훈련, 취·창업지원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840,897	893,086
고용 노동부	사회적 기업지원	· 창업·판로·성장지원(교육·멘토링 포함) · 인식개선·자금지원·생태계활성화 , 청년일경험 · 성장지원센터 운영비, 전문가간담회 등 지원	85,872	94,344
기획 예산처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협동조합 선도대학 운영, 온라인교육, 현장전문가 양성, 정책개발, 경영공시 · 이차보전, 거점조직 육성 등	2,930	81,811
행정 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 판로지원, 연구용역·DB운영 등 · 기업당 보조금 지원	5,250	4,460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경영 지도	· 일자리지원, 벤처기업주관(인식개선, 교육행사) · 기업인프라지원: 소셜벤처 판별·통계조사 포함 · 기술·경영지도: 소셜벤처 지원·멘토링 포함	3,778	3,501

주: 1. 예산(안)은 해당 세부사업 기준

2.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타 부처와 달리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별도 편성된 세부사업은 부재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학 연계 사회연대경제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비교]

구분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주요 목적	사회연대경제 현장교육 및 차세대 인재·전문인력 양성	협동조합 특화교육 및 취·창업 연계, 현장 전문인력 양성
대학 연계 교육	대학 교과·산학연·해외대학 연계 대학 연계 교육과정(현장기반) 운영	협동조합 특화교육(선도대학 지정), 취·창업 연계
대학 연계 교육 예산	16억 1,500만원	154억 3,500만원
	5억원	
산출내역	(16개 대학×1억원) +사업관리 등	선도대학 15개×2.5억원, 500개팀×1,500만원, 기타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의 기능 구성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정책센터는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통계 작성·관리, 국내외 교류·협력,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할 계획이나, 실태조사·통계관리·정책연구 등의 기능은 개별 조직을 담당하는 부처와 전문기관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정책센터가 이와 동일·유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기존 전문기관과 기능이 중첩될 수 있으며, 컨설팅·국제협력 등 개별 조직 지원까지 수행할 경우 기존 조직별 지원체계에 사회연대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추가되는 지원체계의 중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사업의 연계·조정 및 성과관리 등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별 조직에 대한 교육·인재양성·통계관리 등은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사업을 우선 활용하되, 기존 지원체제로 충족되지 않는 현장의 정책수요와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의 보완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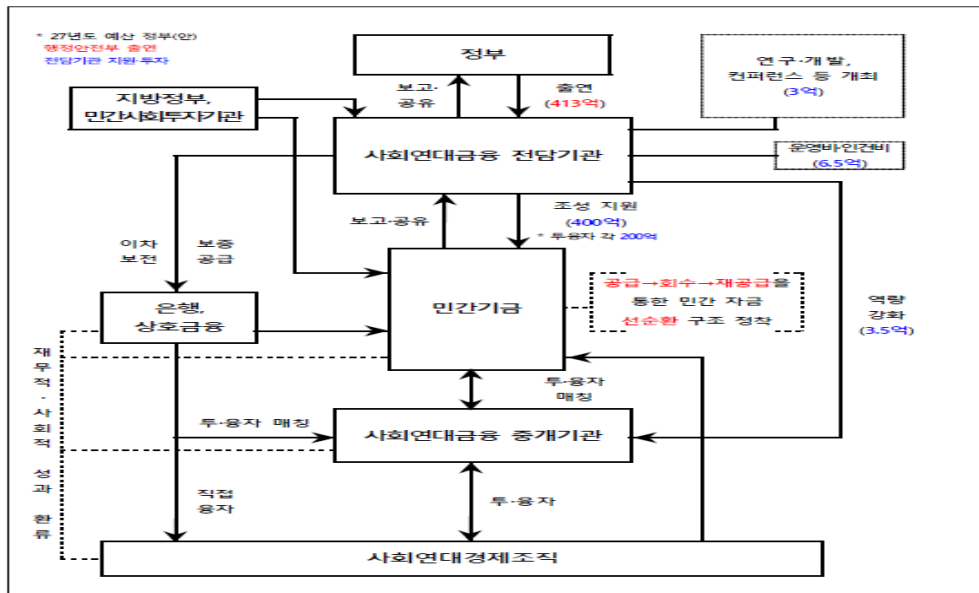
2-2.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사업의 추진방식 및 운용구조 검토 필요

가. 현 황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사업¹⁾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 등 전담기관의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사업비 406억 5,000만원과 기관운영경비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41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정부가 전담기관으로 예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413억원을 출연하면 기관은 운영경비 등(13억원)을 제외한 400억원으로 민간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이 민간기금이 중개기관 및 금융기관 자금과 매칭되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운용구조(안)]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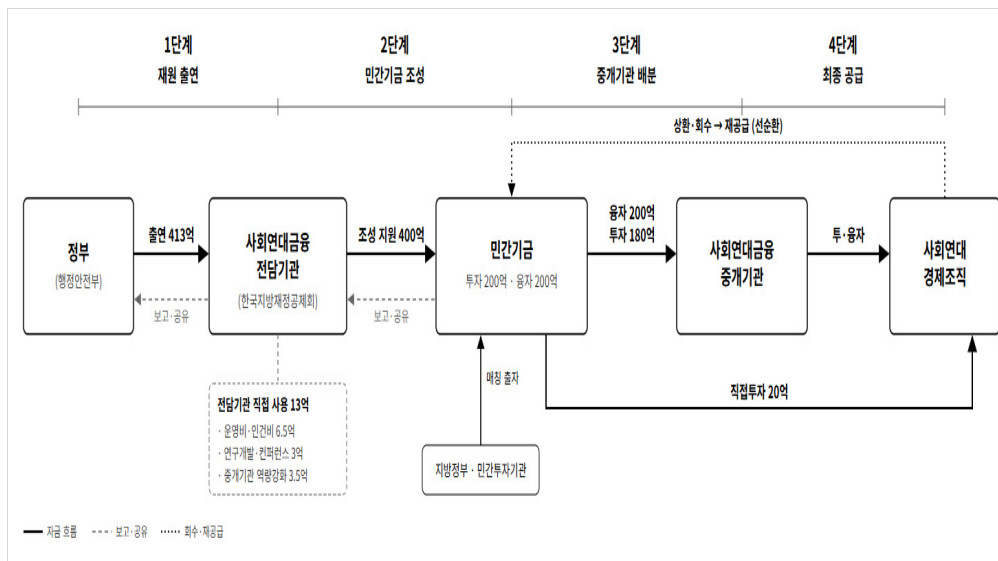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1938-301

나. 분석의견

첫째,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와 미충족 금융 수요를 분석하여 지원방식·사업규모 및 기존 지원체계와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사업은 정부의 재정출연부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최종 자금공급까지 전담기관, 민간기금 및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거치는 4단계의 자금전달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출연금 413억원 중 400억원을 민간기금 조성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며, 부처 제출자료에서는 이를 용자재원 200억원과 투자재원 200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간기금에서 용자재원 200억원은 전액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투자재원 200억원 중 180억원은 중개기관을 경유하며 20억원은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성장금융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의 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공급규모도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공급을 확대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개별 보증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은행권은 2026~2028년 4조 2,5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방식도 직접대출에서 나아가 보증·이차보전·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7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의 확대를 추진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 VC가 공동 출자한 임팩트펀드 등 투자방식의 금융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금융지원체계 일부 예시]

지원수단	기관	주요 내용
총괄 관리	금융위 (사회연대금융협의회)	·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총 2조원 공급계획, 공급실적 및 제도개선 과제 관리
대출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 미소금융 공급규모 연간 60억원 → 150억원, · 은행권 연계 '26~'28년 4조 2,500억원 공급계획
보증	금융위(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확대(신보 2,700억원),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개별 보증한도 5억원 → 7억원
이차보전	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협약은행 대출 연계, 이차차액 2.5%p 지원(연간 약 250억원 민간금융 연계 예상)
투자	금융위(한국성장금융 등), 중기부(한국벤처투자)	· 임팩트펀드 운영, 사회투자펀드 확대 추진 중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공식누리집 공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행정안전부는 기존 금융지원체계는 그 대상과 한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전담기관은 민간기금을 통해 맞춤형 투·융자를 공급하여 기존 금융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간 중심의 금융생태계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례로, 동 사업의 대상 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반을 아우르며 기존 금융지원사업이 대부분 조직당 지원한도가 1~5억원 수준이고 5년 내외 기간을 두는 데 반해 동 사업은 대상 조직 당 한도를 3~20억원 내외로 하고 회수 기간도 8~10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전담기관이 기존 금융지원체계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지원한도 등의 확대에서 나아가, 기존 체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금융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 간 역할분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원체계에서도 개별 보증한도 상향, 전용 우대보증 및 사회투자펀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이 보완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조직당 지원한도가 3~20억원으로 광범위하여 소규모 투·융자는 기존 대출·보증의 지원한도와 중첩되므로, 지원금액뿐 아니라 지원대상, 심사기준 및 회수조건을 함께 비교하여 기존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조직과 그 제약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액·장기 투·융자는 조직별 자금수요의 규모와 용도, 필요한 회수기간 등을 조사하여 계획된 지원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규모와 지원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공급실적과 제도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담기관과 기존 지원체계 간 정보공유 및 실적관리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관의 투·융자가 이와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기관별 지원의 중복 여부와 상호 보완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전체 금융공급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회연대금융협의회 체계를 활용하여 기관 간 지원영역을 조정하고 전담기관의 공급실적과 정책성적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본을 유인한다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목표 매칭비율 및 규모, 정부와 민간 간 손실분담 방식, 회수·재투자 기준 등 운용구조의 기본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위험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수익성과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민간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모집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확보방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위험부담 범위가 사전에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은 정부출연금 400억원에 대응하여 민간자금 100억원 이상을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참여주체와 출자방식·조건, 납입일정 및 모집목표 미달 시 정부출연금의 집행 여부와 규모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와 민간 간 위험분담 구조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위험분담과 관련하여 공공재원의 우선손실 충당, 초과수익의 민간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운용방안은 향후 전담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나 임팩트투자는 수익성과 회수기간 등의 측면에서 일반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후순위로 출자하거나 일정 범위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등의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면서 초과수익은 민간에 배분되는 구조가 결합될 경우 정부의 재정손실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민간기금 운용사와 중개기관이 투·융자 심사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유인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민간의 출자순위, 손실분담 순서와 한도, 수익배분 방식 등은 정부의 위험부담이 민간자본 유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고 민간의 책임성도 유지되도록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자금 모집목표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달성 가능성과 실제 납입시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출연금에 일시에 교부되면, 계획된 민간 매칭과 투·용자가 지연되어 재원이 전담기관이나 중개기관에 장기간 머무를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 단계의 출연금 집행실적만으로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실제 자금공급과 재원 유희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자금 납입과 투·용자 집행실적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사업의 참고 사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2019년 은행연합회 등의 출연으로 281억원을 조성한 이후 2025년까지 228억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여 원금 85억 5,000만원을 회수하고 수익 6억 2,000만원을 거두는 등 일정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 기금은 수년에 걸쳐 중개기관 및 투·용자 모델을 구축하고 운용 경험을 축적한 반면, 이 사업은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첫해부터 400억원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성격과 위험부담 주체가 다르다. 또한 공급자금 중 상당 부분의 회수가 진행 중인 만큼 회수액과 수익만으로 운용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만기 도래 현황과 연체·손실 실적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수된 자금의 처리와 재투자 방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투·용자금의 상환·회수를 통해 재원을 다시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회수된 원금과 투자수익의 재투자 방식, 정부출연분과 민간출자분 간 수익배분 기준, 손실 발생 시 회수재원의 충당순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항은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추가적인 정부재정 투입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일시에 투입하기에 앞서 민간자금 모집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점검하고, 정부·민간 간 손실 분담 및 수익배분, 회수·재투자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자금 납입일정과 실제 투·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출연금 교부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원의 유희화와 정부의 재정위험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사업¹⁾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민원·혜택 서비스를 AI가 한 곳에서 안내·처리하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플랫폼 인프라 도입비용과 언어모델 및 AI지식베이스 등 서비스 구축 비용 2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운영	25,775	22,524	22,524	40,039	17,515	77.8
AI통합민원플랫폼구축	-	1,791	1,791	20,335	18,544	1,035.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AI통합민원플랫폼의 AI 민원·혜택 안내 기능은 기존 정부24 AI서비스의 고도화나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고, 차별기능으로 제시된 AI 기반 복합민원 원스톱처리 등은 법적 근거와 기관 간 업무절차·법령·정보연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사업비도 ISP 결과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근접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추진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7-500의 내역사업

행정안전부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민원·혜택 서비스를 AI가 한 곳에서 안내·처리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정부 서비스의 전 단계를 연결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안내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총 497억 6,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실제 예산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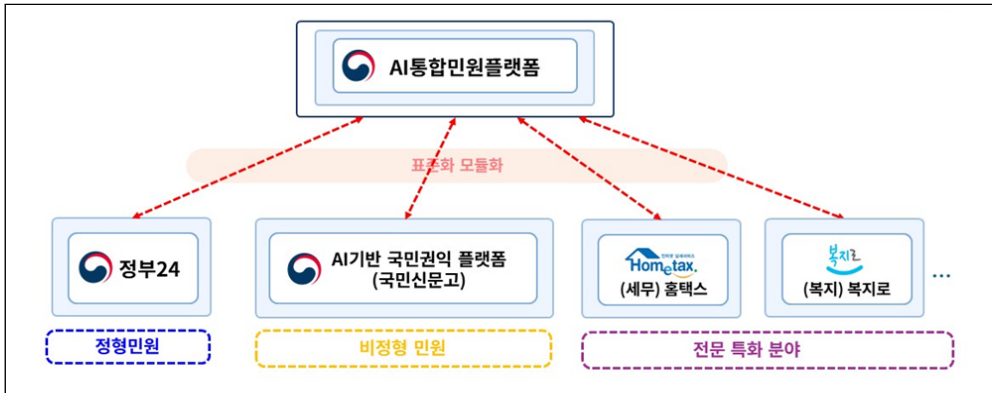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구축하여 2026년 3월부터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에서도 AI서비스와 일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구현 전 단계의 실증 서비스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AI통합민원플랫폼은 현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이하 “AI기반 정부24”)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언어모델·가드레일·데이터베이스 등 전 구성요소를 새로 조달하는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현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AI서비스와 AI통합민원플랫폼 비교]

구분	현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AI서비스	AI통합민원플랫폼(계획)
서비스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2017년~ ※ (통합플랫폼) 2026년 3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 말 개통 예정
서비스 개요 (핵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곳에서 민원·혜택 서비스 신청·발급, 일부 AI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한 곳에서 여러 기관의 민원·혜택 등을 안내·처리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에 등록된 2만여 종의 민원, 혜택 서비스 안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정형), 국민신문고(비정형) 등 주요 시스템 우선 연계하여 민원·혜택 등을 안내하는 AI 서비스제공('27년~)
AI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전 AI 기반 검색 서비스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사용자 질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합한 민원·혜택 등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처리하는 AI 서비스
예산	<p>[3개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51억 700만원 ※ 서비스 연계·통합 등 포함 • '27년: 14억 700만원 	<p>[3개년 구축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ISP): 17억 9,100만원 • '27년: 203억 3,500만원 • '28년: 151억 9,200만원(예정)

자료: 행정안전부

[AI통합민원플랫폼 기본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신규 플랫폼은 비정형민원과 부처별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AI 기반 안내·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차년도 구축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별성이 이용자의 실질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현 AI기반 정부24는 이미 일상적인 표현으로 질문하면 관련 민원·혜택을 검색·추천하고 신청화면까지 연결하고 있고, 2026년 말부터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의 대화형 발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27년에도 AI서비스 고도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한 민원과 서류, 소관기관 안내 기능은 기존 AI기반 정부24의 고도화로 상당 부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생성형 AI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탐색하는 경로가 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포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원의 명칭이나 소관기관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제도나 서류를 안내받는 기능 자체는 범용 대화형 AI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물론 민원정보의 정확성과 공식성 측면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는 반드시 별도의 대국민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정확한 민원정보를 표준화·현행화하여 기존 정부24나 외부 서비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국민이 별도의 AI통합민원플랫폼을 방문하여 질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충분한 추가 편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수요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 정부24 AI서비스 예시]

카페 오픈하려고 하는데 나라에 뭐 특별히 신고나 등록할게 있어?

정부24 AI국민비서

AI모드에서 더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카페 오픈을 준비하시면서 신고나 등록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발급 방법 및 경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경로: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대상: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신청기준: 식품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서류

- 발급서류: 해당 없음
-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

식품관련영업신고

자료: 정부24 AI국민비서(<https://plus.gov.kr/ai>)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기존 서비스가 이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민원서비스를 검색·추천하고 해당 신청화면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하여, 신규 플랫폼은 AI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민원의 신청·처리 단계까지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AI기반 정부24에서 일부 기능이 선행하여 구현될 예정이다. 더욱이 AI가 이용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민원 신청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단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본인 의사의 확인, 신청행위의 법적 귀속, 오신청·오처리에 따른 책임관계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작성·송수신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AI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행정상 신청 의사를 형성·표시하는 경우의 법적 지위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I에 의한 자동 신청·처리를 신규 플랫폼의 핵심 차별기능으로 전제하기에 앞서 이용자의 최종 의사확인 절차, 전자적 신청행위의 법적 효력 및 오류 발생 시 책임 귀속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신규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실제로 신청·접수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스톱처리는 별도 AI플랫폼 구축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업무절차의 통합, 중복 구비서류의 폐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식 및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AI 플랫폼과 인프라를 선행 구축할 경우, 실제 서비스는 기존 정부24와 유사한 민원 검색·안내 및 신청화면 연결 수준에 머무르면서 시스템 구축·운영비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동 사업은 BPR/ISP가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범위와 소요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7~2029년 구축사업비를 497억 6,100만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에 매우 근접한 수준이다. 실제 2·3차년도 소요 예산은 ISP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구축사업비에는 3차년도 이후의 운영·고도화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사업범위와 총사업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에 근접한 사업비를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사전 타당성 검토의 충분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1차년도에 계획한 민원 검색·안내 및 신청 기능은 기존 AI기반 정부24의 고도화를 통해 우선 제공하고, AI통합민원플랫폼은 사업계획과 재정 소요의 구체화, AI에 의한 민원 신청 대리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업무절차·법령·정보연계의 정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정비·표준화하여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서비스와 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구축·개방 확대, 품질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활용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발굴·개방부터 품질관리와 민간 활용 지원까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전반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구조]

(단위: 백만원)

구분	목적 및 내용	예산안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처리,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유지 보수 등	1,695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등	62,096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실시, 데이터 표준화 확대 추진 등	6,316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민관협력 포럼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훈련 등	1,265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 운영, 지역거점 오픈스퀘어-D 운영	880
합 계		72,252

자료: 행정안전부

4-1. 공공데이터 TOP100사업 성과·품질 검증에 기반한 개방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¹⁾은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및 민·관 협업 기반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62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41,634	40,662	40,662	72,252	31,590	77.7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6,410	30,506	30,506	62,096	31,590	10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사업은 그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개방건수 중심으로 추진되어 민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방 데이터의 활용실적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에 후속 물량을 일시 추진하기보다 성과 점검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전제로 연차별 개방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말 공공데이터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에 따른 활용 제약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기업 및 대국민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이하 “TOP100 데이터”)을 선정하였다.²⁾ 수요조사 완료 전 구축한 10종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6-502의 내역사업

데이터의 선도개방과 함께 2026년부터는 18종의 데이터셋을 구축·개방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공데이터와 달리 TOP100 데이터는 원천데이터·DB개방 및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중 일부는 AI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된다.

당초 4년에 걸쳐 100종의 TOP100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7년도에 잔여 65종(43종+보유기관 자체 추진 22종)에 대한 조기 개방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년 대비 103.6%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TOP100 데이터 구축 당초계획과 수정안 비교]

구분	2025	2026	2027	2028	합계
당초계획('25)	10종	18종 (자체 7종)	20종 (자체 10종)	23종 (자체 12종)	100종
수정안('26)	10종	18종 (자체 7종)	43종 (자체 22종)	-	100종

주: TOP100 목표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하지 않고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구축한 데이터셋을 포함하며, 이를 “자체 00종”으로 별도 표기함

자료: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의 단계적 추진은 단순히 예산을 연도별로 분산하는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선행 구축과정에서의 제약과 개방 결과를 확인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에 환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본격적으로 구축·개방하는 고 가치 데이터의 실제 이용량, 이용기관·기업, 오류 및 개선 요구, 데이터 제공방식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면 후속 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축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2026년 7월 말 기준 TOP100 관련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은 15.2% 수준으로 2026년 개방분의 구축은 대부분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데이터의 이용량, 이용기관, 오류 및 개선 요구 등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점에 확인이 불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구축분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2027년 사업 물량을 43종으로 확대한다면 단계적 추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학습·환류 효과가 축소되고, 개방의 속도와 건수가 실제 활용성과보다 우선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2)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민간기업 800여 개 방문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후보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친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100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더불어 동 사업은 원천데이터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별로 원천 시스템 분석 및 개방 가능성 검토, 데이터 구조 설계·적재, 품질점검, 활용성 진단, OpenAPI 개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18종의 과제를 추진 중인 2026년에도 원천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 절차로 인해 실집행률이 15% 수준인데, 과제를 43개로 확대할 경우 연내 구축 완료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과제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주·진도관리·산출물 검수를 담당하는 전담 기관의 관리 부담도 증가하므로, 전담기관 내부 전문 인력 재배치 및 외부 전문지원 체계 활용 등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공공부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제3자 품질검증 없이 납품을 허용한 사례를 지적한 점³⁾을 고려하면, 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증절차가 형식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에 처리해야 할 과제를 18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할 경우에도 개별 데이터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수요·개방 가능성 검토와 품질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인력·검증절차 및 관리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Top100데이터의 조기 개방으로 신규 구축물량이 증가할수록 개방 이후 관리해야 할 데이터도 누적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는 최초 구축·개방으로 사업효과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데이터 변경에 따른 현행화, 오류 수정, 이용자 요구에 따른 제공항목 및 API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활용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품질진단뿐 아니라 오류율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및 조치 이행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Top100데이터 조기 개방계획에도 개방 이후 데이터별 품질·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갱신해야 한다. 현 사업계획상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와 연계하여 성과관리 체계 양적확대보다 품질검증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개방계획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 지원 실적, 활용도 제고 성과, 품질진단 결과 및 오류율, 개선조치 이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다. 반면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인 ‘AI·고 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이행률’은 개방건수를 목표건수(43종)로 나눈 값으로 설정되

3) 감사원. 「인공지능사업 육성실태(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심)」(2026.8.).

어 있다. 이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산출 중심의 지표로서, 이러한 지표로는 개방된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는지,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측정하기 어렵다. 현재 지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양적 개방 확산에서 질적 데이터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부처의 추진 방향과도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성과지표 및 환류체계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만큼 사업의 정책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고가치 공공데이터의 신속한 개방뿐만 아니라 개방 이후의 품질과 활용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지표와 사후관리체계를 우선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Top100 조기 개방의 적정 사업물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AI학습용 데이터 범정부 사전 조정체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사업¹⁾은 생성형 AI서비스 등에서 관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AI학습에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1,000만원이 증액된 8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41,634	40,662	40,662	72,252	31,590	77.7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6,410	30,506	30,506	62,096	31,590	103.6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	4,010	4,010	8,020	4,010	10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AI서비스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중 일부를 AI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비정형데이터 중심의 10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 중이며 2027년에는 목표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200%로 상향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6-502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AI 학습용 데이터의 기관별 분산 구축에 따른 유사·중복과 품질관리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간 구축계획 조정 및 품질관리체계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를 수집·정제·가공하거나 별도의 라벨링 등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각각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축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관별 구축계획을 공유·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개별 기관의 데이터 구축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부문 전체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각각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신규 구축 이전에 기존 데이터와의 유사·중복 여부 및 대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심)」 감사결과(2026.8.)에 따르면, 2017~2024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총 1조 6,32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26개 공공기관이 313종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관들이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존재 여부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관 간 구축계획을 조정하지 않아 유사한 데이터가 별도로 구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AI학습용 데이터 중복 구축 사례 일부 예시]

구분	정책목적·데이터 내용	구축 내역	비교
부처 간 중복 구축	안전한 약물 사용지원 (경구약제 이미지)	과기부(2021), 식약처(2021)	공통학습대상 27.7% 유사
	진단지원/합성데이터 생성참고 (구강이미지 합성)	과기부(2023), 개보위(2023)	공통학습대상 100.0% 유사
부처-지자체 중복 구축	자원순환 효율성 제고 (생활폐기물 이미지)	과기부(2020), S시(2020), D시(2025)	공통학습대상 57.8% 유사
부처- 공공기관 간 중복	시설물 진단 (구조물 균열 손상·결함 이미지 등)	과기부(2020), 서울AI재단(2023)	-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율주행자 데이터 등)	과기부(2022), 한국저작권위원회(2022)	-
	야생동물 보호전략 수립 (야생동물 활동영상 등)	과기부(2021), 한국도로공사(2022)	공통학습대상 41.7% 유사

자료: 감사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 (2026.8.)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사례는 개별 기관이 신규 데이터를 구축하기에 앞서 기존 데이터의 구축목적, 학습대상 및 데이터 구성 등을 비교하여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 데이터를 보완할 것인지 또는 신규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데이터를 기관별로 별도 구축하는 경우 구축비뿐만 아니라 향후 갱신·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분산 제공은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선택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동 사업계획을 보면, 공공부문 전반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조정·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하기보다 행정안전부가 직접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구축하는 물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유사·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 확대에 앞서 공공부문 전체의 구축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투자를 사전에 조정하는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확대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품질관리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의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대표성 및 라벨링의 적정성 등이 학습 결과와 AI 모델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라벨링 오류, 데이터 누락 및 편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데이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구축단계의 품질검증뿐만 아니라 개방 이후 이용과정에서 확인되는 오류와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하는 사후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총괄부처로서 기관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대한 범정부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구축 이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신규 구축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함으로써 공공부문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Hub 사업과 추진주체(NIA)·핵심기능이 중첩됨에도 각기 구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구축 단계 또는 원천데이터 특성에 따라 양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급적 이용자에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기존에 AI Hub를 통해 추진해 온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과기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AI Hub를 통해 기업·대학 등의 AI 개발에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초거대(추론형)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확대하는 등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울러 과기부는 향후 분산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등록, 품질관리 및 통합제공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해 행정안전부 사업은 구축대상을 공공데이터로 한정하고 제공 플랫폼을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원천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검증하여 AI 개발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는 핵심 기능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 사업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라벨링, 품질개선 및 데이터 검증 등 과기부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가공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양 사업의 시행주체가 모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 사업의 과제 간 유사·중복성을 수시 점검하고, AI 학습용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공 플랫폼 간 연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당초 TOP100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매년 AI 학습용 데이터 10종을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AI 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그 규모를 20종으로 확대하는 등 구축·개방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구축주체와 사업이 분산된 상황에서 개별 사업의 물량을 단기간에 확대할수록 기존 데이터의 대체 활용 가능성, 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및 신규 구축 필요성을 데이터 단위로 사전에 검토·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주무부처별 AI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현황]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공개시스템	AI Hub	개별 기관 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데이터 수	977종	(행안부) 10종(구축 중) (타 공공기관) 313종	3종(구축 중)
품질관리 기준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4.0」	공통 품질관리 기준 없음	기준 없음

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종은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메타데이터 등을 하나의 데이터세트로 묶은 단위이며, 공공데이터의 '건'은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공개된 각각의 데이터 파일·API·목록 단위로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구축 측면의 중복 가능성뿐 아니라, 제공 측면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만 제공할 경우, 이용자는 데이터의 구축 주체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과 AI Hub 등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 검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Hub를 중심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통합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AI Hub에서 목록과 메타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원천 데이터로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단계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양 부처가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과 AI Hub 간 제공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¹⁾은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²⁾의 선정·평가,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1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햇빛소득마을추진단(26.2.13. 출범)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4억 6,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

[2027년도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햇빛소득마을 확산	-	-	-	461	46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햇빛소득마을 도입·확산 과정에서 부지·자금·전력계통 등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관계부처·전문기관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추진단은 신규 마을 선정 확대보다 부처 간 사업 조정과 선정마을의 사업화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부합하도록 역할과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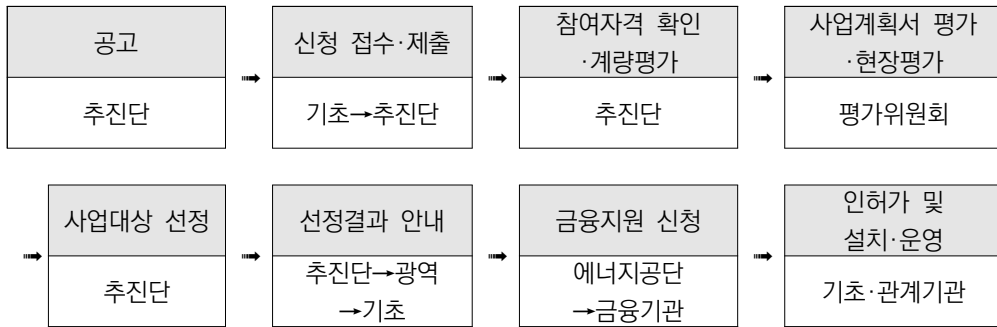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262-300

2)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 소득·복지로 환원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³⁾은 현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2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중 지방자치단체 인력 3명 추가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햇빛소득마을의 선정·평가, 공모사업, 금융지원 등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운영·보수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운영 절차 및 전담기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추진단이 별도의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보유한 금융·계통·부지 관련 정책수단을 선정마을에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는 구조이다.

사업절차에서도 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는 단계는 공고부터 선정결과 안내까지이며, 금융지원 신청과 인허가·설치·운영 등 실제 사업화 단계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기타 관계기관이 담당한다.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전력계통 관련 제도 및 인프라는 기후부·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기관이 담당하고, 농촌지역의 부지 확보 및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제도는 농식품 부와 관계기관이 담당하는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수단이 관계부처 별로 별도 편성·집행되고 있다.

3) 2026년은 별도 예산 없이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1억 7,770만원)을 활용하여 운용 중이다.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예산 편성 내역(공공기관 제외)]

(단위: 백만원)

부처명	기능	담당조직	사업명	예산(안)	
				2026	2027
기후부	융자	태양광산업과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융자)	116,000	-
	이차보전	태양광산업과	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이차보전)	6,000	28,455
	ESS지원	태양광산업과	AI분산전력망산업육성 (커뮤니티솔라)	98,396	234,700
	보증	태양광산업과	무탄소에너지보증 (무탄소에너지보증)	-	24,863
	통합 플랫폼	태양광보급추진단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햇빛소득마을 통합플랫폼)	1,775	1,775
	전문인력 양성	태양광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햇빛소득마을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	-	550
	교육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교육홍보 (햇빛소득마을 교육)	296	400
	선정·평가	태양광 보급추진단	햇빛소득마을 확산 (선정 평가용역비)	231	통합플랫폼 내 반영
행안부	지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햇빛소득마을 확산	-	461

자료: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실제 2026년 1차 공모 결과를 보면 선정마을 대부분은 관계부처 소관인 계통·부지·자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결과 선정된 87개 마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나, 10월 현재 실제 추진이 가능한 곳은 13곳(14.9%)이고, 나머지 74곳은 부지임대 협의, 계통연계 등의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되었다. 특히 59곳은(75.6%) 전력망 미비가 조건부 선정 사유이다.

그런데 전력망 미비(전력계통 연계)는 추진단의 현장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기후부의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사업과 송·배전망 보강을 추진하고,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개정하여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선접속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하위법령 및 관계기관의 운영 절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통 문제의 해소 여부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소관부처의 후속 제도 설계와 송·배전망 확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농촌지역의 부지 확보 문제도 추진단의 직접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존의 농촌 내 일반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서 전용을 통해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2026년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및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사업 추진 여부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에 운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의 실현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물리적·재무적 제약에 그치지 않는다. 수익배분 기준, 주민참여의 실질성, 마을조직의 운영역량, 주민 간 갈등 등은 시설 가동 이후 장기간 나타나는 공동체 운영상의 문제로서, 추진단의 조정·지원 기능은 사업화 이후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진단의 업무분장은 공모·금융지원·계통 연결 등 관계기관과 중첩되는 업무 위주로 계획되어 있고 공동체 운영 지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햇빛소득마을 사업화 과정의 주요 쟁점 일부 예시]

구분	문제점
전력계통 포화 및 접속 지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에 비해 송전·배전망 및 계통접속 여력이 부족하고, 접속 대기과 계통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적지 부지 부족 및 토지이용 규제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유휴부지 확보가 어렵고,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와 인허가 절차가 사업 추진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초기투자비 및 금융비용 부담	발전시설 설치비, 계통연계비 등 초기 비용이 크며, 발전량·전력판매 가격·금융조건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음
수익의 안정성 및 배분기준 불명확	발전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 개인·토지소유자·마을공동기금 간 배분기준 불명확 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형식적 참여 및 주민 이해 부족	협동조합 또는 주민조직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거나, 일부 주민·외부사업자가 주도하는 경우 주민참여의 실효성 약화
부지·수익·사업방식 관련 주민갈등	발전시설 입지, 토지임대료, 수익배분, 경관·소음 우려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자산의 사유화 또는 공동체성 약화	마을 명의로 조성된 발전자산이 일부 구성원에게 귀속되거나, 장기적으로 공동체 자산으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햇빛소득마을:에너지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2026.5.) 및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국회토론회('26.4.29., '26.7.1.)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이처럼 사업화의 제약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성과목표로 2026년 700개 마을 선정, 2027년 2,200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단 운영규모와 경비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햇빛소득마을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추진단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예산은 사무공간·가구 임차, 공공요금, 시설관리 등 추진단 자체의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추진단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부처별로 분리 편성되어 행정안전부 예산만으로는 추진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운영경비 규모가 실제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 주요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예산액)
사무용품·기타운영비	일반수용비(46.8), 공공요금 및 제세(70.0), 기타운영비(10.1)
근무지원	특근매식비(35.0), 국내여비(72.0), 관서업무추진비(36.0)
시설·장비	임차료(159.7), 유류비(6.2), 시설장비유지비(12.0), 관리용역비(13.2)

자료: 행정안전부

아울러 사업계획상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업무의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전문성은 기후부·농식품부 및 관계기관에 이미 존재하므로 추진단 기능을 관계기관의 업무와 병렬적으로 확대할 경우 별도 조직 설치의 실익이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조성 목표의 확대를 전제로 추진단을 운영하기보다 관계 부처 간 조정과 공동체 운영 지원 등 부처별 사업과 구별되는 추진단의 고유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인력과 운영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진단의 성과는 신규 선정 마을 개수보다 사업 개시까지의 소요기간, 조건부 선정 사유의 해소 정도, 관계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실적 등 사업화 지원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발전수익과 주민 귀속소득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이에 상응하도록 예산 편성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사업¹⁾은 CCTV 영상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CCTV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2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 AI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12,369	12,369	12,377	8	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CCTV 영상기반 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관제지원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본래 내역으로 하나, 이외에 재난안전 영상분석 기술 실증과 함께 문서형 재난정보의 지식체계화 및 지식데이터 구축, 데이터의 지자체 실증·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및 202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안
AI기반 지방정부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 실영상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영상정보 비식별화 기능 구축 · 실영상 전송 인프라 구축·위탁사업경비	3,634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실증	· 재난분야 영상학습데이터구축·탐지 AI알고리즘 개발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생성형 AI개발·위탁사업경비	1,554
재난안전 AI데이터 체계적 제공	· AI데이터 구축·AI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구축·창업경진대회 등	6,560
AI기반 지방정부 CCTV 관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정부 이벤트영상 AI데이터로 구축, 민간개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용	629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2-509

6-1.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의 유사 사업 간 과업 조정 필요

가. 현 황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사업¹⁾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통합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역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12,369	12,369	12,377	8	0.1
재난안전 AI데이터 체계적 제공	-	7,680	7,680	6,560	△1,120	△14.6
지역현안 AI학습 데이터 구축	-	-	-	1,410	1,41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역 현안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은 풍수해 중심의 데이터 구축,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지역 단위 실증 등 과업 범위가 ‘기후위기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AI플랫폼’ 사업 및 기존 내역 사업과 중첩됨에도 사업 간 역할 분담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중복되는 과업을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3개 재난안전유형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관한 AI 학습데이터 구축과 현장 시범·실증을 지원하는 ‘지역 현안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이하 “지역 AI데이터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유형별 4억 7,000만원 씩 총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관련 데이터 구축사업에서는 2026년 호우·태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2-509의 내역사업

풍 중심으로 구축한 지식데이터의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폭염·산사태 등으로 재난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AI학습데이터 구축 및 시범·실증 예시]

-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침수·범람·화재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 AI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탐지하고 인지하여 초기 대응 시간 단축
- 다수 기관에서 생성되는 상황보고·취합 업무에 관한 AI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생성, AI가 현장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
- 지방정부의 재난이력과 지방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잠재적 위험 AI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AI가 취약성을 분석, 재난취약점 발굴 및 조치 등에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대상 재난유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 과제는 풍수해·화재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자연재난 피해가 대부분 호우·태풍에서 발생하여 공모 수요가 이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범정부 재난안전 AX종합계획」(행정안전부, '26.8.)이 1차 사업대상을 태풍·호우로 정하고 이후 대설, 폭염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 AI데이터 사업의 과업은 행정안전부의 ‘기후위기극한재난대응지역 문제해결AI플랫폼(R&D)’(이하 “재난대응AI플랫폼사업”)의 세부 항목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 재난대응AI플랫폼 사업은 5년간 총 337억원(2027년 4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재난데이터들을 AI기반으로 연계하고 재난의 예측·감지·대응을 위한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세부 과업에는 지하침수, 중·소하천 도시유역, 산불·호우·산사태 연쇄 등 풍수해를 중심으로 강우·수위·관망·CCTV 데이터를 결합한 모델 구축 및 AI기반 예측,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지역 단위 실증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재난 유형별 지역단위 실증과제를 공모하고 테스트베드 예정지역을 제시 하도록 하는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구축·실증을 추진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지역 AI데이터사업과 타 내역사업 및 신규 R&D사업 세부과업 비교]

지역AI데이터 사업	재난안전AI 영상분석 실증사업	재난대응 AI플랫폼 사업(R&D)
(지능형 CCTV탐지) 침수·범람·화재 학습데이터 구축 및 실시간 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기반 영상학습데이터 구축 후 알고리즘 개발, 실증 추진 (예: 침수탐지 알고리즘 지방정부에 시범적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지하공간 침수범위 인식 AI 모듈: CCTV·수위센서·하수관망 융합 (지자체 CCTV 영상학습데이터 구축 포함) · 소하천 등 강우-수위-영상 연계 급변 감지 및 조기경보 AI 모듈: 관측 공백 구간 간접 추정 포함
(AI 기반 재난관리 지원) 상황보고 학습데이터, AI 대응 매뉴얼 생성, 현장 의사결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의사결정지원 공통 프레임: AI Agent, RAG 기반 지식베이스 · 지하침수 대응 시나리오·상황전파·대응 전략 AI 모듈 · 유달시간 고려 신속 대응 전략 및 현장 지원 AI 모듈 · 연쇄 재난대응 전략 생성·주민 안전지원 AI 모듈
재난이력·지역특성 기반 잠재 위험 데이터, AI 취약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지하 인프라 취약성 데이터 통합 · 추가 위험 탐지 및 위험도 분류 AI모듈: 전기·가스·통신·교통 연계 위험 · 소하천 취약구간 위험도 분류 데이터 통합 · 제방 취약구간 붕괴 위험도 산정 AI 모듈 · 산불·호우·산사태 연쇄 위험 데이터 통합

주: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은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됨. 핵심과제1은 재난 특화 AI 플랫폼 기반기술 개발 및 연계, 핵심과제2는 대도시 노후인프라 밀집 지역 극한호우 지하침수 대응, 핵심과제3은 중·소하천 연계 도시유역 시스템 리스크 대응, 핵심과제4는 산간 해안 복합지역 산불·호우·산사태 연쇄 대응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특히 2027년 추진될 신규 R&D사업은 재난유형에 공통으로 활용할 AI 학습·추론 엔진과 의사결정지원 프레임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과 법령 등을 연계하는 지식베이스와 공통 AI Agent 프레임은 지역 AI데이터 사업의 재난관리 지원 기능과 활용기반이 유사하므로, 지원대상 재난유형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이러한 공통 기반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 세부사업 내 기존 사업과의 관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내역사업에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위예측, 범람·산사태 위험 분석, LLM²⁾·RAG³⁾ 기반 상황보고 지원 기능을 개발하는 ‘지방정부 AI기반 집중호우·태풍 대응 서비스 구축 및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AI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풍수해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3개 사업에서 병행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성과물의 상호 활용 관계나 역할 분담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AI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문서형 재난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지역 AI데이터 사업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의 현장 실증을 수행한 후 실증 결과를 다시 데이터 현행화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 세부사업 내 데이터 구축과 현장 실증 간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다른 사업들과의 역할분담이나 성과 연계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 구축, 영상분석, 의사결정 지원을 별도 사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의 수행범위와 성과 활용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수요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사업 외에도 호우·침수 분야의 침수예측과 현장 의사결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수 과제들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고정밀 침수 모델 개발’을 통해 침수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위험수위 판단, 주민 대피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개발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적용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홍수예보 시설구축’으로 223개 지자체 대상 AI 기반 하천 수위 예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AI 기반 극한호우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산불위험예보 알고리즘 개발’(국립산림과학원)이 추진되어 AI학습용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확보되어 있다.

2)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분석·생성하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지칭한다.

3)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는 LLM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지식 기반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문맥으로 활용해 답변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LLM 자체를 재학습하지 않고도 조직 내부 문서·최신 자료·전문 지식 등을 반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 역시 재난안전 AI 도입이 개별 기관별로 추진되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기존 도시 침수예보와 AI 홍수예보 결과를 활용하여 지하차도 통제와 주민 대피판단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처별로 유사한 예측·판단에 필요한 AI 학습데이터를 각각 구축하고 관련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AI데이터 사업은 재난대응AI플랫폼사업(R&D) 및 기존 관련 사업의 지역 단위 실증과제와 중첩되는 데이터 구축 및 개발·실증 소요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 시 과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별도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와 추가 구축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6-2. 재난안전 AI데이터구축 타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사업¹⁾은 공유플랫폼, CCTV·드론 영상, IoT 센서 등 다양한 매체의 재난안전데이터를 AI학습용 데이터로 제작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3,000만원이 감액된 4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운영·개방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재난안전 AI데이터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12,369	12,369	12,377	8	0.1
재난안전 AI데이터 체계적 제공	-	7,680	7,680	6,560	△1,120	△14.6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	6,240	6,240	4,710	△1,530	△24.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은 기존 AI Hub 데이터 및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과 대상 및 가공·표준화 기능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2026년 개방 예정이던 AI데이터 과제들이 10월 초 현재 초기 가공·처리 단계에 있으므로 선행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존 사업과의 역할 구분 및 데이터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여 차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2-509의 내역사업

이 사업은 재난관련 탐지센서와 기타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DB화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멀티모달²⁾ 데이터를 수집·정제·가공하여 AI학습데이터(이하 “AI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성한 학습데이터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을 통해 오픈 API³⁾서비스로 개방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안전 분야의 AI 학습데이터는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구축·개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Hub에는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 121종이 공개되어 있으며, 향후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역안전재난(산불) 방재 데이터, 침수, 안전사고 6종을 포함한 지능형 관제 서비스 CCTV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에서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중인데 개방 예정 목록에는 재난안전 분야 12개 과제가 포함된다.

[기존 재난안전분야 포함 AI데이터 제공사업 및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Hub	행정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AI학습용데이터)										
· 재난안전환경분야 121종	[구축예정 목록 일부 예시]										
<table><tr><th>데이터명</th></tr><tr><td>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 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합진단멀티모달 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 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 건물균열탐지이미지지도화 등</td></tr></table>	데이터명	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 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합진단멀티모달 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 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 건물균열탐지이미지지도화 등	<table><tr><th>구분</th><th>데이터명</th></tr><tr><td rowspan="3">자연재난</td><td>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td></tr><tr><td rowspan="3">화재· 시설안전</td><td>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td></tr><tr><td rowspan="3">산업· 생활안전</td><td>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td></tr></table>	구분	데이터명	자연재난	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	화재· 시설안전	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	산업· 생활안전	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
데이터명											
지능형 관제서비스 CCTV영상데이터 다각도 CCTV생활안전 데이터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시설안전데이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결합진단멀티모달 산불확산위험 대응방안 추론데이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등하교및시설물영상데이터 부산시침수위험복합데이터 건물균열탐지이미지지도화 등											
구분	데이터명										
자연재난	도시침수·계곡 유량 데이터 산불위험지수 및 영상 데이터 전국 싱크홀 위험지역 데이터										
	화재· 시설안전	화재대응 영상 데이터 건물 화재대응시설 데이터 특수교량 안전점검관리 데이터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데이터									
		산업· 생활안전	산업재해 사고·예방조치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이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위반 데이터								

자료: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2) 멀티모달데이터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가 결합된 것으로 예를 들어 (정형)기상정보, 소방신고정보, (비정형) CCTV 영상정보, 위치정보 등의 데이터가 결합된 데이터를 일컫는다.

3) Open API는 개발자들이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구축·관리하기보다 공통된 표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다른 행정 영역의 인구·시설·지역정보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AI 기반 예측과 조기 대응에 활용되므로, 데이터가 사업별·플랫폼별로 분절될 경우 상호 연계와 종합적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매년 ‘AI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과 동 사업은 데이터의 구축 목적과 공개 플랫폼에는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및 동 사업의 사업수행주체가 모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같은 기관이 재난안전 분야 학습데이터를 AI Hub, 공공데이터포털,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이라는 세 경로를 통해 각각 구축·공개하는 구조가 된다. 「범정부 재난안전 AX 종합계획」은 기관별 데이터의 분산 관리를 AI 활용의 한계로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플랫폼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널도의 구축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데이터 통합·연계 방향과도 정합성이 낮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27년 신규 편성된 ‘기후위기 극한재난대응 지역문제해결 AI플랫폼(R&D)’에도 재난 데이터 표준화 및 AI-ready 데이터 패브릭 구축(19억원)과 재난유형별 취약성 데이터 통합(11억원) 등 동 사업과 유사한 데이터 구축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재난안전 데이터 구축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과제의 사업범위는 AI Hub,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및 신규 R&D 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데이터와의 중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재난안전 분야 고유의 데이터 구축 및 연계 소요를 중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계획에는 기존 사업과의 중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와 데이터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데이터를 설계·가공함으로써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학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I Hub 등에 구축된 데이터가 주로 관측·영상 자료로 구성된 반면, 동 사업은 재난 상황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대응사례 등 재난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행정기록을 학습데이터로 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원천자료의 차이만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데이터 구축 경과를 보면, 동 사업의 원천자료에는 위성관측사진 등 비정형자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 구축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역시 AI가 기존 재난상황 예측 영역에서 나아가 대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사례나 기록들도 데이터에 포함하는 추세이다.

동일한 재난유형을 다룬다는 사실만으로 중복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천자료와 수집기간·지역·관측지점이 같고 정제·라벨링 항목과 품질검증 기준도 유사하다면 별도 가공의 필요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기구축된 데이터나 타 사업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이력이나 재난관리 업무에 필요한 추가 정보의 결합은 별도 소요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구축물량을 산정하면 기존 자료로 충족할 수 있는 수요까지 신규 수집·가공비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AI Hub,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및 신규 R&D사업의 구축 대상과 원천자료·가공항목을 대조하여 기존 데이터로 충족할 수 있는 소요를 제외하고 추가 구축이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AI데이터 구축 과제의 편성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공개 경로를 AI Hub 및 공공데이터포털과 연계하여 데이터의 분절과 중복 투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예비비로 신설된 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기본사회위원회운영 사업¹⁾은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위원회의 운영 경비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예비비를 통한 예산액 대비 8억원 감액된 3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빛의위원회운영 사업²⁾은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예비비를 통한 예산액 대비 30억 3,100만원이 증액된 7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운영 사업³⁾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안전·재난·생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예비비를 통한 예산액 27억 9,200만원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2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기본사회위원회·빛의위원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예비비	추경(A)		B-A	(B-A)/A
기본사회위원회운영	-	-	4,461	4,461	3,661	△800	△17.9
빛의위원회운영	-	-	4,851	4,851	7,882	3,031	62.5
국민생명안전위원회운영	-	-	2,792	2,792	3,282	490	17.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938-302

2) 코드: 일반회계 2440-300

3) 코드: 일반회계 2632-321

나. 분석의견

첫째, 법률상 설치 근거 없이 회계연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비비로 사무기구와 인력을 먼저 갖춘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지속적인 조직운영비와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기본사회위원회, 빛의위원회 및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각각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설하고, 사무공간 조성비, 사무국 인건비, 회의운영비 및 홍보·행사비 등의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에 44억 6,100만원, 빛의위원회에 48억 5,1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세 위원회 중 유일하게 근거 법률이 제정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역시 법률 시행('26.12.) 이전인 2026년 5월에 27억 9,2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출범하였다.⁴⁾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미 운영 중인 세 위원회의 운영경비 총 14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회가 위원회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사무국) 규모를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경비가 본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기본사회위원회·빛의위원회·국민생명안전위원회 현황]

구분	기본사회위원회	빛의위원회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근거법률	없음	없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6.6.2, 시행 '26.12.3.
설치근거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빛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범일	'26.4.14.	'26.6.26.	'26.7.28.
예비비	'26.1.27.	'26.3.17.	'26.5.12.
	44억 6,100만원	48억 5,100만원	27억 9,200만원
사무국정원	33명	25명	39명
존속기한	'31.1.26.	'28.3.31.	'31.5.12.
예산안('27)	36억 6,100만원	78억 8,200만원	32억 8,2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4)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경우 「생명안전기본법」(2026.6.2. 제정) 제9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7년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운영된다. 다만 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먼저 설치되어 예비비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위원회가 이미 출범하고 사무기구와 인력을 갖춘 뒤 운영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면, 국회는 위원회 신설의 타당성이나 조직 규모를 검토하기보다 설치 이후 발생하는 운영경비만 사후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또한 운영경비를 감액할 경우 이미 수행 중인 업무와 배치된 인력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심의하게 되므로 국회의 예산 조정 여지도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기구를 먼저 설치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에 운영경비를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새로운 재정지출 수요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창출되어 본예산의 경직성 경비로 편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세 위원회는 단순한 회의체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기구 정원은 기본사회위원회 33명, 빛의위원회 25명, 국민생명안전위원회 39명으로, 세 위원회를 합하면 97명이다. 이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받는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도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 신설은 해당 연도의 설치비 지출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조직·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방식은 위원회 자체 인건비로는 파악되지 않으나 해당 부처의 기존 업무 수행인력이 감소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운용 필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재정비용을 해당 위원회 운영예산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 등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인건비와 사무공간·운영비 등이 반복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사무기구 정원, 존속기한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이러한 인건비 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국회의 입법 통제 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자문위원회는 그 결정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설 사무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두고 수년간 매년 수십억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위원회는 그 기능과 조직, 존속기한을 법률로 정하여 국회가 설치 단계에서부터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와 빛의위원회는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위원회 사무기구의 정원 과 별도정원·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 재정소요를 제시하여, 국회가 위원회 운영의 전체 비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위원회 등 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경비를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기보다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사업비와 회의운영비 등을 확대 편성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단가·물량 없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운영경비 내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위원회의 2026년 집행률은 2026년 8월 말 기준 기본사회위원회 35.9%, 빛의위원회 16.3%, 국민생명안전위원회 9.8% 수준으로, 출범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예비비는 배정 이후 연말까지의 소요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집행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4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6년 예비비 배정액 대비 기본사회위원회는 17.9% 감액되었으나 빛의위원회는 62.5%,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17.6% 증액되었다.

또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비가 일괄 산정된 측면이 있다.

빛의위원회는 (가칭)국민주권의 날 행사비 10억 8,000만원을 1회 1식으로 산정하였을 뿐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은 관련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 산출내역 없이 대규모 행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 구축 예산 역시 금년도 하반기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할 예정으로 구축범위, 시스템 구성, 단계별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위원회 존속기한(2028.3.31.) 이후의 운영·관리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도 정책홍보비 4억원을 대상과 내용에 대한 계획 없이 1식으로 일괄 산정하였고, 일반연구비 5억 3,000만원은 13개 과제의 수와 과제별 단가만 제시할 뿐 과제명과 연구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본사회위원회 역시 회의참석수당, 정책홍보비, 연구용역비 등을 회의 개최 횟수나 과제별 단가 등 산출 정보 없이 총액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관계부처 정책의 심의·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홍보 관련 경비의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경우 정책홍보비 4억원, 홍보 콘텐츠 제작 2억 4,00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 3,000만원 등 홍보 관련 경비가 6억 7,000만원으로 위원회 사업비의 46.1%를 차지한다.

그리고 세 위원회 모두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기본사회위원회는 2031년까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2026년 7월중 출범하여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편성 규모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인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6년 집행이 부진함에도 증액 편성된 경비, 사업계획과 산출근거가 구체화되지 않은 일괄 편성 내역, 홍보 관련 경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AI행정업무 적용사업¹⁾은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구현하여 행정 전반의 프로세스와 업무기능을 통합·연계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4억 5,200만원 증액된 54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AI행정업무 적용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자문서소통시스템	9,781	26,152	26,152	60,338	34,186	130.7
AI행정업무 적용	4,170	18,709	18,709	54,161	35,452	189.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핵심 목적인 AI 기반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기능 고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협업도구 구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처별 AI 업무지원 서비스와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AI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AI 서비스와의 공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업무망에서 대화형 AI와 문서관리, 메일·메신저·화상회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 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로 2026년 9월 현재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1932-501의 내역사업

[온AI 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동 사업의 핵심 목적은 모든 행정 프로세스와 업무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현임에도, 활용도와 재정투자가 모두 AI 행정 지원보다 소통협업도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I 행정지원은 업무망에서 운영되어 웹검색과 수시 모델 갱신이 가능한 상용 AI와 달리 답변 근거가 사전 학습된 지식과 RAG²⁾로 연결된 내부 행정데이터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³⁾ 그러나 업무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개선이나 학습데이터 구축 예산은 '범정부 AI공통기반'사업에 일부 편성되어 있고,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에는 소통협업도구 사용자료는 450억원을 상회하여 전년 대비 증액분 354억원의 79.7%(283억원)가 해당 구독료 증가분이다. 즉, 동 사업은 AI를 통한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보다는 메일·메신저·드라이브 등 기존 업무도구를 민간 SaaS로 대체·보급하는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2)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사전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또한 기능이 개선된 새 모델(Gemma 4, Nemotron 3 Ultra 등)은 행정안전부가 검증하여 주기적 설치가 이루어지므로 민간 서비스와 시차가 발생한다.

[온AI 주요 내역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B-A)	(B-A)/A	비중
소통협업도구(SaaS) 사용료	16,813	45,063	28,250	168.0	83.2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1,500	7,488	5,988	399.2	13.8
HW·SW 사용료	-	4,721	-	-	8.7
MSP(보안·장애관제)	-	1,867	-	-	3.4
AI 서비스 사용료	-	900	-	-	1.7
플랫폼 운영	0	1,610	1,610	순증	3.0
플랫폼 감리	396	0	△396	순감	-
합 계	18,709	54,161	35,452	189.5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시범운영에 대한 사용자 인식조사⁴⁾ 결과도 이러한 구조를 보여준다. 메신저 만족도는 3.64점인 반면 AI행정지원은 3.36점으로 8개 서비스 분야 중 가장 낮다. 개선의견 역시 AI 행정지원에 대한 의견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AI 대비 답변 품질·정확도 미흡”이 최다 지적사항이다. 참고로 1차 시범기관(3개)은 AI 도입 의지가 높은 기관임에도 일 평균 접속자가 2,439명으로 가입자가 8,474명임을 감안할 때 가입자의 70% 이상이 일상 업무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시범운영 사용자 인식조사(주관식 의견) 결과]

구분	주요 내용
AI 행정지원(269건)	· 민간 AI 대비 답변 품질·정확도 미흡
업무공간	· 역할과 기능 설명 부족에 따른 필요성 미인식, · UI 직관성 등 사용자 편의성 부족
소통협업도구(179건)	· 홍보 부족으로 기능 활용성 저하, 모바일 이용 시 파일 사용 제약 · AI 기능 미흡
공통	· 부서·팀 단위 교육 필요, 간부급 미활용 시 실무진 이용 한계
미사용 사유	· ‘기능이 있는지 몰라서’ 41%, ‘업무에 필요 없어서’ 31%, · ‘사용법을 몰라서’ 28%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4)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기관 3개(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다.

그럼에도 AI 행정지원과 업무공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은 명확하지 않으며, 인식조사에서 소통협업도구 역시 AI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재정투자는 구독 확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동 사업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AI 기반 업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각 부처는 이와 별도로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AI 서비스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다수 부처가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민간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사업도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처별 자체 AI기반 업무플랫폼 구축 사례 일부 예시]

구분	지식재산처	병무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인사혁신처
서비스명	· 지식재산분쟁 AI Agent · Easy특허 AI Agent	AI 워크메이트	· 공정거래 Agentic AI플랫폼 구축 · AI융합약관심사 플랫폼 구축	국세행정 AI시스템	AI 인사비서
비고	자체 플랫폼	범정부공통기반	자체 플랫폼	자체 플랫폼	범정부공통기반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이처럼 부처별 특화 AI 플랫폼 구축과 민간 AI 구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여기서 축적되는 업무 데이터와 이용 경험은 온AI의 개선에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2027년 1분기 도입 예정인 ‘AI 에이전트 빌더’도 각 기관이 민간 SaaS 위에서 개별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업무 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온AI보다 웹검색과 최신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AI나 부처업무 특화서비스를 우선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온AI의 이용 저하, 개선 수요의 축적 부족, 기능 개선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사 기능에 대한 중복 투자와 데이터 단절도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통협업도구 보급 중심의 투자 구조를 AI 행정지원의 기능 고도화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부처별 AI 업무 플랫폼 서비스 축적 데이터가 범정부 차원의 성과물로 축적되도록 연계·환류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운영 결과 활용 수준과 업무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대상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입자 수 기준의 정액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용실적에 근거하여 보급 범위와 구독료 지원 규모를 재산정하고 재정 소요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온AI 예산안 541억 6,100만원 중 소통협업도구 사용료 450억 6,300만원은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 가입자 수에 정액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 방식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빈도가 낮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용료가 지급되므로, 이용률과 이용빈도가 낮을수록 실제 이용자 1인당 비용이 증가하는 재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온AI 소통협업도구 구독료 예산 산출 내역]

- 47개 중앙행정기관 약 30만 명 × 1인당 월 20,000원 = 450억 6,300만원
- ※ 초과 인원 약 13만 명은 민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 이용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실제 이용수요에 맞추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운영은 본 사업 확대에 앞서 실제 이용수요와 업무 활용 수준을 확인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운영 기관 및 구독료 지원 시작 시기]

시작월	기관 수	기관명
2025년 말	4개	행안부, 과기부, 식약처, 기획처
2026년 7월	15개	국조실, 데이터처, 보훈부, 고노부, 금융위, 기후부, 동포청, 재경부, 농진청, 문체부, 복지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해경
2026년 9월	15개	감사원, 경찰청, 공정위, 교육부, 유산청, 기상청, 농식품부, 병무청, 산림청, 인사처, 조달청, 지재처, 질병청, 통일부, 해수부
2026년 11월	13개	인권위, 권익위, 교통부, 개보위, 관세청, 대검찰청, 방통위, 법무부, 법제처, 성평등부, 우본, 원안위, 행복청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시범운영이 9개월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제시된 이용실적은 2026년 8월 한 달간 1회 이상 접속한 인원을 집계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⁵⁾ 해당 자료의 '활성 사용자'에는 일회성 접속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통해서는 접속 빈도, 기본 협업기능과 AI기능의 이용 여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실질적 활용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의 월별 이용 추이가 제시되지 않아 이용이 정착 단계에 있는지, 도입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지도 판단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일회성 접속을 포함하는 기준에서도 일부 기관의 활성사용자 비율은 48.3%, 52.0% 수준으로, 해당 기관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한 달 동안 한 차례도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실제 활용 수준은 제시된 수치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범운영 기관별 한달 간('26.8.) 1회 이상 온AI 접속자 수]

(단위: 명)

기관명	가입자(8.31.기준)	8월 한달 1회 이상 접속자 수
(1차)행정안전부	4,649	3,386
(1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92	2,342
(1차)식품의약품안전처	2,882	1,392
(1차)기획예산처	608	316
재정경제부	489	313
국무조정실	1,548	1,252
산업통상부	1,085	745
농촌진흥청	4,700	4,697
금융위원회	255	178
국가데이터처	2,251	2,248
합 계	21,059	16,869

자료: 행정안전부

5)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1차 시범기관 3개(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다.

2027년 (예상) 가입자는 시범운영 가입자의 약 14배 규모이므로, 시범운영 기간의 비활성 가입자 비율(약 20%)이 확대 이후에도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소통협업도구 사용료 451억원 중 약 90억원은 미접속 가입자에 대한 사용료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입자 수에 연동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계정이 일괄 부여된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우며, 이는 반복적인 정상적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시범운영은 본 사업 추진 전에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여 사업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업무 유형별 적합성, 활용 장애요인 등을 분석한 결과가 확대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2026년 전 기간의 월별 이용 추이, 반복 이용자 비율, 기본 협업기능과 AI기능별 이용 빈도, 업무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웍스와 브리티웍스 등의 민간요금체계를 보면 기본 협업서비스와 AI기능 수준, 토큰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한다. 이는 이용계정 수뿐 아니라 제공 기능과 AI사용량도 비용 검토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역시 현재 활용 중인 기본 기능과 AI 이용실적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료계정 수와 서비스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사용 계정의 정기 조정, AI 기능의 선택적 구독 및 기본 제공량과 추가 사용량을 구분한 계약방식 등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소요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구독료는 이용기관이 유지되는 한 매년 반복되는 경직성 경비이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4년간('27~'30년) 세부사업 소요는 약 2,413억원으로 당초계획(704억원)보다 약 1,709억원 많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중기재정계획	10,530	27,934	9,462	12,245	12,245	-
2026~2030 중기재정계획	-	26,152	17,600	17,600	17,600	17,600
2027년도 예산안	-	-	60,338	60,338+a	60,338+a	60,338+a
(AI 행정업무 적용)	-	-	54,161	54,161+a	54,161+a	54,161+a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특정 민간 사업자에 대한 종속 문제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 30만 명 규모의 공무원 업무 소통과 문서가 2개 민간 SaaS에 축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축적되는 업무자료를 RAG로 연계하여 온AI Work에서 활용하는 한편, 각 기관이 민간 SaaS의 에이전트 빌더로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생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행정 데이터와 업무 자산이 민간 플랫폼에 결합될수록 데이터 이전 비용과 재교육 비용이 커져 계약 갱신 시 정부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초과 인원 약 13만 명에 대한 무료 이용도 “민간 기업과의 협의”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료 지원의 기간과 조건, 종료 후 적용 요율이 제시되지 않아, 이용 기반이 확대된 이후 유료 전환이나 단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통협업도구 사용료를 실제 이용량, 활성 기능 수준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산정하고 중장기 소요 전망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요율 상한, 데이터 이식성(표준 포맷 등)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 의무 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민참여정책 추진 사업¹⁾은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장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단 및 국민이 직접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정책혁신랩 운영,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포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2억 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민참여정책 추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참여정책 추진	-	-	-	1,271	1,27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도전한국’, ‘열린정책포럼’ 등 과거에도 유사한 국민참여형 정책발굴·민관협력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종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원인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정책추진 사업은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국민참여 공론장 운영, 분과별 민관TF팀 운영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정책혁신랩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형 제도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과 성과 홍보·포상, 시민참여 정책·제도 연구와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발로 구성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933-312

[국민참여정책 추진 사업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안
국민참여 공론장 운영	'모두의 토론회' 6회 개최	600
국민참여 전문가 자문단 운영	4개 분과별 자문단 구성·운영(민관TF팀)	29
국민참여형 제도 개선	정책혁신랩 운영(10개 과제 지원)	210
국민참여 확산 및 홍보	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 홍보, 국민참여 포상	232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정책·제도 연구,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200
합계		1,271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정부는 그간 국민제안제도, 국민생각함 등 상시적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 도전한국 등 다양한 국민참여형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개별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민의 정책제안과 숙의·토론, 전문가 자문 및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번 사업과 유사하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와 사업, 온라인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 부분 확충되어 왔으나,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참여자에게 환류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6). 과거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서도 주요 국민참여형 사업(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생활공감정책, 열린소통포럼) 등과 관련하여 정책성과의 확산과 후속관리, 참여의 지속성 및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실효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국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수단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견이 실제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토론회, 정책혁신랩, 민관TF 등 과거 사업에서 활용해 온 추진방식을 다시 주요 사업수단으로 구성한 만큼, 종전 유사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종료·개편 사유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규사업의 추진방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전 사업에서 드러난 단발성 운영과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목적과 달리 성과지표는 ‘모두의 토론회 만족도 달성률’만 설정되어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나, 해당 지표는 행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에 집중하여 국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제안의 정책 반영 수준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국민참여정책추진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구분	주요 내용
정책목적	소통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참여형 정책발굴을 통해 국민참여 활성화와 제도개선 추진
기대효과	정책의 실효성·수용성 및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 제고, 정책의 민주성·투명성·정당성 확보 및 정부 정책 신뢰도 향상
성과지표	‘모두의 토론회 만족도 달성률(%)’
측정방법	토론회 개최 시 참가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거 유사한 국민참여형 사업의 추진경과와 성과, 종료·개편 원인 및 정책반영·후속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추진방식과 성과관리체계를 구체화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참여수단 운영 자체보다 기발굴된 의견의 정책반영과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 정책환류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토론회’는 소통혁신24·국민신문고 등 기존 국민참여 플랫폼에 축적된 제안을 활용해 의제를 선정하고, 시간·거리 제약으로 참여자가 편중되기 쉬운 대면 공론장을 확대하기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별도 의제 발굴과 행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참여의 대표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정책 추진사업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모두의 토론회’ 개최경비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TF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된 의제별로 국민

200명을 공개 모집·선발하여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는 토론회 기획·운영비, 행사 개최비, 참가자 수당, 행사장 임차료 등 총 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개별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제안 창구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제안과 정책수요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신문고는 국민제안을 접수하여 소관기관의 검토·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국민생각함은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투표·설문 등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는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소통혁신24 역시 혁신제안터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을 소관부처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제안·토론·숙의 관련 정부 온라인플랫폼 일부 예시]

구분	소통혁신24	디지털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내생각N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연계)
성격	정부-국민 간 소통·참여	제도개선 제안 접수 창구	정책제안, 토론, 실현하는 소통공간	국민 정책제안 심화검토 및 시행
주요 기능	30명 이상 공감 시 소관부처 검토), 국민심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 실시	일반·공개·공무원 제안 접수 및 처리, 채택제안 실시	생각쓰기·생각모음 (토론·투표·설문), 온라인공청회, 공모, 국민패널	제안 설문, 투표, 정책숙성(공청회· 정책화 추진회의),
정책제안 건수	혁신제안터 22,532건	공개제안 6,071건 (일반제안 제외)	생각모음 7,324건	공개 과제 8건

자료: 행정안전부

이같이 각 플랫폼별로 제안의 재검토 및 정책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 의제를 다시 발굴하고 공론장을 구성할 경우, 기존 국민참여 체계와의 연계가 약화되고 유사한 의견수렴 절차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별도의 회의체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보다, 기존 플랫폼에 축적된 국민제안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론장의 운영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토론회’를 회당 200명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현장토론 6회 개최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장토론은 참여자 간 심층적인 논의와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가자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더라도 이동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참여 여건이 되는 국민 위주로 신청과 참여가 이루어져 참여자 구성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등 기존 플랫폼에서도 토론·설문·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의 토론회의 목적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공론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되 심층적인 논의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일부 의제만 현장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계획과 예산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민참여 플랫폼에 축적된 국민제안과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재검토함으로써 지역·시간 등의 제약에 따른 참여기회의 한계를 완화하고 국민참여의 접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총괄·조정 부처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와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평가는 11개로, 9개 내역사업¹⁾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7년 이들 내역사업의 예산안 합계액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800만원 감액된 21억 5,500만원이다.

[2027년도 재난안전분야 평가 관련 주요 (내역)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집중안전점검 운영	404	340	340	340	-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33	145	145	143	△2	△1.4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50	44	44	38	△6	△13.6
재난관리평가 운영	123	130	130	130	-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58	962	962	927	△35	△3.6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56	54	54	54	-	-
지역자율방재역량강화	152	173	173	208	35	20.2
을지연습평가	125	125	125	125	-	-
국가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	180	200	200	190	△10	△5.0
합 계	2,181	2,173	2,173	2,155	△18	△0.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관련 세부사업 중 해당 평가 소요 예산이 편성된 내역사업만 기재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1-301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주요 법정평가 내역]

평가명	법적 근거	평가 내용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	재난안전법 제39조의4	주요 시설 안전성 점검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재난안전법 제73조의6	기관의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적 평가
지역안전지수 산출·공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0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지수 공표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	안전교육법 제17조	안전교육 정책 추진 실적 점검
재난관리평가	재난안전법 제33조의2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재난안전법 제35조	훈련관리 전(후)과정 평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자연재해 위험요인, 관리 추진 실적 평가
지역자율방재단활동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자율방재단 활동 실적, 활성화 노력도 평가
재난복구사업 추진실태 평가	자연재난대책법 제55조	복구예산 확보, 설계·공사 추진 실적 평가
을지연습 평가	비상대비 법률 제25조의2	전시직제 편성, 훈련, 전시상황실 운영 평가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국가안전 계획수립·이행·환류 추진실적 평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가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재난안전 평가제도 11개 중 일부는 평가대상·지표·증빙자료가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동일·유사한 실적을 반복 제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전담인력 여건과 평가 중복에 따른 업무 부담 및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통 자료의 통합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10개 소관 부서를 통해 11개의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개는 법정평가(191개 지표)로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평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지역안전지수 산출, 지자체 합동평가 등으로 잇달아 실시되며 일부는 시행 시기가 서로 겹친다.

이러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평가 간 대상·지표·증빙자료가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동일·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등 행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연간 지방자치단체 대상 법정 평가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	10월	11월	12월	
재난관리평가 실시				발표					
		겨울철 사전대비 및 대책평가		발표					
						안전한국훈련 평가		발표	
						자연재해 안전도진단 실시		발표	
							여름철 사전대비 및 대책평가		발표
평가		발표						재해복구 사업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발표					
						지역안전지수 선정		발표	

자료: 감사원(2025.10.). 「성과감사보고서: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점검」에서 발췌·수정

행정안전부 소관 14개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전반을 분석한 연구(민금영 외, 2026)²⁾에 따르면, 이 중 10개(71.4%)에서 평가대상, 지표, 제출자료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조정·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례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평가는 재난관리평가 및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과 평가지표와 대상이 동일하며, 안전점검의 날 추진 실적은 평가내용이 재난관리평가 7개 지표 및 집중안전점검 2개 지표와 유사하다. 기타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평가 등 다수 평가에서 점검대상과 증빙자료(사업계획서, 교육 이수 명단, 활동 사진 등)가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지자체에서 동일 자료를 평가별로 양식만 달리하여 반복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평가별 자료 요청의 범위·작성 기준·제출 기한이 상이하여 다른 평가에서 이미 검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다시 가공하고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 주관부서별로 별도 집계한 실적이 서로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수정하는 추가 업무도 발생할 수 있다.

2) 민금영 외, 「재난안전 분야 평가제도 효율화 및 재난관리평가 개선방안」.(2026). 참고

이러한 부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여건을 고려할 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전담인력은 평균 3.6명(최소 0명, 최대 5명)으로, 상시적인 재난관리 업무와 함께 평가 일정에 맞추어 자체평가서 작성, 증빙자료 취합, 현장평가 대응, 컨설팅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 대응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재난 예방·대응에 필요한 인력 운용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조정·연계 가능 평가 일부 예시]

구분	평가명	검토가 필요한 사항
조정·연계 가능 (통합 포함)	안전점검의 날 추진실적,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평가	재난관리평가 등 상위 평가와 평가대상·지표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대부분 중복
부분 조정 가능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 지역안전지수 산출·공표, 재난관리평가 재난복구사업 추진실태 평가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	평가체계는 유지하되 중복 지표 등은 점검·평가 결과를 상위 평가(재난관리평가 등)에 연계하여 반영할 필요

자료: 민금영 외(2026)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예산 측면에서도 유사한 실적과 증빙자료를 평가별로 반복 확인하는 방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현재 평가단 수당·여비, 우수기관 포상금, 기타 운영비 등 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각 관련 사업별로 별도 계상되어 있다. 지표와 제출자료의 중복이 해소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평가 운영비가 제도별로 분산되어 편성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평가별 기준에 맞춰 조사·작성하는 데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평가체계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추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내역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재난관리평가		집중안전점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일반수용비	105	일반수용비	384	일반수용비	654
포상금	492	사업추진비	11	국내여비	134
국내여비	25	일반연구비	340	사업추진비	17
				포상금 등	121

주: 평가를 위한 일부 직접경비 예시로 내역사업 총 예산액과 상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마지막으로 다수의 평가가 연중 추진되는데 모든 평가가 등급 부여·성과 확인에 편중되고 결과·영향 지표가 부족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피평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재난관리 역량 개선보다 평가 대응 자체, 즉 절차적 완결성 확보에 치중하는 형식적 환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관 11개 평가의 대상·시기·지표와 제출 증빙자료를 평가별로 대조하고, 지자체가 동일·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범위 및 이에 소요되는 업무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별 평가의 고유한 점검·진단 기능은 고려하되 공통 지표와 증빙자료의 통합관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 운영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비용을 함께 살펴 불필요한 재정소요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¹⁾은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미취업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156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	15,642	15,642	0	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현장 일경험과 직무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관련 협회·단체가 포함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0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관련 협·단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34만원(4대보험료 포함) ▫ 참여사업체: 청년 1인당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4대보험료 월 약 27만원 ▫ 운영(중간지원)기관 청년 1인당 70만원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5개월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첫째, 이 사업은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경험 제공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참여조직 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청년에게 양질의 직무경험과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사실상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 중으로, 2027년에는 참여 대상을 기존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비영리법인·단체²⁾에 더해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협·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대상이 확대될수록 청년에게 적절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조직의 유형뿐만 아니라 인적·재정적 규모, 사업분야와 업력, 업무체계 등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청년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교육·멘토링 여건에도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 또한 참여조직 대부분이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규모가 작고 재정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일경험

2) 2027년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용인원 요건을 삭제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해당 기관으로의 직접 채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 청년이 보다 양질의 직무경험을 쌓아 관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6년 시범사업의 참여현황을 보면 전체 1,715명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1,111명으로 64.8%, (예비)마을기업이 481명으로 28.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인적·재정적 규모는 조직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 대상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10인 이하 비영리법인·단체
계	1,715 (100.0)	481 (28.0)	1,111 (64.8)	123 (7.2)

자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별 운영 현황 차이]

(단위: 명, 억원)

구분	상시근로자 수(조합원 수)		연 매출액(자산)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마을기업	16	1	2.6	-
사회적협동조합	917	1	26.7	-

- 주: 1. 유형별 공개자료가 상이하여 마을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수와 자산을 공개하고 있음
 2. 마을기업은 가장 최근 공시자료인 '2024년 실태조사'에 근거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2026년 경영공시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참여대상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보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을 선별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27년에는 정식 사회적기업·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아직 사업기반을 형성·검증해 가는 단계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기업까지 참여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

러한 조직에 청년을 배치하여 5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기업을 비롯한 초기단계 조직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사업 수행경험, 상시인력 및 내부 업무체계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에게 부여할 업무나 이를 지도할 인력이 제한되어 동일한 재정지원에도 청년이 얻는 직무경험의 내용과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상용근로자 수가 1~2명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마을 주민이나 조합원 등 실제 해당 사업체·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이보다 많을 수 있고, 청년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제 근무인력이나 단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 연력이 충분하여 안정적 운영이 되는 조직이어야 청년이 해당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향후 실제 노동시장 진입도 가능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 예비마을기업·예비사회적기업, 관련 협·단체 등까지 참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지위나 규모만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 일경험 제공역량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참여 가능 조직을 확대하기보다, 청년에게 부여할 직무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전담 멘토의 확보 여부, 직무교육·멘토링 계획 및 이를 수행할 조직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무 및 교육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참여기업과 청년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멘토링의 이행 실적과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시범사업의 지역별 참여 현황을 토대로 청년의 일경험 수요, 참여조직의 분포·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우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참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비수도권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33,258개소 가운데 비수도권 소재 조직은 19,855개소로 59.7%를 차지한다. 이들 조직은 돌봄·사회복지, 농림·식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조직별 사업내용과 직무 제공역량에 따라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2026년 시범사업 배치인원 1,715명 가운데 비수도권은 1,242명으로 72.4%를 차지하여 수도권 473명(27.6%)을 크게 상회하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수(대상기업) 대비 배치인원 비율도 비수도권이 평균 6.3%로 수도권 평균(3.5%)보다 높다.

[지역별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분포 및 2026년 시범사업 배치인원 분포]

(단위: 개사, 명)

지역	대상기업 (A=B+C)	마을기업(B)	협동조합(C)	배치인원 (D)	배치인원 비율 (D/A)
서울	6,053	82	5,971	164	2.7%
부산	1,398	63	1,335	140	10.0%
대구	1,303	96	1,207	123	9.4%
인천	1,067	56	1,011	59	5.5%
광주	1,461	61	1,400	91	6.2%
대전	1,208	65	1,143	83	6.9%
울산	636	48	588	63	9.9%
세종	313	32	281	11	3.5%
경기	6,283	186	6,097	250	4.0%
강원	1,884	144	1,740	83	4.4%
충북	1,146	92	1,054	61	5.3%
충남	1,742	156	1,586	114	6.5%
전북	2,275	120	2,155	96	4.2%
전남	2,209	207	2,002	80	3.6%
경북	1,840	149	1,691	110	6.0%
경남	1,850	120	1,730	141	7.6%
제주	590	50	540	46	7.8%

주: 지역별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수는 2025년 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비수도권 내부에서는 대상기업 대비 배치인원 비율에 차이가 있다. 부산(10.0%)·울산(9.9%)·대구(9.4%)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세종(3.5%)·전남(3.6%)·전북(4.2%)·강원(4.4%)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비율은 8.3%, 도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5.4%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 사업의 배치인원이 시·도별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역시에는 조직 기반에 비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반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다수 소재하나 청년인구가 적은 도 지역에서는 일경험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역별 차이에는 청년의 참여수요, 조직의 업종·규모 및 일경험 제공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별 참여 여건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분기준에는 청년인구뿐 아니라 일경험을 제공할 조직의 분포와 역량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배정물량과 실제 참여수요, 참여조직의 특성 및 일경험 제공 실적을 비교하여 적정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음에도 배정물량이나 모집·매칭의 제약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청년은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참여조직에만 신청할 수 있어, 청년이 희망하는 일경험 조직이 인접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소속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인접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가 많은 광역시의 청년이 인접 도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청년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앞서 나타난 광역시와 도 지역 간 조직 활용도의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생활권 내에서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 참여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50%이고 청년 1인당 지원단가가 1,549만원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1인당 약 775만원의 대응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대응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배분기준이 조정되는 경우 재정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정부의 지방우대정책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시범사업의 지역별 배정물량, 청년 참여수요, 참여조직의 특성 및 일경험 제공 실적 등을 분석하여 배분기준에 참여조직의 분포와 역량을 반영하고, 인접 생활권 내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과 지방우대정책과 연계한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¹⁾은 지역안전지수 자살분야 취약지역에 자살예방 시설 보강 등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안전개선건설팅	4,957	5,588	5,588	12,049	6,461	115.6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	-	-	-	7,000	7,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은 물리적 시설개선 부문의 경우 사업 고유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나 심리지원, 안부확인서비스 등 서비스형 부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이미 수행 중인 자살예방사업 및 여타 방문형 복지서비스와 기능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안전지수²⁾ 상 자살분야 4~5등급에 해당하는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접근차단, 주거지 환경 개선, 심리지원 등 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632-303의 내역사업

2)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시·도, 시·군·구별 안전 수준을 각종 통계(사망자, 사고건수, 인구현황, 산업특성, 의식수준 등)를 기반으로 계량화하여 발표하는 평가 지표이다.

역별 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한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국고보조율 50%) 개소당 국비 2억 5,000만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다.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4~5등급 취약지역 28개소 - 개소당 사업비 5억원 내외 [개소당 사업 예시]		
	구분	주요 사업내용	소요예산
	하천·저수지	· 자살방지펜스 보강 및 지능형 CCTV설치	1.5억원
	단독주택 밀집지	·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 안부확인 도시락 지원	2억원
	공동주택	· 옥상 자동개폐장치, 심리적 안정조명설치	1.5억원
	도농지역	· 이동형 마음건강버스 운영	1억원
	고위험군	· 스마트AI 안부확인 서비스	1억원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하천·저수지 등의 자살방지펜스 보강 및 지능형 CCTV설치, 공동주택의 옥상자동개폐장치 등은 안전지수 하위지역에 대한 시설 인프라 보강이라는 사업 고유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부확인서비스, 도시락 지원, 이동형 마음건강버스 운영, AI안부확인서비스 등 방문·상담 중심의 서비스형 사업은 기존 자살예방 및 복지서비스 사업과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교육·홍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등 자살예방 전 과정에 걸친 사업을 이미 전국 단위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 상담·사례관리 및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 신규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심리지원·안부확인·고위험군 모니터링과 기능상 접점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체계는 개별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단위의 전문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복지부 사업의 시행주체에는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자살예방 관련 상담·현장대응·사후관리 등이 지역 단위로 수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동일 지역에서 별도의 심리지원이나 안부확인서비스를 다시 구성할 경우,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가 복수 부처 사업으로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비교]

구분	(행안부) 자살취약지구 안전개선	(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대상	지역안전지수 취약지역 28개소	전 국민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255개소
추진방식	자치단체 보조(보조율 50%)	자치단체·민간경상 보조(보조율 50~100%) 민간위탁사업 등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선(자살방지펜스 등) · 안부확인서비스·도시락 지원 · 이동형 마음건강버스 운영 · 스마트 AI안부확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발굴·지원관리 (응급실기반 사후관리 등 포함) · 자살예방센터 운영(상담, 사례관리 등) · 자살예방상담 · 자살예방교육·홍보 ·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돌봄(시범) · 자살긴급대응체계 구축 * 별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운영
전달체계	행안부 → 지자체	복지부 → 지자체·보건소·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2027년 예산안	70억원(신규)	총 946.8억원(211억원 증액)

자료: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자체별 자살 특성과 지역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대상 지자체에 재정을 교부한 뒤 심리지원, 안부확인, 상담, 고위험군 모니터링 등 서비스형 사업을 지역별로 다시 구성하도록 할 경우, 동일 지자체 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병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 간 대상과 수단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사업성과의 귀속과 책임소재 역시 모호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가능성은 보건복지부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취약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정책목적은 상이하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하여 위험징후를 발굴하고 공공서비스로 연계한다는 사업방식은 유사하다. 이처럼 목적이 다른 개별사업들이 동일 위기가구 대상으로 유사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중복 제공하면서 정작 통합적 사례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읍면동 스마트복지공동체(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개요]

- 대 상: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 안부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
- 사업방식: 우체국 집배원이 주기적 대면 방문, 생필품·도시락 전달과 함께 건강상태 등 확인 방문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긴급지원·복지서비스 등과 연계
- 사업규모: 지원인원 2,656명(2024) → 5,770명(2025) → 7,365명(2026)
- 예산규모: 9,000만원(2024) → 3억 5,000만원(2025) → 5억 7,400만원(2026)
 - ※ 예산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 ※ 2027년은 동 내역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이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정책목적의 특성상 시설개선만으로는 정책효과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서비스형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적 개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대상 지자체 전역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지원 등은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위험도 평가, 전문상담, 의료·복지서비스,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존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신규사업을 통해 별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시설개선 과정에서 발굴된 위험요인이나 고위험군을 기존 자살예방체계로 연계하는 방식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자살방지펜스, 지능형 CCTV 등 물리적 시설개선은 지역의 낙인효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자살취약지구 정비’로 한정하기보다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환경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비 지원이 특정 자살취약지구의 개별 정비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물리적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예산을 재산정하고, 기존 자살예방·복지 분야와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형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사업¹⁾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합 통계관리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억원이 증액된 15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8,915	23,753	23,753	32,034	8,281	34.9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11,839	11,839	15,139	3,300	27.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안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지역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마련 등 청년마을 운영	10,895
지역주도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민·관·공·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원발굴과 의제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역량 제고	2,500
다부처 연계지역 역량성장 거점 활성화	다양한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및 유휴공간을 지역활성화거점으로 고도화하여 다분야 사업연계, 정책랩 등 지원	2,500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한 혁신모델 발굴,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통합 통계관리 등	15,139
AX기반 사회연대경제 지원	사회연대경제 조직 AX전환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혁신기반 구축	1,000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38-30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기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정책지원·통계관리·정보제공 등 유사한 기능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기능을 신규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26.9.15., '27.3.16.시행예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449억 3,000만원) 하였다.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 금융전담기관 출연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법령 정비 이전 국정과제 이행²⁾을 근거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내역사업에도 별개로 정책지원, 실태조사·통계관리, 관계기관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등 추진체계 성격의 기능이 병렬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개요]

- 혁신모델 발굴지원: 25개소×10억원×보조율50%(지자체보조) = 125억원
- 사회연대경제 정책지원: 전국 광역 시도 컨설팅 및 네트워킹, 협업과제 발굴 등 = 8.5억원
-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1개 시도×20억원×보조율50%=10억원
- 온라인 아카이브: 사회연대경제 아카이브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2억원
- 통합 통계관리: 사회연대경제 통합 통계관리 = 2억원
- 워크숍·세미나, 사업관리 심사·자문수당 및 회의 운영 등 = 3.89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지원, 협의체와 간담회 운영의 상당부분은 법령 신설에 따른 정책센터의 정책연구·지원 기능과 중복되므로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중복 계상된

2)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고 2026년 예산에 관련 사업을 편성하였다.

예산은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예산 역시 전국 단위로 정책홍보 및 컨퍼런스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의 국내외 관련기관 교류·협력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연대경제활성화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비교]

구분	(‘26~)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27)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정책지원·협력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시·도 컨설팅·네트워킹·협업과제 발굴 등 · 정책홍보, 우수사례 확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정책센터)정책개발·현장연구·정책지원, 관련기관 교류·협력
통계·실태조사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통계관리 ·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센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 (타 세부사업) 사회연대경제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회의·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협의체 워크숍, 간담회, 전국 네트워크 회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센터) 세미나·워크숍, 유관기관 교류·협력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모델 발굴·지원 	-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연대경제박람회·국제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센터) 국제세미나 등
예산안	151억 3,900만원	449억 3,000만원 (13억 1,500만원)

주: 괄호 안 금액이 사회연대경제추진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중 관련 사업 예산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 작성과 정보공개는 이미 사회적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협동조합 등 각 정책영역별로 소관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합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센터에 실태조사·통계관리 기능과 예산을 부여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련 통계를 포괄적으로 공시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에도 통합 통계관리와 온라인 아카이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부처 간 분산된 통계·정보공개 체계를 총괄·조정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달리,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통계관리 및 정보공개 기능이 복수 사업에 중복 반영된 것으로, 통합 통계관리 및 온라인 아카이브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관련 기능은 정책센터 및 향후 통합플랫폼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 사회연대경제 실태조사·통계관리 사업 분산 현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		
통합 통계관리 2억원		실태조사·통계작성 포함 정책센터운영 7억원		
온라인 아카이브운영 2억원		사회연대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27억원		
▲ 사회연대경제 조직유형별 실태조사·통계관리 및 공시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사회적 기업포털	한국자활기업복지 개발원 누리집	마을기업 누리집	소셜벤처 스퀘어	Coop 협동조합포털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신설·운영되는 만큼 총괄체계와 별개로 동 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 마련과 실태관리가 필요하여 해당 재정소요를 동 사업에 반영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필요성은 오히려 신규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에 포함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업 체계상 일관적이다. 정책센터에 사회연대경제 정책지원과 조사·연구뿐 아니라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일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나 지역 단위 자료수집 또한 해당 총괄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목적의 협력·조사·통계 기능을 기존 사업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은 총괄체계 구축의 정책 취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동 내역사업으로 추진 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내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다부처 연계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을 포괄한 ‘프로젝트 과제 수’이다. 이를 통해 153억원 이상이 편성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달성도]

(단위: 건, %)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출처
프로젝트 과제수	목표	40	40	-	8	8	내역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건수	내역사업 프로젝트 선정 수	내역사업 프로젝트 선정 결과 보고서
	실적	42	-	-	-	-			
	달성도	105	-	-	-	-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별도의 추진체계와 사업을 신설하면서도 기존 사업에 협력·통계·정보관리 기능을 중복 편성하고, 151억 3,900만원 규모의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중복 예산을 감액하여 신규 추진체계로 일원화하고 기존 현장사업의 성과지표를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¹⁾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간(2022~2031년)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재원 중 일부를 매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으나 운용 특성상 기금의 출자 재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상당 규모 유보되어 있으므로, 기존 유보재원과 자펀드 결성 실적 및 납입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출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출자 주기를 격년으로 조정하는 등 출자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61-300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중 7,500억원은 기초지원계정으로 2,500억원은 광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광역지원계정은 2024년부터 2,500억원 중 1,500억원을 인구감소지수·재정자립도·인구증감률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에 매년 출자해 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개정(‘26.8.)에 따라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투자기구에 우선 출자하고, 출자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에 차등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²⁾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2027년에는 1,000억원 중 500억원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배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구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연 1조)	기초 계정 (75%, 7,500억)	인구감소지역 89개(95%, 7,125억)	▶ 투자계획 평가 후 차등 배분
		관심지역 18개(5%, 375억)	
	광역 계정 (25%, 2,500억)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배분 (1,500억)	▶ 지역 여건을 반영 산식에 따라 배분
		평가기반 차등배분(500억)	▶ 투자계획 평가 후 차등 배분
		지역활성화투자펀드(500억)	▶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53호, 2026.8.18. 일부개정)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우선 출자하고, 그 금액 중 출자하고 남은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시·도에 차등 배분할 수 있다.

그런데 2024~2026년 10월 현재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펀드에 출자한 2,500억원 중 프로젝트 약정규모는 1,075억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363억원 수준으로, 출자액의 85.7%인 2,142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유보되어 있다.³⁾ 유보액 중 기약정 미납입분 71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425억원은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약정되지 않은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투자 재원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예치·운용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액 약정·납입 현황]

구분	금액(억원)	비중(%)
출자액(2024~2026년)(A)	2,500	100.0%
프로젝트 약정규모(B)	1,075	-
실집행액(C)	363	14.5
지방공제회 유보액(A-C)	2,142	85.7
기약정 미납입액(B-C)	712	-
미약정액(A-B)	1,425	-

주: 2026년 10월 초 기준(사업이 취소된 충북 단양·충남 태안 및 재심사 중인 경북 경주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유보가 장기화되는 것은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에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펀드 운용의 특성과 달리 모펀드 출자는 매년 동일한 규모로 계속되어 미투자 출자금이 누적되는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2026년 10월 초 기준 승인된 11개 프로젝트 중 사업이 취소된 2개 사례를 제외하고 자펀드 결성을 마친 것은 9개인데, 경북 구미(18개월), 충남 서산(15개월)은 1년이 넘게 소요되었고 경남 거제도 10개월 내외가 소요되었다. 2024년 승인된 경북 경주 사업은 현재까지 심사 중이다.

3)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프로젝트 선정과 자펀드 결성을 거쳐 사업에 투자하며, 출자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납입하는 방식(Capital Call)으로 집행된다. 자펀드가 결성되더라도 출자금이 공정률에 따라 분할 납입되므로 출자 결정액과 실제 투입액 간 차이가 발생한다.

신규 프로젝트의 규모와 연도별 약정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취소·재심사 사업을 제외한 승인 프로젝트는 2024년 3개(총사업비 1조 6,138억원), 2025년 3개(1조 1,159억원), 2026년 9월까지 3개(8,178억원)이며, 각 연도 출자액 1,000억원 대비 기금 약정액은 2024년 521억원(52.1%), 2025년 264억원(26.4%)이다. 2026년도 기금 약정액이 292억원 수준이나 출자액을 500억으로 조정하여 비중은 58.4%로 높아졌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실출자금액(2026.9월 말 기준)]

(단위: 억원)

프로젝트명		승인일	자펀드 결성일	총사업비		기금 약정액
				모펀드 투자액		
1호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4.2.16.	'25.9.26.	사업취소('26.8.7.)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25.8.21.	876	39	13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4.8.29.	'25.2.28.	14,362	1,436	478
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심사중	-	-	-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24.12.24.	'26.4.9.	900	90	3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5.11.4	'26.8.25.	7,200	420	140
7호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1.4.	'25.12.10.	3,959	372	124
8호	충남 태안 Seed Farm 1호	'25.11.28.	-	사업취소('26.9.23.)		
9호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	'26.8.6.	'26.8.27.	6,000	658	217
10호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26.8.6.	'26.8.25.	1,798	180	60
11호	경북 안동 산림자원수집센터 조성	'26.8.26.	'26.8.28.	380	38	13
합 계				35,475	3,234	1,075

자료: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출자액을 500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집행 지연에 대응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2027년 추가 출자의 필요성과 규모는 기존 유보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자금은 자펀드 결성과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납입되므로, 10월 현재 약정되었으나 납입되지 않은 712억원은 기존 유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미약정 자원 역시 1,425억원으로, 최근 2년간(2025~2026년)의 연평균 약정 실적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상당 기간의 약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펀드의 운용구조를 감안하면 매년 출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2025년의 경우 첫 투자승인이 당해연도 11월에 이루어지는 등 한 해 출자분을 자펀드에 약정하여 소진하는 데 약 2년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기존 출자 재원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추가 출자가 이루어지면, 신규 출자분은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공제회에 유보재원으로 적립된다. 따라서 출자 주기와 규모를 실제 납입 수요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유보 상태는 출자 재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적시에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재원을 별도로 배분한 것이다. 이 재원의 정책적 정당성은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투입되어 실질적인 지역투자로 이어지는 데에서 확보된다. 그럼에도 출자 재원의 상당 부분이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공제회에 장기간 예치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었던 재원의 투입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조성된 출자 재원만으로도 상당 기간 신규 프로젝트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재원을 우선 소진하는 운용 구조를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출자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격년 출자 등 실제 납입 수요에 부합하는 출자계획을 마련하여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0억원이 증액된 1조 4,5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99,969	1,150,000	1,150,000	1,450,000	300,000	26.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국비지원율을 적용하나, 2025년 사업추진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국비교부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고 집행부진 사례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차등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며, 2025년부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율을 수도권 등의 일반지역보다 높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9-306

2027년 예산안에도 국비지원율을 3~9%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년도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국비지원율을 달리 적용한 데 반해 2027년에는 ‘지방우대지수’에 적용되는 새로운 지역구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할인액에 대한 지방비부담률은 종전과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5%로 동일하다.

[2024~2027년(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기준]

자치단체 유형	2024년 (3,000억원)	2025년		2026년 (1조 1,500억원)	2027년 (1조 4,500억원)
		제1회 추경 (4,000억원)	제2회 추경 (6,000억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미지원	2%	-	-
일반자치단체	2%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수도권: 3% 비수도권: 5%	지역구분 기준 검토 중 3~9%
인구감소지역	5%	5%	10%	7%	

주: 2024년과 2025년은 표에 기재된 일반할인지원 외 기타 정책할인지원(착한가격업소 상품권할인지원, 지역문제해결관련 가맹점 할인지원(3%)과 고용위기 및 특별재난지역 할인지원(5~10%) 별도 시행
자료: 각 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즉, 2027년도 사업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되 지방비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설정(5%)한다는 사업설계의 기본 구조는 2025년과 같게 유지하면서 예산 규모를 1조 4,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구분과 지원율, 지방비부담률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차등지원 방식이 처음 적용된 2025년 사업에서 자원배분과 집행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비배분계획 대비 교부액을 보면, 인구감소지역만 계획에 비해 교부액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불교부단체와 기타 일반자치단체는 당초 계획 대비 실교부액이 75억원(69.3%), 29억원(0.4%)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2,979억원을 계획하였으나 2,252억원만 교부되어 계획 대비 727억원(24.4%)이 감소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설계하였음에도 실제 교부 단계에서는 재원이 오히려 일반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별 국비배분계획액 대비 실교부액 비교]

(단위: 백만원)

유형 ¹⁾	국비지원액		국비지원 계획·실제 차이(B-A)
	당초계획(A)	교부액(B)	
불교부단체	10,877	18,423	7,546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지역	661,255	664,192	2,937
인구감소지역	297,933	225,199	△72,734

주: 1)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안의 지역구분이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을 불교부단체(2차 추경만 해당),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만 분류하여 계상함

1. 당초계획은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지역별 발행계획액과 국비지원율을 곱한 값에 근거함
2. 일반발행 지원내역만 계상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및 국고보조금통합포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부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된다. 2025년 동 사업에 참여한 183개 기초자치단체 중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31개이며, 이 가운데 29개가 비수도권(7개)과 인구감소지역(22개)에 해당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당 평균 발행규모는 458억원으로 수도권(1,519억원)의 3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83.1% 수준이고 사업 참여 지자체의 26%인 22개에서 실집행률이 70% 미만이었다.

[2025년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비 지원 현황]

구분		단체 수	평균 발행규모 (억원)	평균 국비교부액 (억원)	평균 실집행액 (억원)	실집행률 (%)	집행률70% 미만 지자체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¹⁾		27	79,889	682	619	90.7	1개
일반 자치단체	수도권	28	151,854	4,745	4,272	90.0	1개
	비수도권	47	124,433	6,259	5,181	82.8	7개
인구감소지역 ²⁾		81	45,812	3,047	2,533	83.1	22개

주 1) 2025년 2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성남, 화성) 및 서울 본청과 함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서울 자치구 등 27개 자치단체

2)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81개 시군구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계획 대비 교부 축소와 집행 저조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비롯된 별개의 현상이지만, 두 문제가 공통적으로 국비지원율을 우대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2027년도 사업설계 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조사에 근거한 2027년도 발행계획을 지역유형별로 재구성하면(2026년 5월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제외) 인구감소지역의 계획발행액은 전체의 18.4% 수준이고 지자체당 평균 계획발행액도 수도권·비수도권의 50%를 하회한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발행계획]

구분	발행계획액	비중	지자체당 평균 발행계획액
수도권(27)	6조 5,040억원	27.6%	2,409억원
비수도권(54)	12조 7,033억원	54.0%	2,352억원
인구감소지역(84)	4조 3,229억원	18.4%	515억원
합 계	23조 5,302억원	100.0%	-

주: 괄호 안은 해당 유형 지방자치단체 수를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할인액에 대한 지방비부담률은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5%로 동일하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국비를 많이 배정받는 만큼 지방비 매칭 부담도 함께 커져 추가 발행에 제약이 있다. 또한 인구와 지역 내 소비수요가 작은 지역은 발행규모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데, 대행업체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발행대행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²⁾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발행량을 늘리더라도 수수료율이 낮아질 만한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워,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발행 확대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어민 수당, 정착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정책발행분이 유통되고 있어 주민이 일반발행분을 별도로 구매할 유인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2025.11.)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의 저조한 집행실적이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대응지방비 확보 여력의 변동, 지자체 실수요 예측의 한계, 예상보다 낮은 판매량에 따른 계획변경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2027년 예산안은 국비지원율을 최대 9%까지 상향 조정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판매량 저조나 발행계획 변경은 집행부진의 결과일 뿐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며, 집행 부진 지자체가 국비지원율을 우대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개별 지자체의 사정이 아닌 제도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7년에 지역별 차등 지원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집행 부진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율과 교부 규모만 조정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계획 대비 교부액이 축소되고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별 발행계획의 사전 검증, 대응지방비 부담 완화, 집행관리 강화 등 보완 기제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의 자연재해 취약 요인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국고보조율 50%)하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0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1,52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944,332	1,062,959	1,062,959	1,152,998	90,039	8.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재해위험을 방재시설 설계·관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201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시설별 설계기준도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극한호우 등 변화된 재해위험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신 기후변화 전망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비기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5-300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제조사를 거쳐 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하고 5년 단위 정비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개별 정비시설은 소하천·하수도·하천 등 시설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다. 이 가운데 강우·홍수 관련 시설은 과거 관측 강우자료의 빈도해석을 통해 해당 설계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설계홍수량과 시설규모 등을 결정한다. 지구 지정 역시 침수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등 과거 피해이력을 우선 고려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즉, 정비체계 전반이 과거 기후조건을 연장선에서 위험을 판단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근 극한호우가 되풀이되면서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한 방재기준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²⁾에 따르면 전국 213개 지방자치단체 중 77개(36.2%)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실제 강우량이 방재성능목표를 넘어섰으며, 최근 군산시, 익산시 등에서 당시 방재성능목표(78~85mm)를 크게 상회하는 시간당 130mm 이상 강우가 관측되었다. 금년도 거제시에 발생한 호우 역시 기상청에서 200년 빈도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우가 최근 2년간('24~'25) 31회 관측되는 등 현행 방재기준이 전제하는 수준을 넘는 강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2026년 1월 확률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고, 전지구 기후 모델(GCM)³⁾ 수를 확대 반영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방재성능목표는 지역 전체가 견뎌야 할 강우량 목표이고 개별 방재시설은 소하천·하수도·하천 등 시설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므로, 목표 상향이 실제 시설의 성능 강화로 이어지려면 설계기준에도 기후변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은 이를 위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별·빈도별 보정률을 각 부처 설계기준에 제시하는 지침이나, 2017년 개정 이후 갱신되지 않았고 적용은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Ⅱ」, 성과감사 결과보고서.(2024.10.)

3) Global Climate Model의 약자로 지구의 대기, 해양, 육지, 빙하 등 기후 시스템을 수치적으로 묘사하여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의미한다.

또한 강우 분야의 경우,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은 일 단위 증감률과 30·50·100·200년 빈도의 강우 할증률만 제시하여 임계지속기간에 따른 강우량이나 실무 설계빈도(하수도 20년, 하천 80년)를 적용하는 시설의 설계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방재성능목표를 높이는 것만으로 개별 정비시설의 설계 조건과 처리능력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는 설계·보상 및 공사에 수년이 소요되고 정비된 시설도 장기 사용되는 만큼 설계 당시 강우 조건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기후위험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7개소 등 총 194개소의 신규 정비사업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2027년 중 현행 시설별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설계가 확정되어 향후 3~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2027년(안) 재해위험지역정비 내역별 사업개소수 및 기준단가 비교]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2026		2027		단가 증감률
	개소	단가	개소	단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59	1,201	47	1,392	15.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계속)	380	2,863	394	2,472	△13.7
재해위험저수지(신규)	24	200	22	221	10.5
재해위험저수지(계속)	70	700	66	993	41.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신규)	82	523	71	552	5.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계속)	131	1,399	118	2,047	46.3
풍수해 생활권(신규)	42	1,904	54	1,904	0.0
풍수해 생활권(계속)	123	4,929	154	5,273	7.0

주: 해당연도 예산액으로 개별 지구의 총사업비와 상이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대규모 신규 물량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후위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준공 직후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에 미달하거나 추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발생하여 후속 재정투자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27년 신규 착수사업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후변화 전망과 개편된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필요 시 시설규모와 사업비 산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준공 이후의 재설계·보강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강우 특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시설별 설계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설계 및 사업비 산정 등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사업¹⁾은 지역 거점별로 복지·문화·체육·돌봄·창업 등의 시설을 하나로 복합화한 시설물을 건립하여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비 의무 매칭 없이 전국 90개소에 국비를 정액 지원하기 위한 1조 5,00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	-	-	1,500,500	1,500,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부처별 지역 공동체 시설의 활용 저조와 운영상 한계에 대응하여 기존 공간의 재활용·기능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대규모 복합센터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기존 시설의 분포·이용실적과 유희화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투자규모와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시설 구축은 여러 부처의 사업을 통해 구성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거점공간을 확충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미래대응기금 4432-300

하였고, 행정안전부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공터·주차장·청사 등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조성하여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99개소를 공급하였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과 관계부처 공동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추진되어 왔다.

이들 사업은 정책목적과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주민의 문화·체육·복지·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 실제 지역 거점시설을 분석한 연구²⁾에 따르면 어울림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거점시설이 동일 생활권 안에서 100m 이내 중복 입지한 사례가 있고, 교육실·라운지 등 제공공간도 80%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지역 거점공간 조성 사업 현황]

부처명	주요 지원 사업	대표적 조성 공간 및 시설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력타운 등)	마을복합센터, 지역활력거점 공간, 공유주방·공유오피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어울림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거점공간, 마을공동체 공간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센터, 문화거점 공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특히 시설 조성 단계에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조성 이후의 운영·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시설 공급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분포와 이용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유사한 기능의 공간이 추가로 조성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한정된 이용 수요가 복수의 시설로 분산되어 개별 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관련 연구들은 시설 공급에 비해 운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거점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쇠퇴지역이 갖는 입지적 제약, 운영비용 부담,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의

2) 전북연구원, 「지역활성화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및 운영방안」, (2022).참고

부족을 지속적인 시설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³⁾ 이들 연구는 시설의 유희화가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보다는 수요·입지·운영체계의 문제와 결부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제 부처별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가운데 일부는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유희공간으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다부처 연계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기조성된 거점과 유희공간에서의 지역 문제 해결 활동과 리빙랩 운영 등을 지원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유희화된 기존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7년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거점공간 조성·기능 고도화 사업 비교]

구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다부처 연계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
주요 대상	공공 보유 유희공간 및 지역 공동체	여러 부처·지자체가 조성한 거점 및 유희공간	지역수요에 따른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시설
주요 지원내용	공동체 활동공간 신축·리모델링	기존 공간 기능 고도화, 정책랩 등 지원	복합센터 신축·리모델링
2027년 예산안	26억 500만원	25억원	1조 5,000억원
지원조건	원칙적으로 국비 50%, (인구감소지역 60%)	국비 50%, 지방비 50%	신축형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형 최대 100억원 국비 정액지원
추진방식	시·도 자율편성	지방자치단체 공모	시·군·구 공모

자료: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처럼 기조성 시설의 유희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조성 단계에서 수요와 운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시설투자가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설투자의 적정성은 건립비 규모만이 아니라 이용실적, 서비스 제공 효과, 장기적인 운영·유지관리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건축공간연구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2022) 및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2024) 참고

그러나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사업은 2년간 3조원을 투입하여 18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상 이 가운데 3분의 2인 120개소가 신축형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소 수와 신축·리모델링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나, 복합센터 가이드라인이 예시로 든 커뮤니티·돌봄·창업 기능은 위 표의 기존 거점시설이 수행해 온 기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개소당 정액 지원(신축형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형 최대 100억원)총 180개소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으로 개소 수 및 신축·리모델링 비율 재검토 중 · 2027년 예산안 1조 5,000억원(90개소)(사업관리비 등 5억원 별도)		
		'27년	'28년
	합 계	1.5조원(90개소)	1.5조원(90개소)
	신축형	12,000억원(60개×200억원)	12,000억원(60개×200억원)
	리모델링형	3,000억원(30개×100억원)	3,000억원(30개×100억원)
복합화 기능 (예시)	<div><div>기능</div><div>예시</div></div>		
	<div><div>❶커뮤니티기능</div><div>· 건강, 문화, 휴식 등 지역 내 여가·사회활동 지원</div></div>		
	<div><div>건강기능</div><div>ex)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div></div>		
	<div><div>문화기능</div><div>ex)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문화교실 등</div></div>		
	<div><div>휴식기능</div><div>ex) 도시공원, 무더위쉼터, 카페, 경로당, 마을회관 등</div></div>		
	<div><div>❷돌봄기능</div><div>ex)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여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div></div>		
	<div><div>❸창업·일자리기능</div><div>ex) 스타트업파크, 공유오피스, 일자리지원센터 등</div></div>		
	<div><div>+α (생활편의기능, 공간정비 등)</div><div>지방정부 공모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 발굴·제시 가능</div></div>		
	선정 방식		
	지원 원칙		
집행 체계			
시·군·구가 사업을 발굴·신청하고 공모로 선정, 신속 추진이 가능하면 가점 부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지방이 자율 설계, 공공기관·민간단체 사무실 용도는 지양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지침 수립과 공모 선정 담당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럼에도 정부 계획에는 이미 조성된 거점시설의 분포와 이용실적, 유희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선정 기준도 자체 부지 확보 등 신속한 추진 가능성에 가점부여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단일한 정책목적 아래 지원 기준과 재원구조를 일괄 설계하여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하는 개별사업의 사업비가 200억원 이하여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총 공급량, 지역 간 배분의 적정성,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첩, 건립 이후 운영재원 소요 등은 어느 단계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구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더라도 이용수요, 운영주체, 지속적인 운영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존 시설의 활용 저조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복합센터 자체가 또 하나의 유희시설로 남을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의 투자규모와 대상지를 확정하기 전에 부처별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위치·기능·이용실적·운영비와 유희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별 서비스 부족 정도와 장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 기능 통합·재배치, 운영 개선을 우선 검토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을 지원하도록 사업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5,4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46억원(2.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5,07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00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17,646	1,476,290	1,476,290	1,507,710	31,420	2.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8,833	36,732	36,732	39,960	3,228	8.8
합 계	1,446,479	1,513,022	1,513,022	1,547,670	34,648	2.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4조 9,83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210억원(5.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4조 8,891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8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216,617	14,168,029	14,168,029	14,889,053	721,024	5.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151	88,966	88,966	88,766	△200	△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	5,146	5,146	5,347	201	3.9
합 계	13,299,774	14,262,141	14,262,141	14,983,166	721,025	5.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경찰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6,02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13억원(2.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5,07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46억원이다.

[2027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17,646	1,476,290	1,476,290	1,507,710	31,420	2.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5,401	94,712	94,712	94,641	△71	△0.1
합 계	1,503,047	1,571,002	1,571,002	1,602,351	31,349	2.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5조 42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213억원(5.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조 9,422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4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원이다.

[2027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267,442	14,221,023	14,221,023	14,942,208	721,185	5.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3,379	94,712	94,712	94,641	△71	△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	5,146	5,146	5,347	201	3.9
합 계	13,355,827	14,320,881	14,320,881	15,042,196	721,315	5.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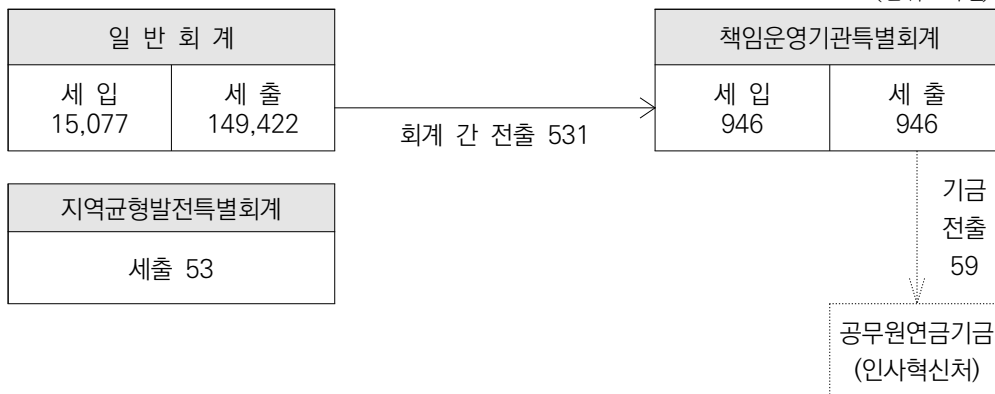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다.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531억원 전출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9억원 전출한다.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2027년도 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재난안전 임무상황 중심 퍼지컬AI 개발 및 현장실증(R&D)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45억 1,400만원), ②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을 치안현장에 도입하기 위하여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사업의 예산(2026년 218억 5,100만원 → 2027년 64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다.

2027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찰청은 2025년부터 4륜형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성과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함에도 차년도에 이를 300대로 일시 구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편성 단가도 높으므로 표준화 및 추가 검증을 위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실의 녹화건수가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녹화실시율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영상녹화실을 신규로 신설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진술녹화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진술영상 녹화실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청은 기존 대면으로 신고받던 집회신고를 온라인으로도 신고받고자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나,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방문신고보다 신고 단계의 조율이 어렵고 신고내용의 완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축 및 운영 전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45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재난안전 임무상황 중심 피지컬AI 개발 및 현장실증(R&D) 사업은 재난 안전 대응 임무 현장에서 인력 중심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로봇 협업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재난안전 임무상황 중심 피지컬 AI 개발 및 현장실증(R&D)	4,514

자료: 경찰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정보화),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과학적범죄수사고도화 기술개발(R&D) 등이 있다.

①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사업은 치안·소방 현장 통합 지휘·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사업은 교통경찰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인 TCS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③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사업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을 치안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④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은 수증 수색 시스템 개발 및 신속 DNA 분석 시스템 개발 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개)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1,248	1,248	7,437	6,189	495.9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1,387	1,387	10,854	9,467	682.6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24,941	24,941	64,101	39,160	157.0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R&D)	3,068	3,068	7,552	4,484	146.2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 지원(R&D)	820	820	1,920	1,100	134.1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 석및추론시스템개발(R&D)	6,136	6,136	12,182	6,046	98.5
	경찰관채용교육	19,691	19,691	32,874	13,183	66.9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 (폴리스랩3.0)	2,494	2,494	4,347	1,853	74.3
	대국민소통강화	1,362	1,362	2,245	883	64.8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9,675	9,675	15,021	5,346	55.3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4,875	14,875	19,026	4,151	27.9
	치안데이터활용기술개발 (R&D)	1,560	1,560	2,063	503	32.2
	112시스템운영(정보화)	21,372	21,372	31,869	10,497	49.1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정보화)	-	-	2,623	2,623	순증
	안보수사역량강화(정보화)	-	-	523	523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사업의 추진 여부 검토 필요

가. 현 황

4륜형 순찰로봇 도입 사업¹⁾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을 치안현장에 도입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반복적인 순찰을 통해 제한된 순찰인력을 보조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4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2,669	24,941	24,941	64,101	39,160	157.0
4륜형 순찰로봇 도입·보급	-	-	-	45,000	4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경찰청은 2025년부터 4륜형 순찰로봇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데, 성과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함에도 차년도에 이를 300대로 일시 구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편성 단가도 높으므로 표준화 및 추가 검증을 위한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4륜형 순찰로봇이란, 공원·아파트 등 CCTV 사각지대에서 이동형 CCTV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으로, 경찰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4륜형 순찰로봇을 도입·운영하며 순찰활동을 보완·확장하는 치안 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11

[4륜형 순찰로봇 운영 사진]



자료: 경찰청

구체적으로 4륜형 순찰로봇 실증사업은 A사의 순찰로봇을 수원 화성에 2대, B사의 순찰로봇을 고양에 2대, C사의 순찰로봇을 분당에 4대, 전주에 1대 등 총 9대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륜형 순찰로봇 시범사업 운영 현황]

구분	A사	B사	C사	
실증관서	수원	고양	분당	전주
운영대수	2대	2대	4대	1대
배터리	충전 8시간, 운영 8시간	충전 6시간, 운영 6시간	충전 6시간, 운영 6시간	충전 6시간, 운영 6시간
운영장소	화성 행궁 광장	공원 화정역	서현·판교· 아탑역 율동공원	전주천
운영기간	'25.8.~'26.6. ¹⁾	'26.2.~	'26.1.~	'25.12.~

주: 1) 2026년 9월 기준 운영을 중단한 상황으로, 이후 환경을 변화시켜 실증 재개 예정

자료: 경찰청 자료를 재구성

경찰청은 2027년 4륜형 순찰로봇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단가 1억 5,000만원으로 도입 및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다.

① 그러나 경찰청이 시범운영한 4륜형 순찰로봇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측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청은 단순히 각 4륜형 순찰로봇의 운행 시간과 운행 거리를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장비의 고장률, 촬영의 오류율 및 순찰 기여도 등 객관적인 실증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치안활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기존 경찰관의 순찰활동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관리적 한계가 나타났는지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범운영한 순찰로봇의 경우 행궁 광장, 공원 및 산책로 등 개방된 장소에서 운영을 하였으나, 새로 도입하는 장비의 경우 CCTV가 미설치 지역이나 개방형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실제 배치 후보지의 계단·연석·경사 등 운용환경을 반영한 실증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경찰청은 향후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각 관서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증을 통한 피드백 없이 곧바로 300대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장비를 실전에 도입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또한, 경찰청은 2027년에 도입할 4륜형 순찰로봇 300대를 모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는데, 4륜형 순찰로봇은 촬영한 영상을 소관 경찰서에 전송하여 통신비(공공요금 및 제세)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경찰청의 다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인 바디캠의 경우 2027년 예산안상 통신비 2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통신비가 소요되는 4륜형 순찰로봇의 경우 별도 통신비를 편성하지 않아 타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장비만 도입하고 실제로 운영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륜형 순찰로봇 도입 사업과 바디캠 통신료 비교]

구분	4륜형 순찰로봇	바디캠
운영 예정 대수	300대	2,044대
통신비(공공요금 및 제세)	-	29억 4,300만원 (대당 1개월 12만원)

자료: 경찰청 자료를 재구성

또한, 경찰청은 202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A사 로봇의 단가인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경찰청이 업체별로 확인한 2027년 견적은 4,000만원~1억원 수준으로, 예산안 상 단가는 이에 비해 5,000만원~1억 1,000만원 높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²⁾

[4륜형 순찰로봇 단가]

구분	A사	B사	C사
실증관서	수원팔달(2대)	고양(2대)	분당, 전주완산(5대)
2027년 대당 단가	8,000만원~1억원	3,500만원~5,500만원	4,000만원~6,000만원
2027년 예산안 편성	1억 5,000만원		
2027년 예산안상 대당 단가와 차이	△5,000만원~ △7,000만원	△9,500만원~ △1억 1,500만원	△9,000만원~ △1억 1,000만원

자료: 경찰청 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2027년 실제 구매가격과 예산 편성액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표준 규격 및 요구 성능에 따라 적정 단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구매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실증 순찰로봇과 실제 도입할 로봇모델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실제 도입할 로봇의 요구 성능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 순찰로봇보다 많은 단가를 책정한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년도 예산안의 경우 표준화 및 추가 검증을 위한 규모로 물량을 조정하여 실증을 통해 관제 연동 안정성 및 오경보율을 단계적으로 검증한 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4륜형 순찰로봇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을 할 수 없으므로, 순찰로봇을 도입 및 운영하기 전 촬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가능한 물체에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경우 업무로 운영할 때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는 등을 충족하거나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조문	내용
제2조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 ³⁾ 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5조의2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u>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⁴⁾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4륜형 순찰로봇의 경우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운행하며 사람 및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무선망을 통해 경찰서에 전송하므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4륜형 순찰로봇을 통한 촬영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②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촬영을 중단하지도 않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촬영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관련하여,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을 기록하는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⁵⁾에 그 사용 근거가 명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의 범위)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조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4륜형 순찰로봇의 경우 운영 지역에서 일상적·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영상이 일정 기간 저장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용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4륜형 순찰로봇을 통한 촬영 및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활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⁷⁾

따라서 경찰청은 4륜형 순찰로봇의 현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4륜형 순찰로봇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전 경찰착용기록장치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조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6)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7)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2026. 7. 29.)을 고려하였고, 유사한 기능의 AI순찰차 등이 도입되어 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순찰로봇(국가유산청)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등을 근거로 운영중인 상황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등을 근거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①로봇 외부에 촬영사실 표시 ②부당한 권리 침해 금지 ③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개인 인식 정보의 비식별화)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공공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가. 현 황

진술영상녹화실운영 사업¹⁾은 영상녹화·진술녹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수사 과정 공정성·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사인권보호활동	6,144	6,728	6,728	6,824	96	1.4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886	1,312	1,312	1,312	-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실의 녹화건수가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녹화실사율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영상녹화실을 신규로 신설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진술녹화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진술영상 녹화실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²⁾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5년 말 기준 전체 경찰관서 262개에서 925개의 진술영상녹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1-317

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2027년 진술영상녹화실의 노후장비 교체 7억 1,500만원, 진술영상 녹화실의 16개의 신설을 위한 공사비로 1억 6,400만원, 신설 녹화실 장비 구입비로 8,000만원 등 총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술영상녹화실에서의 녹화 실시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4년 검거건수 대비 녹화 실시율은 4.5%에 불과하고, 2025년에는 3.9%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녹화실시율은 4.0%에 불과하다.

녹화건수 또한 2021년 79,170건, 2022년 78,103건, 2023년 60,926건, 2024년 55,399건 및 2025년 48,350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진술영상녹화실 녹화실시율]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검거건수	1,136,661	1,133,788	1,186,123	1,222,484	1,225,879	819,321
녹화건수	79,170	78,103	60,926	55,399	48,350	32,713
녹화실시율	7.0	6.9	5.1	4.5	3.9	4.0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실도 녹화실시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함께 신규 진술영상녹화실 설치 수요 및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25년 말 기준 이미 262개 경찰관서에서 925개의 진술영상녹화실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이후 녹화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5%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규 녹화실 역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조사 종료 후 영상녹화자료를 CD 2부를 제작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설명과 같이 녹화 실시율이 낮은 원인이 녹화자료의 제작·편집 등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및 업무 부담에 있다면, 현재의 낮은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화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앞서 영상녹화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³⁾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진술영상녹화실의 활용실태와 녹화 실시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상녹화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진술영상 녹화실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영상녹화자료의 전자적 전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KICS 연계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시스템 개발 완료 단계이며, 2026년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전국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가. 현 황

건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¹⁾은 정보업무 효율성·보안성 강화를 위해 첨단 IT 기술 접목,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4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건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4,093	9,675	9,675	15,021	5,346	55.3
건물관리시스템 고도화	3,117	8,836	8,836	14,005	5,169	58.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건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내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하여 2027년 예산안은 13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	-	-	1,331	1,33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231-51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기존 대면으로 신고받던 집회신고를 온라인으로도 신고받고자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나, 온라인 신고의 특성상 방문신고보다 신고 단계의 조율이 어렵고 신고내용의 완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축 및 운영 전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기존 경찰서 방문 집회 신고 방식²⁾의 국민 불편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도입하고자 2027년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으로 신규 1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1) 개발SW(일반연구비): 397백만원(순증)

* 대민 온라인 신고(신고서 등록, GIS 기반), 행정처분 결재, 송달, 디지털 창구 개발, 아키텍처 설계

2) 상용SW(자산취득비): 526백만원(순증)

* 3D 지도×2식, 동시접속자 제어 솔루션, 디지털 창구 SW 구매

3) HW(자산취득비): 276백만원(순증)

* 동시접속자 제어 솔루션, 대민 개발 서버, 디지털창구 HW

4) 간편인증 등 서비스 이용료(시설장비유지비): 132백만원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여러 옥외집회가 경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였더라도 이후 신고와 관련하여 보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의 보완, 금지통고 및 이의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³⁾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2026.2.26. 선고 2021헌바168, 2024헌바276, 2025헌바19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례 또한 집회 신고 규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판시한 바 있다.⁴⁾

이와 같이 집회신고는 단순히 집회 개최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라기 보다는, 집회의 일시·장소·규모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보완하거나 집회 간 경합을 조정하는 등 사전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민원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방문신고의 경우 신고인, 집회 개요, 시위 방법, 시위 진로 등 항목을 기재한 후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옥외집회 신고 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

구분	주요 기재사항
신고인	성명(또는 직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집회 개요	집회(시위·행진) 명칭,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목적
주최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전화번호
주관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최단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전화번호
질서유지	질서유지인 수
참가 예정	참가예정단체, 참가예정인원
시위 방법	시위 대형, 구호제창 여부, 그 밖의 시위방법
시위 진로	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
참고사항	차량·확성기·입간판 등 준비물 및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수 등

자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 재구성

4)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도4460 판결

이에 따라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면서 기재사항의 오기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안내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보완한 후 집회 신고를 완료하게 되므로, 같은 일시·장소에 대한 다른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집회 시간과 장소를 조율할 수 있고, 신고서의 정확성도 경찰관에 의해 확인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신고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접수되므로, 접수 단계에서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시위 장소 및 일정 등을 조율하기 어렵다. 또한 신고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시·장소를 잘못 적거나, 시간·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간단하게만 기재할 가능성도 있어, 신고서의 완결성이 방문 신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 후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의 선후순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⁵⁾ 또한 온라인 제출 후 수정은 단순한 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로 제한되고, 일시·장소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⁶⁾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접수 후 일시·장소를 바꾸는 것을 막을 뿐, 일시·장소를 우선 입력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내용만 우선 기재하여 먼저 접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방문신고는 접수 시 확인과 조율이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접수 시각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
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집회신고서”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를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제출시한까지 집회신고서의 단순한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변경(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중복 신고 시 경찰서장은 시간·장소 분할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⁷⁾ 접수 순서는 집회 개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접수 단계의 확인·조율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고내용의 완결성보다 접수 속도가 중요해지고, 선점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⁸⁾

따라서 경찰청은 온라인 집회신고 시행에 앞서 접수 후 확인 절차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점검·보완하여 방문신고에서 이루어지던 확인·조율 기능이 온라인 신고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8) 이에 대해 경찰청은 ① 신고인이 시스템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단순한 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로 한정하고 일시·장소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아 신고 1건당 지정할 수 있는 집회 장소의 수를 제한하여 하나의 신고로 여러 장소를 일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② 선점을 목적으로 한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③ 온라인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관서의 담당 경찰관이 신고인에게 우선으로 연락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다른 집회와의 시간·장소 조율을 진행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가. 현 황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사업¹⁾은 경찰관서 공공요금 및 관서 신축시 임시청사 임차료 지원, 공무직(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의 병가 등 공백 발생 시 임시 인력 채용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2,100만원이 증액된 8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치안활동지원	477,095	510,105	510,105	510,565	460	0.1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76,998	82,391	82,391	83,812	1,421	1.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사업은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용임금은 공무직(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의 장기 병가 등 공백 발생 시 임시 인력 채용 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내 일용임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용임금	271	575	575	575	-	-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8-581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공무원 병가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채용되는 임시직에 대한 일용임금 예산안 편성 시 연례적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집행액은 예산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운용 추세 등을 고려하여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라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 총 4,2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병가, 특별휴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경찰청 근무 공무직은 연 60일의 병가, 90일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경찰청은 병가 등으로 공백 발생 시 채용하는 임시 인력 일용임금 예산안을 연례적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상 2024년에는 집행률이 26.8%(4억 2,200만원 불용), 2025년에는 집행률이 47.0%(3억 400만원 불용)였고, 2026년 8월 기준으로 1억 8,6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 추세상 1억 8,7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일선관서 행정지원 등 내 일용임금 예산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4	575	154	422	26.8
2025	575	271	304	47.0
2026	575	186	-	-
		388	187(예상)	67.5
2027	575	-	-	-

자료: 경찰청 제출 자료를 재구성

2)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0조(공가·병가·특별휴가)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공가·병가·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실제 연도별 공백에 따른 임시직 운용 개월 수가 당초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책정한 기간(약 252개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무원의 병가·특별휴가 등의 발생 여부와 기간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예상하지 못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예비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일선관서 수가 많아 변동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2024년 26.8%, 2025년 47.0%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실제 집행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연도별 운용 추세, 공무원 병가·특별휴가 등의 실제 사용 현황, 임시직 실제 운용 개월 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용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¹⁾은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7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7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무인단속장비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통과학장비관리	118,379	125,730	125,730	131,014	5,284	4.2
무인단속장비운영	115,576	121,760	121,760	127,514	5,754	4.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장비의 운영 및 관리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 설치·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것이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13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에 따르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다. 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인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경찰청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편성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경찰사무로서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관리 대상은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것으로 축소되었으나, 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 중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는 전년 대비 65억 4,400만원이 증액된 79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과 2027년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 예산안 편성 현황]

구분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 무인영상실 5,355백만원 = 26,248천원 × 17청 × 12월	- 무인영상실 5,355백만원 = 26,248천원 × 17청 × 12월
	- 과속 단속장비 23,447백만원 = 2,323천원 × 10,092대	- 과속 단속장비 25,436백만원 = 2,323천원 × 10,948대
	- 다기능 단속장비 44,306백만원 = 3,080천원 × 14,383대	- 다기능 단속장비 48,861백만원 = 3,080천원 × 15,862대
합계 (단속장비 대수)	24,475대	26,810대 (2,335대 증가)
합계(금액)	731억 800만원	796억 5,200만원 (65억 4,400만원 증액)

자료: 경찰청

이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무인단속장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비의 운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구체적으로, 과속 단속장비는 2026년 10,092대를 기준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에는 10,948대로 856대가 늘어났고, 다기능 단속장비의 경우 2026년 14,383대를 기준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7년에는 15,862대로 1,479대가 늘어나 총 2,335대의 단속장비가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대수 증가에 맞춰 증액 편성되는 구조이나, 그간 국회는 결산 심사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대수 급증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를 지적한 바 있다.

[2025예산안 무인단속장비 관련 국회 부대의견]

구분	내용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경찰청은 증가하는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비로 인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주체가 위탁관리비를 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 경찰청은 신호체계·무인단속장비·어린이보호구역 운용 등 종합적인 교통제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은 위탁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수량에 맞추어 증액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운영 대수 및 설치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등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의 위탁관리비가 연례적으로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무인단속장비에 대해 설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설치·운영·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1

현황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42억 1,1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억 4,700만원(18.4%) 감소하였다.

[2027년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864	5,158	5,158	4,211	△947	△18.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소방청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3,712억 7,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8억 1,200만원(10.3%) 증가하였다.

[2027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43,403	336,463	336,463	371,275	34,812	1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소방청

한편,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소방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다변화하고 복합화되는 재난현장에 우선 투입하는 첨단 소방장비 확충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무인소방 로봇 216억원, 4족보행로봇 160억원 등), ② 소방관이 안전하게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현장 안전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이 확대되었고(국립소방병원 운영 411억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81억원 등), ③ AI와 첨단기술로 재난현장 판단과 지휘를 더 빠르게 하는 R&D 사업 예산이 확대편성되었다(608억원).

2027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방임무형 4족보행로봇 도입지원 사업은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 없이 40대를 일괄 도입하도록 편성되었으므로, 시범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범운영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입 물량을 재검토하여 시범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119항공정비실이 시·도 헬기까지 포함한 통합 정비라는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실 개청('27년 7월) 및 시범운영 개시 전까지 「항공안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사업은 소방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유사 사업을 각기 추진하여 부처 간 역할과 기준 정리가 필요하며, 전수조사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2027년도 요구안은 당초 물량을 유지하고 있어 소방청은 연차별 설치 물량과 재정소요를 재산정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 181억원 규모이다.

① 주요 사업으로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지원하는 자동 확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과 ② 현장지휘관의 재난 대응 경험 축적과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등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중심의 VR 기반 지휘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등이 있다.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구축	1,599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5,941
	응급헬기 전국 통합관제 체계 구축(정보화)	3,096
	치안·소방 현장 통합 지휘·통신 기술개발(R&D)	3,000
	재난현장 임무·상황 중심 피지컬 AI 개발 및 현장실증(R&D)	4,500
합 계		18,136

자료: 소방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 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등이 있다.

①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은 소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장비 구매와 장비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위험한 재난현장에 먼저 투입될 무인소방로봇 및 4족보행로봇 도입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②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은 전국 119소방항공대 34대의 소방헬기에 대한 국가 통합 관리 운영으로 재난 시 시·도 경계를 넘어선 광역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준공 이후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정비공구 구매와 수용비 등 운영비용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소방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개)	소방정책홍보	743	743	789	46	6.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35	635	815	180	28.3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3,600	3,600	4,900	1,300	36.1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 (R&D)	799	799	808	9	1.1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R&D)	3,500	3,500	5,300	1,800	51.4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 대응 체계 개발(R&D)	1,800	1,800	3,000	1,200	66.7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3,800	3,800	5,960	2,160	56.8
	현장대응역량강화	2,130	2,130	2,228	98	4.6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866	866	28,785	27,919	3,223.9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8,782	8,782	15,741	6,959	79.2
	소방산업육성지원	614	614	665	51	8.3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1,408	1,408	2,664	1,256	89.2
	소방행정 정보화(정보화)	1,325	1,325	1,538	213	16.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1,562	1,562	1,844	282	18.1
	소방기술기준 연구강화	403	403	404	1	0.2
	화재조사 과학화 지원	593	593	667	74	12.5
	소방안전 정책연구 향상	544	544	577	33	6.1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 (R&D)	5,603	5,603	6,103	500	8.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소방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시범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4족보행로봇 도입 물량 및 시범운영 계획·평가체계 수립 필요

가. 현 황

소방임무형 4족보행로봇 도입지원¹⁾은 재난의 복잡·대형화, 극한현장에서의 소방대원 안전 확보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임무장비를 탑재한 4족보행로봇을 시범운영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총 1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소방임무형 4족보행로봇 도입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5,007	866	866	28,785	27,919	3,223.9
첨단 소방장비 도입 지원	-	150	150	26,960	26,810	17,873.3
소방임무형 4족보행 로봇 도입지원	-	-	-	16,000	16,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4족보행로봇은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장비임에도, 도입 물량·운영방식·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시범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40대 일괄도입으로 편성되었고 유관 R&D가 복수로 추진 중이므로, 시범운영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이에 따라 도입 물량을 재검토하고 시범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의 내내역사업

소방청은 4족보행로봇(이하 4족로봇)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동 장비는 재난현장 인명탐지·수색 및 위험징후 감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시료 채취·감식, 현장대원·소방장비(드론·무인소방로봇 등) 간 통신·데이터 중계, 재난현장 원인규명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당 4억원씩 총 40대(160억원)를 2027년에 일괄 구매할 계획이다.

[4족보행로봇 본체 및 주요 소방임무장치]

				
본체	유해물질탐지	열화상 카메라	통신중계기	로봇팔
소방임무장치				

주: 구성 예시이며 도입 장비의 모델·제원을 특정할 것은 아님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장비관리법」 제44조(시범운영)²⁾에 근거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장비는 실증 없이 시·도가 직접 구매하기보다 소방청 중심 시범운영과 성능평가를 통해 확대 보급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취지에 따르면, 소방현장의 활용 임무(인명탐색, 가스측정, 통신중계 등)별로 어떤 성능·운용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시범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범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4족로봇의 구성·물량, 규격·단가 조사, 운영방식, 시범운영 평가체계가 시범운영 목표와 정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시범운영 1차년도에 도입물량은 임무 시나리오·검증 항목·배치 기준 등 시범운영 계획에서 도출되어야 그 규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소방청은 1차년도에 40대를 일괄 도입하여 실증·분석한 후 2028년 이후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

2) 소방장비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173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44조(시범운영) ① 소방청장은 첨단소방장비가 재난현장에서 운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으로 하여금 첨단소방장비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므로, 40대는 추후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 물량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방청이 소속기관 및 시·도 소방본부 수요조사(2026.8.14.~9.10.)에서 '27~'30년 연차별 수요를 접수하여 '27년 도입 수요를 총 73대로 집계하였고,³⁾ 이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소방청 소속기관 수요만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총 40대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대·119화학구조센터 33대, 중앙소방학교 4대, 국립소방연구원 3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⁴⁾ 즉 도입물량은 시범운영 계획에서 도출된 수량이 아니라, 단순 수요조사 물량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이므로, 시범운영 규모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4족보행로봇 2027년 시범운영 배치 계획]

(단위: 대)

구분	중앙119구조본부 ¹⁾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
	119특수구조대 (4개소)	119화학구조센터 (7개소)		
수량	33		4	3
목적	현장 시범운영		교육·훈련	성능 실증연구

주: 1) 119특수구조대: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

119화학구조센터: 서울,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 충주

1. 소방청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대 및 구조대(전국 289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소방청

견적조사도 시범운영의 검증 항목과 요구성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소방청은 해당 단가를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견적조사한 6개 업체의 구성항목별 견적금액을 평균하여 합산한 값이다.⁵⁾ 그러나 업체 간 견적은

3) 소방청 소속기관 및 사도 소방본부 수요조사 결과, 총 수요는 239대('27년 73대, '28년 56대, '29년 61대, '30년 49대)이다. (자료: 소방청, 「4족보행 로봇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26.10.14. 제출)

4)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광역 단위로 출동하므로 시·도 수요를 포괄한다고 설명하나, 시·도가 수요조사에서 응답한 용도·임무장치를 포괄하도록 시범운영을 설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요조사상 '27년 소속기관 수요는 7대(중앙소방학교 3, 중앙119구조본부 2, 국립소방연구원 2)이다. (자료: 소방청, 「4족보행 로봇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26.10.14. 제출)

5) 소방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납품 가능한 본체와 임무장치별 사양·견적을 제조사에 요청하였다(2026.9.14. 공문). 회사별로 개발 가능한 소방임무장치가 달라 견적 구성이 차이 난다고 설명하였다. 업체별 견적은 다음과 같다(단위: 만원).

1. 본체: A사 9,900 / B사 22,000 / C사 13,750 / D사 30,085 / E사 7,315 / F사 14,100

7,315만원~5억 4,318만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방임무장치 항목별 견적을 제출한 업체 수도 상이하다. 이는 소방임무장치의 제원·구성을 특정하지 않고 장치명 목록으로만 견적을 요청한 결과로, 장치의 유형이 같아도 구성과 제원이 달라⁶⁾ 견적의 비교 기준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규격서 작성을 위한 견적조사였다는 입장이나, 구매 규격 작성을 위한 조사라면 더욱이 임무별 검증 항목에 따른 시험 조건으로 장치별 요구성능을 확인한 후 실시했어야 한다.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소속기관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7년 하반기에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대 및 구조대(전국 289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⁷⁾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향만 제시되어 있고, 확대 시 시·도별 배치계획과 시범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시범운영 결과를 판단할 평가계획과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방안(확대·중단·재검토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시범운영 종료 후 「소방장비 관리법」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별도 소관 규정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평가체계가 시범운영 종료 후에 정해지면 시범운영 중 수집할 데이터와 평가항목을 사전에 정할 수 없다.

-
2. 열화상: A사 2,145 / B사 2,200 / C사 4,950 / F사 1,045
 3. 라이다: A사 1,973.4 / B사 1,100 / D사 4,235
 4. 로봇팔: D사 8,800
 5. 가스탐지기: A사 1,540 / D사 8,800 / F사 1,320
 6. 충전스테이션: C사 2,750 / D사 2,398 / F사 1,100
 7. 운영시스템: A사 4,620
 8. 업체별 견적 총계: A사 20,178.4 / B사 25,300 / C사 21,450 / D사 54,318 / E사 7,315 / F사 17,565
 9. 항목별 평균: 본체 16,192(6개사) / 열화상 2,585(4개사) / 라이다 2,436(3개사) / 로봇팔 8,800(1개사) / 가스탐지기 3,887(3개사) / 충전스테이션 2,083(3개사) / 운영시스템 4,620(1개사). 항목별 평균 금액 합계 40,602(약 4억원).

- 6) 소방청이 제출한 견적서 6종에 따르면, 열화상은 복합 카메라 패키지와 PTZ 일체형이 혼재하고 측정 범위·해상도가 상이하다. C사(4,950만원) 장치는 열화상(SD급, -40~400℃, 30fps)·실화상(FHD, 광학 30배)·360도 파노라마 카메라 구성이고, A사(2,145만원) 장치는 PTZ 카메라(열화상 640×512, -20~550℃, 마이크·스피커 포함) 구성이다. 라이다도 탐지 범위 등 견적 사양이 상이한 것으로 소방청은 설명하였다.
- 7) 소방청은 당초 2027년 신규 배치 40대를 소방청 직접 운용과 시·도 임대 운영 두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자료: 소방청, 2026.9.15. 제출), 이후 배치계획은 소속기관 직접 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시·도 임대 운영의 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울산소방본부는 앞서 4족로봇 2대를 자체 구매('24~'25년)하여 실전 11건, 훈련 20건을 수행하였다.⁸⁾ 이처럼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운용한 경험이 이미 있으므로, 소방청은 그 운영 결과를 분석·활용하여 금번 시범운영의 임무 시나리오, 제원, 평가체계와 도입 물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4족로봇과 관련한 별도의 R&D가 병행 추진 중이다. 소방청·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 공동 R&D인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지원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 사업(2023~2028년)'에서는 산업통상부가 다족로봇 기반 인명탐지·화재진압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⁹⁾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 공동 '재난안전 임무상황 중심 퍼지컬 AI 개발 및 현장실증 사업(2027~2031년)'¹⁰⁾은 4족로봇의 임무특화 AI를 개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R&D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이고 4대 도입은 상용 장비의 시범 배치로, 목적과 시기가 다른 보완적 사업이며 향후 결과를 종합 비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의 취지는 인정되나, 4족로봇은 시범운영 후 현장에서 계속 운용할 장비이므로 R&D 성과물의 적용 가능성과 방안을 도입 이전 단계부터 R&D 수행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호환성 확보방안은 확인되지 않아, 두 사업이 연계 없이 추진될 경우 R&D 성과물이 도입 장비에 적용되지 못해 장비의 활용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8) 서울본부(현장대응단)는 Vision 60('25.12. 구매, 256백만원, IP67 이상, 51kg), 울산본부(119특수대응단)는 유니트리 B2('24.12. 구매, 165백만원, IP66 이상, 60kg)를 각 1대씩 구매하여 사용 중이다. 주요 출동사례는 서울 '26.8.21. 제과공장 화재(암모니아 배관 누출, 파손배관 근처 가스농도 측정), 울산 '25.6.9. 알루미늄 용해공장 화재(바닥 LNG배관 잔류가스 측정)이다. 소방청은 서울본부 장비가 '26.5월 말 신림-봉천 터널에서 시범운영 중인 무인소방로봇과 합동 실증을 통해 열화상 및 유해가스 측정을 수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9) 코드: 일반회계 1132-613. 소방청은 트랙기반 화재진압용 모바일 로봇 및 현장 통합운용 기술개발, 행정안전부는 농연·인명·화점 탐지 멀티모달센서 및 환경정보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담당한다.

10) 코드: 일반회계 1160-640

비교 가능한 사례로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D.AX 프로젝트’(다족 로봇 실증 200대, 43,015백만원)¹¹⁾는 1단계(‘27년 시범적용) → 2단계(‘28~’30년 전환) → 3단계(‘31~’35년 위험임무 전환)의 단계별 로드맵 아래 임무별 시범·실증을 추진한다. 임무별 배치 대상 부대·지점과 대수를 산출근거에 구체적으로 제시¹²⁾하였으며, 각 임무별 실증사업에 실제 환경을 모사한 디지털트윈 구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시범·실증 단계에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도입 물량과 예산을 편성한 사례이다.

종합하면, 소방청은 4족보행로봇을 시범운영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시범운영의 검증 목표와 그에 기반한 시범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40대의 도입 물량과 견적·단가 조사가 이루어져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시범운영 평가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관 R&D와의 연계방안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청은 시범운영의 목표와 이에 따른 임무 시나리오, 요구성능, 운영방식, 평가체계를 포함한 시범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입 물량과 유관 R&D와의 연계방안을 재검토하여 시범운영이 향후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코드: 일반회계 2831-306

12) 2027년도 예산안 43,015백만원 중 30,000백만원은 다족로봇 200대 구매비(대당 150백만원)이다. 다족로봇은 임무별로 지속지원 96대, 경계/경비 88대, 위험물 취급 16대로 구분하였고, 대상 부대·지점별로 대수를 산출근거에 제시하였다. 디지털트윈(월드모델) 구축비(출연금)는 임무별로 수송 3,000백만원, 경계/경비 1,200백만원, 위험물 취급 1,200백만원을 편성하였다(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10.).

가. 현 황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¹⁾은 전국 소방119항공대의 소방헬기 34대를 국가 통합관리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시·도 경계를 넘어선 광역총괄 대응 및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4,613	8,782	8,782	15,741	6,959	79.2
119항공정비실 운영	-	-	-	2,606	2,60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119항공정비실이 시·도 헬기까지 포함한 통합 정비라는 본래 목적을 수행하려면 정비조직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이 정비실 개청 전까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르면,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려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제97조제1항)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제2항), 정비등을 한 항공기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운항 또는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2-312

항공기등에 사용할 수 없다(제1항).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119항공정비실은 정비조직인증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²⁾ 시·도 소유 헬기를 위탁받아 정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26.7.9.)이 '26.7.23. 국토교통위 회부, '26.9.8. 상정되어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제97조에 제2항을 신설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정비하려는 경우 「항공사업법」상 상업적 등록요건(제42조·제43조) 적용을 배제하고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도 개정 방향에는 동의하며, 인증 대상 범위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자체 항공기만 정비하는 경우의 제외 여부 등)을 제시한 상태다. 해당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별도의 시행유예기간이 없어, 국회 통과 시점이 곧 정비조직인증 취득 가능 시점과 직결된다.

정비실 준공('27년 7월) 후 하반기 시범운영이 계획되어 있어, 시범운영 단계부터 시·도 헬기의 정비확인까지 수행하려면 시범운영 개시 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전국 소방헬기 34대 중 시·도 소속이 26대(76.5%)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8대, 23.5%)보다 많아, 시·도 헬기에 대한 정비확인 기능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지가 '전국 통합정비'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좌우한다.

[소방헬기 보유 현황]

(단위: 대, %)

구분	헬기 수	비중
중앙119구조본부	8	23.5
시·도 119항공대(16개소 ¹⁾)	26	76.5
계	34	100.0

주: 1) 16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소방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항공안전법」제97조제1항은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주체를 "항공기정비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방청 등 비영리 국가기관은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상업적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못하는 법적사각지대에 있다.

한편 정비조직(2과 6팀, 정원 57명) 구성을 위한 수시직제도 '26년 10~11월경 행정안전부에 신청 예정으로 심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비실 개청 전까지 완료가 필요한 법제·행정 정비 과제다.

소방청은 「항공안전법」 개정이 정비실 개청 이후로 늦어질 경우에도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 8대의 정비와 전체 소방헬기 대상 정비계획 수립·조정, 통합 부품구매, 외주정비 계약 지원, 정비 장비 지원 등 운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³⁾ 아울러 시·도 소속 헬기에 대해서는 시·도와 협의하여 정비는 정비실이, 정비 확인은 시·도가 실시하는 이원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원적 운영 방안은 현재 시·도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민간업체를 통해 정비와 확인을 일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체계 대비 실익이 불분명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비실 개청('27년 7월) 및 시범운영 개시 전까지 「항공안전법」 개정과 정비조직 직제 확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소방청은 운영지원 관련 행정사항을 119항공정비실에서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정비기간 단축에 따른 가동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산정근거 보완 및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¹⁾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된 고위험 공장·창고의 화재 초기대응 취약성을 보완하고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자동화산소화기를 설치·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59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	-	-	-	5,941	5,941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지원대상 산정식의 계수가 상이한 모집단·기준에서 산출되어 추계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고, 향후 실시할 수요조사도 이를 보정하는 절차가 아닌 설치 의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사업물량과 집행규모 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어, 대상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첫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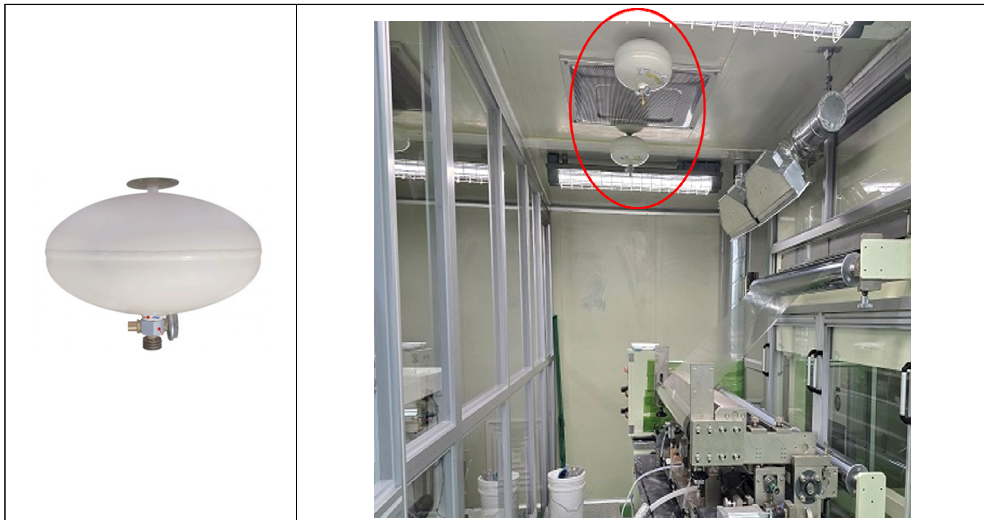
자동화산소화기 설치·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발생한 대형 공장화재를 계기로 신설되었다. 공장에는 규모·용도 등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²⁾ 스프링클러설비가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3-303

없는 공장은 화재 시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수동소화에 의존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대응체계에 초기소화 수단을 추가로 보강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³⁾하며, 소방청은 자동확산소화기가 가격이 저렴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별도 조작 없이 작동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자동확산소화기 모습 및 설치 사례]



자료: 소방청

사업은 5년간(2027~2031년) 총 19,806개소를 대상으로 891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며, 재원은 국·지방·민간 1:1:1 매칭 방식이다. 2027년에는 3,961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5개년 지원대상 19,806개소는 전체 모수 24,272개소에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96%)과 매칭사업 평균 신청비율(85%)을 순차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이다.

2) 「공장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장의 소화기구는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설비는 연면적 1,500㎡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스프링클러설비는 층수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 특수가연물 1,0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다(자료: 소방청).

3) 소방청은 자동확산소화기를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물 적재구역 등 국소 위험공간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본 사업이 기존 법정 소방시설을 대체하거나 법정 설치의무를 국가가 대신 이행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4) 자동확산소화기 개당 설치단가는 약 5만원이다(자동확산소화기 본체 25,000원+인건비, 기타경비 등 간접비용 25,000원).

[자동화산화기 설치 물량 산정식 및 모집단 기준]

산출계수 항목		적용수치	모집단/기준	근거자료
1	공장 모수	24,272개소	고위험 사업장 중 2개 업종	고용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현황자료
2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	× 96%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전체 154,894개소	소방청 내부자료
3	(유사사업) 신청비율	× 85%	유사사업 최종 누적 완료율(78.8%) +6.2%p 가산	소방청 내부자료
산출결과	지원대상	= 19,806개소	-	-

주: '27년도 지원대상 3,961개소는 5개년 누적 지원대상(19,806개소)을 5년간 균등 배분한 수치임
자료: 소방청

공장 모수(24,272개소)는 고용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화재사고가 많은 업종 가운데 제조업에 해당하는 2개 업종의 개소수(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747개소,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7,525개소)를 합산한 것이다. 반면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96%)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154,894개소를 모집단으로 그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공장 모수(고용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현황자료, 2개 업종 한정)와 모집단이 다르다.⁵⁾

아울러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96%)의 모집단인 154,894개소(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통계에는 법정 설치의무 유무에 따른 구분이 없다. 즉, 미설치비율(96%)에는 설치의무가 없는 공장과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소방청은 설치의무가 없는 공장 위주로 선정할 계획인 만큼, 96%가 실제 지원 대상의 비율과 일치하는지 담보할 수 없다. 이는 공장 모수와 모집단 불일치와는 별도로 지원대상 추계의 근거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⁶⁾

5)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을 시·도별로 재산정한 결과 96.1%로 본문의 기준 미설치비율(96%)과 0.1%p 차이에 그쳐 산정근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공장 모수(고위험 사업장 수)와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을 각각 시·도별로 나누었을 뿐,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소방청은 업종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은 통계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6)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 대상은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단계에서 설치 여부가 확인되고, 기존 공장에는 「소방시설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미설치 공장의 상당수는 현행 또는 건축 당시 기준상 설치의무가 없는 공장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선정 시 법정 설치의무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조치하는 절차를 사업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집행 단계의 선별 절차로, 지원대상 추계 단계에서 설치의무 유무별 개소 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청은 2026년 11월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시·도별 공지 시 시·도소방본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공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⁷⁾ 이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이 아니라, 시·도소방본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공장을 중심으로 한 수요조사 성격이다. 본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대상, 즉 법정 설치의무가 없으면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미설치 공장의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설치 개소수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나, 현재 계획된 조사는 시·도소방본부가 고위험으로 추정하는 곳을 방문하는 수요조사에 그쳐, 이를 통해서도 본 사업 대상 전체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률(85%)은 선례사업(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국·지방·민간 =1:1:1)의 2개년('19~'20년) 최종 누적 완료율(78.8%)에 자동확산소화기의 낮은 시공난이도와 비용부담을 근거로 6.2%p를 가산하여 설정하였다. 동 선례사업의 신규 1차년도('19년) 완료율은 38.9%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⁸⁾ 본 사업도 신규사업 1차년도라는 동일한 조건에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위험이 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특성상 신청률 저조는 예산 불용을 넘어 위험시설의 안전조치 지연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예산 확정과 함께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설치 가이드라인(안) 마련, 지자체 사전협의, 홍보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6년 9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책⁹⁾에는 노후주택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진압 수단을 보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26년 서울 3만 9,000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2027년 지방정부 연계 보급,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한 전국 확대를 추진하며, 세대 내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2027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사업(신규, 50억원)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지원하며, 동당 평균 200만원을 국비·지방비 1:1로 분담하여 지원하므로 건물 소유자의 부담이 없다. 해당 사업은 대상이 주택이어서 본 사업 대상(공장·창

7)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장·창고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26.7.31)도 '26.9월~'27.12월 3단계로(1차: 위험물 보유 초고위험 공장, 2차: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등, 3차: 그 외 공장) 진행될 예정으로 소방청은 해당 결과도 연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소방청은 그 원인으로 하반기 가이드라인 시달('19년 8월)과 추경편성 등에 따라 지방비 확보·사업계획 수립이 9~11월에야 이루어져 실질 사업기간이 짧았던 점을 설명하였다.

9)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26.9.22.)

고)과 같지 않으나, 동일 품목이 범정부 차원에서 취약공간의 화재위험을 낮추기 위해 확대되는 만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 분야는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건물 소유자의 부담이 없고, 관계부처 합동대책에서도 자부담 재원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인 반면, 본 사업은 개소당 약 450만원(90개×5만원)을 국·지방·민간 1:1:1로 분담하여 민간 자부담이 있다(약 150만원). 공장·창고는 화재 시 피해규모가 클 수 있어 신속한 설치가 더욱 중요하므로, 재원 분담구조 등을 함께 점검하여 설치율을 제고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⁰⁾

종합하면, 지원대상 산정식의 공장 모수와 스프링클러 미설치비율이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산출되었고, 계획된 수요조사로도 지원대상 전체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사업물량 추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대상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고, 신규사업이 첫해부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0) 소방청은 본 사업의 대상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관계인(사업주)이 화재안전 관리책임을 지고 생산중단·재산피해 방지 효과를 직접 누리므로 일정 수준의 자부담이 필요하고, 자부담은 설치 이후 사업주의 유지관리 책임성을 높이는 기능도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방청도 영세업체 부담 우려에는 공감하며, 1차년도 신청률·포기 사유를 분석하여 분담구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 현 황

응급헬기 전국 통합관제체계 구축(정보화)¹⁾은 응급의료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헬기와 상황실간 교신을 위해 구축된 항공국의 통신망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억 9,600만원으로 신규 반영되었다.

[2027년도 응급헬기 전국 통합관제 체계 구축(정보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응급헬기 전국 통합관제 체계 구축(정보화)	-	-	-	3,096	3,09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소방청은 범부처 관계기관 헬기 통합관제 법적 근거하에 운영 중인 항공국의 노후화 개선에서, 관계부처 활용도에 기반한 비용분담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항공국 통신장비가 전파간섭·지형차폐 등 환경적 요인이 큼에도 대책이 무전기 이중화에 집중되어, 장애원인과 이중화 필요성을 구분한 개선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 및 관제기관과 소방헬기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전국 26개 항공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개소는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4조(별표1)상 무선통신장비(VHF)²⁾ 내용연수 6년을 초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2017년 구축 8개소, 2018년 구축 12개소). 소방청은 항공국의 노후화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50-512

2) VHF는 모든 항공기가 기본으로 운용할 수 있는 118~136MHz 대역의 항공망으로, 소방헬기는 관제 기관 및 소방상황실과의 교신용으로 VHF 무전기 2대를 장착하고 있다.

및 통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전기 교체 및 이중화 40식, 항공VHF 무전기 원격통제 전용회선 신설 등 항공통신 환경 개선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타 부처 헬기에 대한 출동요청·공역통제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³⁾ 이에 소방청 항공운항관제는 소방헬기뿐 아니라 관계기관 헬기까지 호출·운용할 수 있는 체계이다.⁴⁾⁵⁾ 그러나, 관계기관 응급헬기 호출 실적('24.7.~'25.6.)은 119항공운항관제실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출동조정 2,136건 중 99.2%가 소방(55.4%)과 보건복지부(43.9%)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산림청·국방부는 합계 0.8%에 그친다.⁶⁾ 전 부처 헬기를 포괄하도록 설계된 통합관제체계가 실제로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편중되어 운용되고 있다.

소방청은 그간 항공국 전용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응급의료기금(소방헬기 장비구매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 교체수요 중 3대에 대응했으며,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이를 일반회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이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을 총괄하고 참여기관은 운항정보를 소방청에 보고할 의무를 지므로, 제도적으로는 전 부처 공공헬기를 포괄하는 국가 통합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다만 앞서 확인한 대로 실질 활용은 소방·보건복지부 두 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항공국 유지관리 개선 비용에 있어 비용분담 검토는 이 실제 활용 비중에 조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⁷⁾

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 의무) 및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관계기관 헬기 출동요청·공역통제·현장지휘 업무는 동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4) 기관별 헬기통신 방식은 상이하다. 산림청(헬기 47대)은 VHF(산림망) 기지국 전국 15개소 및 LTE무선기로 자체 교신, 해양경찰청(18대)은 VHF(지휘망) 및 TRS로 함정·해양경찰서와 교신, 경찰청(19대)은 VHF(134.45MHz)를 지휘통신망으로 사용해왔다. 각 기관 모두 자체 헬기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청 항공국과는 별도의 통신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5) 범정부 차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재난현장 기관 간 협업·데이터 공유, VHF는 항공교통관제·비행안전 음성교신에 각각 강점이 있다. 경찰청은 PS-LTE를 헬기 2대에 시범 장착하여 검증 중이며, 소방청은 PS-LTE와 자체 VHF망의 연계를 시도한 바 있고, 2027년 예산안에는 PS-LTE·LTE 연동 서버를 포함한 연계서버를 편성하였다. 범부처 통합관제라는 본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연계서버의 실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양 망 연계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소방청은 대형 산불·해상사고 등 다수 기관 헬기가 동시 투입되는 재난 시에는 항공국이 소방 공통주파수(130.125MHz)·비상주파수(121.5MHz)를 함께 운용하므로, 항공국은 평시 이용량보다 재난 시 공통 지휘통신 기반으로서의 역할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7) 소방청은 항공국이 「전파법」상 소방청장(6개소) 및 중앙119구조본부장(20개소)이 시설자로 허가받은

[범부처 응급헬기 출동조정 실적('24.7.~'25.6.)]

(단위: 건, %)

구분	호출 건수	비중
소방	1,183	55.4
보건복지부	938	43.9
해양경찰청	12	0.6
산림청	2	0.1
국방부	1	0.1
계	2,136	100.0

자료: 소방청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항공국 중 구형 무전기 보유 기지국은 19개소이다. 2023년 자체 연구용역 당시 24개 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사 결과, 검토항목 전체 정상운용은 13개소(54%)였으며, 나머지 11개소(46%)는 최소 1개 항목에서 점검·확인(△등급) 또는 수리·교체(X등급)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96개 점검항목 기준으로는 정상 83%). 이 중 즉시 수리·교체가 필요한 X등급은 보현산·용문산·충남가야산 등 소수에 그쳤으나, 점검·확인이 필요한 △등급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기지국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다.

다만 통신장애의 주원인은 무전기 자체의 물리적 고장⁸⁾보다 방송철탑 전파간섭(모악산·용문산·가엽산·충남가야산), 산악지형에 의한 시야확보 곤란, 원격 LTE 라우터 신호불안정 등 환경적 요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무전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병렬로 추가한다고 해소되지 않으며, 기지국 이설·안테나 개선(이중편파 안테나 등) 등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⁹⁾

아울러 시뮬레이션상 저고도(1,000ft) 커버리지가 10% 미만인 기지국(호남특구 대 2.7%, 대암산 2.7%, 봉래산 6.4%, 국사봉 8.1%)이 존재하였으며, 이 중 대암산·봉래산·국사봉은 2027년 무전기 이중화 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고

무선국으로서 유지·관리 및 검사 책임이 소방청에 있고, 관제 시스템의 설치·관리·운영이 법률 및 시행령상 소방청장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구분 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8) 소방청은 2026년 1~9월 상황실-항공기 간 교신테스트(VHF 150회)를 수행한 결과 교신불가 17.3%, 잡음·끊김·하울링 등 품질저하 8.0%가 확인되었고, 특히 16개 항공국에서 동일 기지국의 교신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간헐적 장애가 확인되어 장비·회선 불안정 요인도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9) 소방청은 원격 LTE 라우터 신호불안정 문제는 2027년 예산안의 원격통제 전용회선 신설(유선화)로 해소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도 커버리지가 낮게 나타난 지역으로, 무전기를 추가 배치하더라도 커버리지 문제 자체는 해소되지 않는다.¹⁰⁾

무전기 이중화 구성 자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지국마다 철탑 공간 등 설치 여건이 달라 일부 기지국은 안테나를 따로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전선·분배기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 단일장애점이 재발하고 이중화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소방청은 현재 26개 항공국 전수 정밀실사를 진행 중이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장비 설치 시 설치 위치·안테나 위치를 조정하고 기지국 이설 등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화·이중화배정·통신장애 관련 주요 항공국]

항공국	무전기 ¹⁾	'27년 이중화 신규배정 (대)	2023년 연구용역 현장실사 결과		
			현장실사 등급 ²⁾	방송간섭 확인 여부 ³⁾	저고도 커버리지 ⁴⁾ (%)
보현산	구형	2	X	미확인	59.9
용문산	신형	1	X	확인	55.6
충남가야산	구형	2	X	확인	96.2
모악산	구형	2	○	확인	60.2
가엽산	구형	2	○	확인	54.3
호남특구대	신형	0	△	미확인	2.7
후방대암산	신형	1	○	미확인	2.7
봉래산	구형	2	○	미확인	6.4
국사봉	구형	2	△	미확인	8.1

주: 1) 소방청의 2027년 항공국 배치계획표상 무전기 신형·구형 구분

2) 시스템 조사 결과로 4개 분야(장비·안테나 설치현황·접지현황·정재파·방사출력 및 교신현황)=96개 항목 판정 결과를 국소별로 종합; ○=전 항목 정상운용, △=1개 이상 항목에서 점검·확인 필요, X=1개 이상 항목에서 수리·교체 필요

3) 전파간섭 영향평가 결과, 방송신호에 의한 전파간섭 확인 여부

4) 전파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고도 1,000ft·반경 50km 기준 커버리지 비율

1. 26개 항공국 중 노후화·이중화배정·통신장애 원인 간 불일치가 확인되는 9개소만 제시

자료: 소방청 제공 자료 및 소방청 자체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소방청은 봉래산의 경우 2026년 교신테스트에서 300ft·지상에서도 교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항공국들의 2,000ft·3,000ft 커버리지는 각각 35~42%, 65~76%로 중·고고도 교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저고도 음영 해소를 위한 기지국 증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관계기관 헬기 통합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활용(출동조정)은 소방·보건복지부 두 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항공국 개선·운영에 관한 비용분담 구조를 실제 활용 비중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안정적 응급헬기 통신망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장애의 실제 원인(전파간섭, 지형차폐 등)에 대응하는 대책(간섭 기지국 이설, 안테나 고도화 등)을 우선 적용하고, 이중화 투자는 노후화·다운타임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기지국을 대상으로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통신 품질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7년 계획된 항공국 무전기 이중화 40식 일괄 물량의 기지국별 설치 우선순위와 이중화 구성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소방청이 현재 진행중인 항공국 전체 현장실사 결과를 집행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기감지기 보급 관련 유사사업의 부처 간 중복·분산 추진 조정 및 확대 수요 반영 필요

가. 현 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화재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6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단독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6,170	10,407	10,407	9,436	△971	△9.3
단독형 연기감지기 보급	-	7,190	7,190	6,240	△950	△13.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노후주택·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소방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편성·추진하고 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와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¹⁾ 화재취약계층 세대에 세대당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3대씩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²⁾ 총사업비는 270억원(연 90억원)이며, 국비 80%·지방비 20%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소방청이 노후아파트 대상 화재안전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편성·추진하고 있다.

[노후주택 연기감지기·화재안전 개선 관련 부처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법적 근거	2027년 예산(안)
소방청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2026~2028)	노후아파트 화재취약계층 대상 연기감지기 보급	화재예방법 제2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6,240
행안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나주·구례)	노후 공동주택·농촌 단독주택 일반세대 대상 연기감지기 보급, 화재보험협회·전남소방본부 재원	-	40 (국비 없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홍보콘텐츠 제작, 지방정부·소방관서·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현장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85
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필로티 공동주택 대상 소방·피난 설비 설치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	5,000

자료: 소방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2026.9.22.)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등이 없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 중 소방청이 지

- 1) 2004.12.31.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가 해당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소방청은 동 사업이 이러한 설치의무 대상 밖에 있던 노후 아파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2025년 부산 노후 아파트 화재(2025.6~7월, 아동 4명 사망)를 계기로 2026년부터 추진되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는 대당 8,000원으로 저렴한 가격과, 열감지기보다 2분 이상 빠른 감지 효과(서울소방본부, 2018) 및 배터리식 연기감지기 설치 시 화재사망자 발생률이 23% 낮은 점(NFPA, 2015) 등을 근거로 한다.

원 중인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 외에도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9~10월 전남 나주·구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설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³⁾

나주시·구례군 시범사업⁴⁾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화재보험협회, 전남 소방본부와 함께 추진한다. 설치는 전남 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재원은 국비 없이 소요예산 전체를 화재보험협회와 전남 소방본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본 사업에 대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된다는 사실 정도만 인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산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8,500만원)하여 홍보콘텐츠 제작, 지방정부·소방관서·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대상 교육, 화재취약지역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의 홍보·확산 기능을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소방청은 해당 홍보사업의 편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소방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연기감지기 보급 관련 홍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⁵⁾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에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50억원)하였다. 이는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사망 7명, 부상 58명)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공동주택 11만 6,000동 중 취약도가 높은 30,000동을 대상으로 소방설비를 지원한다. 2027년에는 5,000동을 목표로 동당 200만원(국비:지방비=1:1)을 지원한다. 노후·취약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설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방청·행정안전부의 연기감지기 보급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

이처럼 노후주택·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 아래, 소방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각자의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을 편성·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방청이 자신의 소관 사업과 동일·유사한 타부처 사업의 추진

3) 소방청은 확대 방안(2027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4) 행정안전부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나주·구례) 대상은 나주시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연립주택 8개 단지(627세대, 감지기 2,508개)와 구례군 원거리 농촌 마을 단독주택 8개 마을(430세대, 감지기 1,290개)로 총 1,057세대, 3,798개이다. 소요예산은 총 4,000만원(나주 2,600만원, 구례 1,400만원)으로, 화재보험협회가 2,000만원(나주 1,500만원, 구례 500만원), 전남 소방본부가 2,000만원(나주 1,100만원, 구례 9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나주시·구례군은 대상자 선정, 주민동의, 일정 조율에 역할 한다.

5) 소방청은 2025년에 「대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내역사업으로 홍보비 50백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홍보를 추진하였다.

내용과 같은 품목의 홍보사업 편성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관련 정책 전체의 재정소요와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노후주택·공동주택 화재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분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 사업대상이 149만 8천 세대에서 285만 세대로 확대되었음에도 2027년도 요구안은 당초 3개년 계획상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방청은 확대된 수요를 반영하여 연차별 물량과 재정소요를 재산정하고, 이를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당초 총 대상 149만 8,000세대를 3개년(2026~2028)에 걸쳐 순차 보급할 계획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2025년 10~12월 전국 시·도 소방서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노후 아파트는 558만 세대로, 사업대상(대피가 곤란한 화재취약계층 세대)은 285만 세대로 각각 확대되었다. 이는 당초 산정 대비 약 1.9배 확대된 규모이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 물량 변화 및 연차별 배분]

구분	당초	변경(안)
총 물량	149만 8,000세대	285만 세대
산정근거	노후아파트 469만 세대 × 대피 곤란 인구 비율 31.9% ¹⁾	노후 아파트 558만 세대 중, 대피곤란 세대 수 ²⁾
연도별 추진 물량 '26~'28)	'26년: 50만 세대(37만 5,000세대 ³⁾) '27년: 50만 세대(30만 세대 ⁴⁾) '28년: 50만 세대	'26년: 50만 세대(기시행) '27년: 123만 7,500세대(예정치 산정) ⁵⁾ '28년: 123만 7,500세대(예정치 산정) ⁵⁾
산정근거	연도별 물량 = 149만 8,000세대 ÷ 3	'27년, '28년 각 물량 = (285만 세대 - '26년 기시행물량) ÷ 2

- 주. 1) 대피 곤란 인구 비율 31.9%은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비율임
 2) '25년 10~12월 각 시도소방본부가 해당 시군구 대상으로 전수조사 요청·취합
 3) 2026년 신청예산비율 75%를 적용한 목표 물량(50만 세대×75%=37만 5,000세대)
 4) 2027년 신청예산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한 목표 물량(50만 세대×60%=30만 세대)
 5) 소방청이 제시한 물량이 아닌, 전수조사로 확대된 총 물량(285만 세대)에서 '26년 기시행 물량을 제외한 잔여 세대를 당초 물량산정 방식과 동일한 균등배분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정한 값임.
 현재 소방청은 확대된 물량에 대한 연차별 배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자료: 소방청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요구안의 산출내역은 여전히 50만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확대된 모수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다. 3개년 사업임에도 연도별 추진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할 경우, 285만 세대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물량이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28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설치 역량과 예산 모두에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소방청은 확대된 모수를 반영한 연차별 물량 배분 계획이나 이에 따른 예산 반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당 내역사업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26~2030)을 보면 2026년 71억 9,000만원, 2027년과 2028년은 각 6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확대된 수요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편 2026년 9월 말 기준 시·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전국 목표(37만 5,000세대) 대비, 실제 보급은 19만 7,991세대로 52.8%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50% 미만 설치율을 보인 지역이 8개이며, 이중 서울(9.2%)·충남(8.0%)·경북(3.8%)은 설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⁶⁾ 이처럼 시·도별 설치율 편차가 크고 기존 사업물량조차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⁷⁾에서 확대된 모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지속할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의 집행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전수조사로 확대된 모수를 반영하여 연차별 설치 물량과 예산 소요를 재산정하고, 시·도별 집행 여건을 고려한 물량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반면 경남은 205.6%로 목표를 크게 초과하였는데, 이는 저가형 감지기(개당 약 7,200원)를 세대당 3대가 아닌 2대로 설치하여 보급 세대 수를 늘린 결과로, 당초 제시된 세대당 3대·8,000원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이다.

7) 소방청은 사업 1차년도에 대량 물량의 조달 지연과 현장 대원의 직접 설치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집행상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세대별 설치비를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보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4조 6,57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486억원(3.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0억원, 공무원연금기금 24조 6,508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604	7,464	7,464	6,955	△509	△6.8
- 일반회계	6,604	7,464	7,464	6,955	△509	△6.8
기 금	22,705,121	23,901,658	23,901,658	24,650,800	749,142	3.1
- 공무원연금기금	22,705,121	23,901,658	23,901,658	24,650,800	749,142	3.1
합 계	22,711,725	23,909,122	23,909,122	24,657,755	748,633	3.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1조 2,62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586억원(3.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776억원, 공무원연금 기금 30조 9,853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32,961	252,970	252,970	277,586	24,616	9.7
- 일반회계	232,961	252,970	252,970	277,586	24,616	9.7
기 금	28,075,289	30,051,359	30,051,359	30,985,305	933,946	3.1
- 공무원연금기금	28,075,289	30,051,359	30,051,359	30,985,305	933,946	3.1
합 계	28,308,250	30,304,329	30,304,329	31,262,891	958,562	3.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나. 세입·세출예산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52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80억원 (52.5%) 감소하였다.

[2027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2,090	110,575	110,575	52,537	△58,038	△52.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6,32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099억원(3.1%) 감소하였다.

[2027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405,777	6,842,025	6,842,025	6,632,125	△209,900	△3.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만 구성된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6조 1,731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1조 112억원(2.9%) 증가하였다.

[2027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33,131,256	35,161,904	35,161,904	36,173,121	1,011,217	2.9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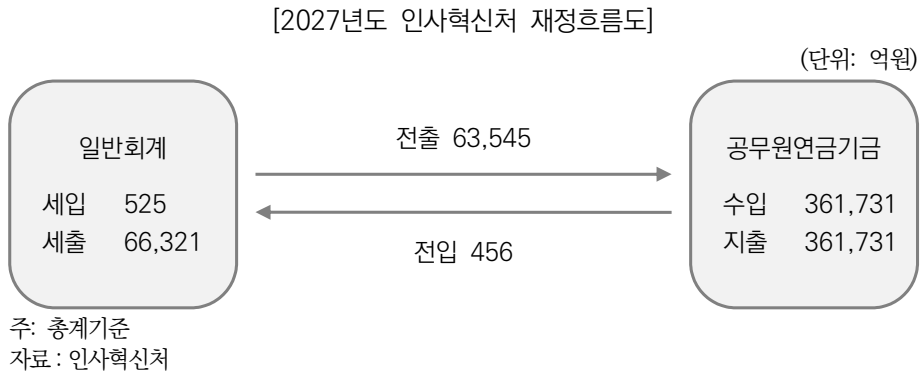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6조 3,545억원이 전출되며,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456억원을 전입받는다.



2027년도 인사혁신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인재의 체계적인 발굴·관리를 위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11억 8,700만원 → 2027년 56억 3,700만원), ②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594억 7,000만원 → 2027년 616억 3,700만원), ③ 공무원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28억 1,300만원 → 2027년 35억 7,800만원), ④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공무원 재해의 예방과 재할 지원을 위한 재해예방보상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2027년 34억 4,500만원), 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출이 확대되었다(2026년 24조 9,076억 2,100만원 → 2027년 26조 2,018억 2,400만원).

2027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실무자를 조기에 발탁하고 별도의 교육 및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5급 조기승진제를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의 선발·교육 및 보직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승진제도와 구분되는 실질적인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사업은 단계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균등한 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관별 단계적 확대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수반하여 기존 교육훈련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은 감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목적과 실제 대부 수요, 타 직역연금의 유사 사업 및 그동안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34억 4,500만원 규모이다.

공무원연금기금 사업 중 재해예방보상사업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상담, 재활사업 등 재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공무원연금기금(1개)	재해예방보상사업	3,445

자료: 인사혁신처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운영,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퇴직급여, 대여자자금융자 등이 있다.

①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AI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과정 확대와 진천·과천 기숙사 객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사업은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③ 퇴직급여 사업은 퇴직(유족)연금 연금인상률, 퇴직(연금)일시금 보수인상률, 기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④ 대여자자금융자 사업은 대여자자금융자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교육과정운영	3,730	3,730	5,039	1,309	35.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1,187	1,187	5,637	4,450	374.9
공무원 연금기금 (2개)	퇴직급여	24,907,621	24,907,621	26,201,824	1,294,203	5.2
	대여자자금융자	237,900	237,900	345,433	107,533	45.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II

주요 사업 분석

1

5급 조기승진제 적정 운영 필요

가. 현 황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사업¹⁾은 역량과 잠재력이 풍부한 중앙부처 6급 공무원을 조기에 승진시켜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내 활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시험시행	13,603	14,433	14,433	14,487	54	0.4
5급 조기승진제 운영	-	-	-	292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5급 조기승진제를 통해 우수한 실무자를 조기에 발탁하고 별도의 교육 및 보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나, 기존 승진제도와와의 정합성 및 조직 내 수용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선발·교육 및 보직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승진제도와 구분되는 실질적인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631-300의 내역사업

5급 조기승진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각 부처가 추천한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 역량평가 및 면접 등을 거쳐 5급으로 선발하는 특별승진의 한 유형으로, 부처별 승진심사와 별도로 전 부처 단위의 공개경쟁승진 절차를 마련하여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갖춘 실무자를 조기에 관리자로 발탁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조기승진 이후에는 별도의 교육 실시 및 보직 관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계획(안)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패러다임 전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인사 시스템을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직무’ 중심으로 전면 전환 필요
- (새로운 제도 마련) 부처별 일반 승진과 별도로 운영되는 전 부처 통합 선발 트랙을 구축, 유능한 인재에게 초고속 성장 사다리를 제공할 필요

□ 세부 추진 계획

① 선발규모 및 후보자 추천

- (선발규모) 41개 부처 대상 9개 직무 분야에서 총 100명 선발 예정
- (자격요건) 6급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후보자 추천) 국정과제 주도적 수행 등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를 보유한 6급 공무원을 소속 기관장이 부처별 배정 인원의 3배수 추천
 - 각 부처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우수성과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공문)
 - 첨단과학기술인재 분야는 일반정책인재 분야와 별도로 관련 분야 성과자를 추가로 추천

② 성과 중심의 3단계 검증 절차(안)

구분	성과심사(서류평가)	역량평가	면접
응시/선발인원	300명 ⇄ 200명	200명	약 200명 ⇄ 100명

③ 부처 배치,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 (교육훈련) 기존 승진자 교육과 차별화된 6주간의 집중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역량 강화와 중간관리자 리더십 함양
- (부처배치) 원소속 부처에서의 특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된 인원과 다르게 선발될 시 타 부처로 전출하여 임용 가능
 - 선발 후 지체 없는 승진임용을 위해 초과현원 인정
- (인사관리) 본부(청)에서 기획·정책분야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 필요

자료: 인사혁신처

5급 조기승진제의 선발 절차를 살펴보면, 후보자 추천은 각 부처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우수성과자²⁾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로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자 선발은 현재 업무특성,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해 총 41개 부처를 4개 분야 9개 분과로 모집단위를 구분하여 모집단위별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모집단위 구분]

분야	분과	부처명
일반 정책 인재	재정 경제	경제·금융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조세·조달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공공 행정	국방·통일 국가보훈부, 국방부, 통일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기획조정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인사혁신처
	기술 산업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상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국토·환경·에너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생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사회 문화	교육·문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보건복지·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첨단과학기술인재	전부처

자료: 인사혁신처

현재 동 제도를 통한 5급 관리자 선발이 2026년에 처음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의 응시자 추천(7.6.~8.6.)과 개인의 원서접수(7.27.~8.6.)를 거쳐 성과심사(9.1.~2.), 역량평가(9.29.~10.1.)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면접(11.14.~15.)과 교육(2027년 초)을 거쳐 각 부처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런데, 승진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사관리 절차이고, 특히 5급 조기승진제는 중간관리자인 5급으로의 승진 과정에서 기존 승진제도와 구분되는 선발절차와 별도의 교육·보직관리를 적용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조직 내 수용성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우수성과자(예시): 평정우수자, 정부포상자, 적극행정, 민원처리우수자, 전문성, 주요정책 우수실적, 첨단과학기술역량·성과 우수자, 기타 기준

첫째, 제도 도입 이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5급 조기승진제가 기존 승진제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5급 조기승진제는 우수한 실무자의 조기 발탁을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승진의 승진소요최저연수도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현재 2년³⁾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승진을 통해서도 종전보다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기승진제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승진기간 단축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부처별 인력구조와 승진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승진자의 재직기간과 일반승진자의 평균 승진소요기간 등을 비교하여 기존 승진제도와 구분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승진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 이후 주요 정책부서 근무를 지원하는 등 별도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경로로 승진하거나 채용된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조직 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7년도에는 5급 조기승진자 선발에 필요한 예산 2억 9,200만원과 더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로, 임차료 등 3억 6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⁴⁾ 인사혁신처는 조기승진자가 승진 이후 본부 또는 청에서 기획·정책 분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5급 공무원은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 외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채용으로도 충원되고 있으므로, 조기승진자에게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 이후 본부 또는 청의 기획·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별도의 인사관리를 실시할 경우 다른 경로로 승진하거나 채용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제도의 타당성과 함께 조직 내 수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09)4년 → ('12)3년6개월 → ('23)2년

4) 일반회계 교육과정운영(2133-300)의 내역사업인 5급 승진관리자과정운영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5급 관리자 임용방식별 선발·교육 및 인사관리 비교]

구분	승진		신규채용
	일반승진	5급 조기승진(특별승진)	공개경쟁채용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 내 * 근무성적평가 점수, 경력 평정 점수, 가점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조기에 관리자로 양성 • (대상) 능력·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된 6급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미해당, 응시연령* 등)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 18세 이상 (단,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각 부처에서 심사 • (방식) 심사대상자에 대해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근무실적·명부순위, 근무 경력 등을 고려, 대상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인사혁신처 주관 • (방식)¹⁾ 부처별 추천→성과심사(서류전형)→역량평가→면접→최종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인사혁신처 주관 • (방식) 1차(PSAT, 선택형 필기)→2차(논문형 필기)→3차(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 연수 (2년)를 경과해야 승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 연수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기간) 해당 없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로 전환을 위한 보편적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및 실무수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시키기 위한 중간 관리자 기본 교육과정 • 6주 온·오프라인 혼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 6주 오프라인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공채 합격자 대상 공직 가치, 공통직무교육, 정책 기획 실습 등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 16주 온·오프라인 혼합형
인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부처가 경력 및 역량과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소속 부처에서의 특별승진 원칙, 주요 정책추진 부서 근무를 지원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부처에 배치한 후 해당 부처의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직위 부여

주: 1) 5급 조기승진 선발 방식

- 부처추천: 업무성과 등을 고려, 각 부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후 추천
- 성과심사: 응시자격요건, 성과·직무수행능력, 공직가치 등 심사
- 역량평가: 역할평가·서류합기법을 통해 5급 정부표준 공통역량 평가
- 면접: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자료: 인사혁신처

현재 진행 중인 5급 조기승진자 선발은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2027년 초 교육을 거쳐 각 부처에 배치될 예정인바, 제도 도입 첫해의 선발 및 보직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 특징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초기 운영 결과를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향후 5급 조기승진제의 초기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승진제도와 구별되는 실질적 효과, 제도 간 정합성, 별도 교육 및 보직 관리에 따른 조직 내 형평성 및 수용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도입에 따른 교육예산 정비 및 사업의 신속 확대 검토 필요

가. 현 황

직원 역량개발 사업¹⁾은 전문 직무교육 등 소속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인적 인프라를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직원 역량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455	524	524	556	32	6.1
직원 역량개발 사업	46	46	46	129	83	180.4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지급	-	-	-	93	93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직원 역량개발 사업 중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지급 사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자율적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9,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²⁾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033-302의 내역사업

2)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예산안은 15만원×620명으로 산정된다.

나. 분석의견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사업(1인당 15만원)은 2027년 시범운영 대상을 3개 기관에서 20개 기관, 2028년 전 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기관 간 학습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에 수반하여 기존 교육훈련 예산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는 인공지능 등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자율적인 역량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학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한 후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교육훈련비, 시험 응시료, 도서 구입비, 연구·학습모임 비용 및 생성형 인공지능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6년에는 인사혁신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고, 2027년에는 소속기관 및 전문직공무원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 선정한 20개 기관³⁾으로 확대한 후 2028년부터 전 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 전원
지원 금액	연간 약 15만원 내외에서 기관별 예산에 따라 설정
지원 항목	직무 관련 교육훈련비, 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연구·학습모임 비용, 생성형 인공지능 구독료 등
지원 방법	공무원이 비용을 선결제한 후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관이 확인·지급
운영 기준	지원 항목·비율·기간 및 오·남용 제재 등에 관한 기관별 운영 기준 수립
추진 일정	2026년 3개 기관 시범운영 → 2027년 20개 기관 확대 → 2028년 전 기관 운영

자료: 인사혁신처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산업통상부, 새만금개발청,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공무원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편의성이 높고 개인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지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독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활용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인별 자기주도학습비 계좌 사업은 2026년 3개 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전 기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동 사업이 특정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2026년 시범운영 결과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간 학습기회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련비, 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생성형 AI 구독료 등의 자기주도학습비 계좌의 주요항목은 기존에도 업무 및 교육 지원 예산을 통해서도 지원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교육훈련 지원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¹⁾은 공무원에게 가계 자금을 대출하여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당초 계획 대비 780억원이 감액된 4,37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A)	수정		B-A	(B-A)/A
공무원연금대부(용자)	529,973	515,000	-	437,000	△78,000	△15.1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나, 사업목적과 실제 대부 수요, 타 직역연금의 유사 사업 및 그동안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동 사업에 대하여 정책 배려군을 위한 행복도약 기능은 유지·강화하되 시중은행과 기능이 중복되는 일반대출은 조정하고, 선착순 방식의 신청·배분 방식과 채권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7년도에 일반대출은 979억원(43.5%) 감액된 반면 행복도약대출은 199억원(7.1%) 증액되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2-322

[2026년도 및 2027년도 공무원연금대부 대출 유형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계획	2027 계획안	증감(금액)	
			금액	증감률
일반대출	224,900	127,000	△97,900	△43.5
행복도약대출	280,100	300,000	19,900	7.1
청년대출	10,000	10,000	-	-
합 계	515,000	437,000	△78,000	△15.1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그러나 사업목적과 대부 수요,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국회 논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대부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된 반면 대부 수요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 수요와 사업목적에 고려하여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대부 규모는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2021년 9,500억원에서 2027년 계획안 4,370억원으로 5,130억원(54.0%) 감소하였으며, 대부 인원도 2023년 34,060명에서 2027년 19,564명²⁾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공무원연금대부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대부 규모	9,500	7,500	7,500	6,500	5,300	5,150	4,370
대부 인원	38,385	30,120	34,060	29,560	22,934	23,955	19,564
이자수익(수익률)	476(2.5)	702(3.4)	935(4.5)	837(4.0)	793(3.9)	-	-

주: 2026년은 대부 인원은 예상 인원이고 2027년도는 계획상 인원임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반면, 대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대부는 분기별 선착순으로 운영되어 매년 재원이 소진되고 있으며,³⁾ 2025년 1분기에는 배정된 1,300억원이 시행 당일 모두

2) 2027년도 예산은 산출내역상 건수이다.

3) 공무원연금대부는 분기별로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2023~2025년 집행률은 매년 99.9%이다.

마감되었고, 행복도약대출의 시행 당일 최대 동시접속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3배 증가하였다. 공무원 총조사에서도 가계·주택자금대부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⁴⁾

둘째, 유사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대부의 적절한 지원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업은 각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생활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사업방식이 유사하고, 일반 생활자금과 함께 출산·육아 등 정책 배려 대상을 위한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배정 규모도 각각 5,300억원과 5,246억원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은 ‘사업개선’ 평가를 받아 2027년 계획안이 전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된 반면,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은 ‘감액’ 평가를 받아 감액되었다.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대부(공무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대여(사학연금공단)
사업목적	공무원의 생활 안정 및 공무원연금기금 증식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교직원 복리향상에 기여
평가결과	감액	사업개선
주요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도약 기능 유지 또는 강화, 시중은행 기능과 중복되는 주택 및 생활자금 대출은 조정 필요 선착순 방식은 접근성 측면의 구조적 한계로 신청·배분 방식 검토 필요 채권관리 강화 조치와 성과를 계량화하여 환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집행률 100%,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00% 미달 한 지표는 최근 감소 추세로 성과제고 노력 필요 성과지표가 모두 과정지표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보완 필요
2027년 계획안	4,370억원(780억원 감액)	5,526억 900만원(전년동)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2023년 제12차 공무원 총조사에서 공무원이 우선 희망하는 연금복지사업 중 가계·주택자금대부의 응답 비율은 14.9%로 2018년(9.2%) 대비 5.7%p 증가하였다.

그런데 대부대상자 수를 고려하면 두 사업의 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2026년 기준 재직자 1인당 대부 규모는 공무원연금대부가 약 39만 9,000원으로 사학연금 생활안정자금대여(약 167만 5,000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2027년 계획안 기준으로는 약 33만 6,000원으로 감소한다.⁵⁾ 또한 일반대출 한도도 2002년 이후 2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학연금(6,000만원)보다 낮다.

[공무원연금대부 및 사학연금 생활안정자금대여의 1인당 대부 규모 비교]

구분	2026년 계획(a)	대부대상(재직자)(b)	1인당 규모(a/b)	일반대출 한도
공무원연금대부	5,150억원	약 129만명	399천원	2천만원
사학연금 생활안정자금대여	5,526억원	약 33만명	1,675천원	6천만원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사학연금공단)

특히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의 평가에서는 신청 대비 지급률이 20~30%대에 머물러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⁶⁾ 선착순으로 재원이 소진되는 공무원연금대부 사업도 수요 여건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의 성격과 수요 여건이 유사한 만큼, 평가 결과와 편성 규모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감액 권고와 함께 그동안 국회가 제시한 대부 수요 반영 및 운영방식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시중은행과 기능이 중복되는 일반대출의 조정과 함께 신청·배분 방식 및 채권관리 개선을 요구하였다. 반면 국회는 그동안 대부재원의 조기 소진과 높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액 편성이나 대부재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대출이율 및 연체관리 등 운영방식의 개선도 주문하여 왔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감액 권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회 논의와 실제 대부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일반대출의 감액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2027년 계획안(4,370억원)을 2025년 재직공무원 수(1,298,772명)로 나누면 1인당 약 336천원이다.

6) 사학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대여의 신청 대비 지급률은 2024년 31.7%(신청 165,111건, 지급 52,361건), 2025년 25.9%(신청 172,285건, 지급 44,699건)이다(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평가의견서).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구분	주요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	<p>[지적사항] 대부액이 조기소진되어 2017년부터 연례적으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 편성함</p> <p>[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대부수요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과의 수익률 비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기금 계획액 변경을 최소화할 것(제도개선)</p>
2020회계연도 결산	<p>[지적사항] 연도별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 183억 8,000만원, 2018년 194억 4,300만원, 2019년 222억 300만원, 2020년 195억 7,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장기체납 무자력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대부금 결손처분으로 불납결손액도 2,900만원 발생하였음</p> <p>[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신용점수가 낮은 공무원의 대출 제한 또는 대출 한도 조정, 미납자에 대한 급여원천공제 요구 등 더욱 철저한 연체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것(제도개선)</p>
2021회계연도 결산	<p>[지적사항] 대부 유형은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대출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에 따라 분기별로 대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부 시행일 당일 또는 근무일 기준 익일에 신청이 마감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p> <p>[시정요구사항] 인사혁신처는 사업예산의 증액 또는 주택자금대출의 배정액 상향을 통해 대부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p>
2021회계연도 예산안 (행정안전위원회)	<p>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대부사업의 사업목적과 시중은행 대출이율을 고려하여 연금대부 대출이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부대의견)</p> <p>※ 편성 당시 연금대부 대출이율이 시중은행 대출이율보다 높은 점을 고려</p>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정부의 결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재편집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대부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공무원의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사업목적과 대부 수요, 타 직역연금의 대부사업과의 비교, 그 동안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15.3%) 감소하였다.

[202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45	1,299	1,299	1,100	△199	△15.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4,418억 8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29억 3,700만원(8.9%) 감소하였다.

[202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15,584	484,745	484,745	441,808	△42,937	△8.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등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 분야 예산이 감소하였고(2026년 1,529억 800만원 → 2027년 969억 8,900만원), ②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6년 5,200만원 → 2027년 53억 3,800만원), ③ 재외선거 관리체계 구축 및 선거 준비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4,800만원 → 2027년 74억 7,200만원), ④ 정당보조금 예산은 선거 일정에 따른 지급 소요 변화 등으로 감소하였다(2026년 1,169억 8,700만원 → 2027년 547억 7,400만원).

202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상투표 이용 환경이 일반팩스에서 전자팩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일반팩스 이용 선박의 통신환경 등을 파악하여 관련 장비의 구축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상투표시스템을 전자팩스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탁선거경비의 대부분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고, 향후 의무위탁선거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A-WEB 운영지원 예산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감축 권고에 따라 2026년 감액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자체재원 확충 실적과 실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4억 1,100만원 규모이다.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은 각 시·도위원회의 선거관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각급 위원회 간 교류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외부진단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1개)	선거관리역량강화	411

주: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재보궐 선거관리 및 선거여론조사심의 등이 있다.

① 국회의원선거관리 및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년도에 필요한 준비 예산이 반영되었고, ②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은 재·보궐선거의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증액되었으며, ③ 선거여론조사심의 사업은 선거여론조사 법정사무 관리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2027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4개)	국회의원선거관리	52	52	5,338	5,286	10,165.4
	재외선거관리	48	48	7,472	7,424	15,466.7
	재보궐선거관리	388	388	1,564	1,176	303.1
	선거여론조사심의	337	337	1,217	880	261.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상투표의 전자팩스 방식 일원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 검토 필요

가. 현 황

선상투표관리 사업¹⁾은 투표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25억 8,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선상투표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5,338	5,286	10,165.4
선상투표관리	-	-	-	2,582	2,58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선상투표관리 예산안에는 선상투표 사무보조원 인건비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25억 7,500만원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027년 중 선상투표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팩스 중심으로 선상투표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일반 팩스 수신을 위한 야날로그 팩스서버 구축비도 함께 반영하였는데, 일반팩스 이용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의 내역사업

률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0.7%(수신 선원 기준)까지 낮아졌으므로, 일반팩스 이용 선박의 통신환경 등을 파악하여 관련 장비의 구축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상투표시스템을 전자팩스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상투표는 2012년 도입 당시 선박에 설치된 일반팩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선박의 통신환경이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전송하는 전자팩스 방식이 도입되어 일반팩스와 병행 운영하고 있다.²⁾

그런데 선박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일반팩스를 이용한 선상투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한 선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278명(8.9%)에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2명(2.1%),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19명(0.7%)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국내 선박의 일반팩스 회선 수도 2014년 3,323개에서 2024년 680개로 감소하는 등 일반팩스 이용을 위한 통신기반도 축소되고 있다.

[팩스 종류별 선상투표 신고 및 수신 현황]

선거	선원(명)				선박(척)			
	신고	수신			신고	수신		
		합계 (a+b)	전자팩스 (a)	일반팩스 (b)		합계 (c+d)	전자팩스 (c)	일반팩스 (d)
제20대 대선 (2022)	3,267	3,108	2,830 (91.1%)	278 (8.9%)	444	419	397 (94.7%)	22 (5.3%)
제22대 국선 (2024)	2,050	1,992	1,950 (97.9%)	42 (2.1%)	308	297	283 (95.3%)	14 (4.7%)
제21대 대선 (2025)	3,051	2,914	2,895 (99.3%)	19 (0.7%)	454	438	433 (98.9%)	5 (1.1%)

주: 비율은 각 수신 합계(선원 수 또는 선박 수) 대비 비중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

2)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선박의 일반팩스 회선 가입내역(KT SAT)]

(단위: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가입 회선 수	3,323	3,130	2,305	1,921	1,690	1,474	1,160	955	801	739	680
신규 회선 수	149	92	136	94	132	58	617	174	201	97	14
해지 회선 수	530	285	961	478	363	274	931	379	355	159	73

주: 위성통신사업자 중 국내 선박의 kt sat 점유율은 70~80% 정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선박 통신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8년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선상투표시스템 구축 시 전자팩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선상투표 관련 일반팩스 및 전자팩스 기능 비교]

구분	일반팩스	전자팩스
송수신 방식	종이 투표지를 팩스기에 넣어 전화·위성통신 회선으로 송수신	투표지를 스캔하여 인터넷·서버 기반 시스템으로 송수신
투표지 처리	팩스 장비를 통해 투표지를 직접 출력	서버가 투표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
비밀투표 보장	선관위의 쉼드팩스로 기표내용을 가린 상태에서 봉합·출력	기표정보를 서버에서 분리·보호하고, 쉼드팩스로 봉합·출력
전송 품질	종이 걸림, 흐린 출력 및 통신 오류 등 장비 상태의 영향을 받음	파일 전송을 통해 투표지의 식별·전송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이용 여건	선박에 팩스기와 전용 통신회선 필요	선박 PC·스캐너와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 가능
시스템 관리	개별 팩스 장비와 회선 중심으로 관리	투표지 송수신 내역을 중앙 서버에서 통합 관리 가능
도입 필요성	장비 노후화와 팩스회선 감소로 이용 기반이 축소되는 추세	위성인터넷 등 선박 통신환경의 전산화에 대응하고 선상투표의 안정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를 위해 2027년도에 35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5억 8,200만원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선상투표시스템 재구축 사업 소요예산]

항목	세부내역	세목	소요액(백만원)
선상투표 시스템 재구축 연구용역	선박선거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260-01	1,058
	PM, 보안 관련 분석·기획·설계		
선상투표 전용망 구축	일반팩스 위성통신 전용망	210-02	77
선상투표 FAX, DB, 보안솔루션 구축	FAX 서버 도입(라이선스 포함)	430-01	1,424
	DBMS DB(오라클), 이중화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L2,L3스위치, 전송장비)		
	하드웨어(Web, DB서버)		
	하드웨어(BGAN, VPN장비)		
선상투표 홈페이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430-01	16
합 계			2,575

주: 선상투표 사무보조원 인건비 700만원은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해당 사업 예산안에는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비와 함께 일반팩스 위성통신 전용망 등 일반팩스 수신을 위한 아날로그 팩스서버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³⁾에서 선상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팩스만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이 일부 남아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반팩스 수신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련 장비를 사용해 왔으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기존 장비의 계속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선상투표)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4) 다만, 같은 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2항은 선상투표신고에 사용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선원의 참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도 이용 실적과 선거관리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시스템을 전자팩스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일반팩스 수신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이러한 개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 일반팩스 이용률이 매우 낮고 관련 통신기반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므로, 일반팩스만 이용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자팩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환경을 지원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선박 인터넷 환경 개선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등 전자팩스로의 단계적 전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에서의 일반팩스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선상투표시스템을 전자팩스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위탁선거관리 사업¹⁾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7,500만원(150.9%) 증액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위탁선거관리	128	116	116	291	175	150.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리경비 2억 5,3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나. 분석의견

위탁선거경비의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고, 향후 의무위탁선거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동 사업 예산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2)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선거의 준비·관리, 제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위탁단체 부담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세입세출예산 외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고 있다.³⁾

「국가재정법」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⁴⁾ 그런데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규칙에서 산출·납부·집행·정산·반환 절차를 정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산출·납부·집행·정산·반환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다.

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특히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2027년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전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2023년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는 381억 6,300만원, 집행액은 340억 2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세출예산으로 집행된 위탁선거관리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으로, 위탁선거 관련 전체 집행액 중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하였다.⁵⁾ 2027년에도 국가부담분 2억 9,1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준비·관리에 드는 수백억원 규모의 경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위탁선거 세입세출 외 운용 규모]

(단위: 백만원, 천,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출	예산액(a)	179	226	501	240	131
	결산	114	119	488	230	128
세출 외 (위탁선거 납부)	건수	37	265 ¹⁾	1,376 ²⁾	39 ³⁾	1,190 ⁴⁾
	납부액(b)	1,237	3,703	38,163	1,051	38,835
	집행액	908	2,387	34,002	700	22,311
	반환액	329	1,316	4,161	351	16,524
	집행률	73.4	64.5	89.1	66.6	57.5
세출 외 비율(=b/(a+b)) ⁵⁾		87.4	94.2	98.7	81.4	99.7

주: 1) 지방체육회장 선거 244회 포함

2) 동시조합장 선거 1,347회 포함

3) 조합장 23회, 국립대학 총장 7회, 체육회장 8회, 중앙회장 1회

4) 동시이사장 선거 1,101회 포함

5) 세출 외 비율은 예산액과 납부액 기준이며, 본문의 비중(1.4%)은 집행액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2023년 위탁선거관리 사업(세출예산) 집행액 4억 8,800만원과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액 340억 200만원을 합한 금액 대비 비중이다.

[최근 5년간 위탁선거 관리 현황(2026.7.31. 현재)]

(단위: 건)

위탁 유형	선거명		최근 5년간 위탁선거 관리 현황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2,922	265	1,376	39	1,190	52
의무	동시조합장		1,347		1,347			
	개별 조합장	농협(축협포함)	71	7	5	18	35	6
		수협	5	2	1	1	1	
		산림	9	3		4	2	
	동시이사장		1,101				1,101	
	개별이사장		72				30	42
	국립대학 총장		39	7	14	7	10	1
	대한체육회장		1				1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				1	
	지방체육회장		267	244	6	8	7	2
	중앙 회 장	농협	1			1		
		수협	1		1			
		산림조합	1		1			
		새마을금고	2		1		1	
		신협	1					1
		중소기업	-					
임의	기타		3	2			1	

주: 기타는 읍면초생산업동조합중앙회장선거, 국기원장선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재정통제에서 벗어나 운용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위탁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⁶⁾

2029년에는 제2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의무위탁선거가 확대되고 있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6회계연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5, 259쪽

[향후 10년간 위탁선거 실시 일정]

연도	선 거 명	선거시기	비 고
2026	2026 지방체육회장선거	2026년 12월	
2027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7년 3월	
2029	제2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29년 3월	
2029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장선거	2029년 11월	최초 실시
2030	2030 지방체육회장선거	2030년 12월	
2031	제5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31년 3월	
2033	제3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33년 3월	
2033	제2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장선거	2033년 11월	
2034	2034 지방체육회장선거	2034년 12월	
2035	제6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35년 3월	

주: 1. 전국 단위 의무위탁선거 기준, 국립대학총장임용후보자선거 및 각 조합중앙회장 선거 제외

2. 신협이사장동시선거 의무위탁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023.10. 시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동안 국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위탁선거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14일 공포·시행되어 국회의 사후적 재정통제는 일부 강화되었다. 다만, 위탁단체 부담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⁷⁾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설명자료에서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담은 법률안(의안번호 2207939 호)의 입법을 지원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 법률안은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안반영 폐기 되었음(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자료, 262쪽). 이후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2401호)이 2025.8.27. 제출되어 2025.11.12.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후 계류중이다.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관련 국회 시정요구 현황]

구분	시정요구사항 및 지적사항
2019회계연도 결산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법령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 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시정)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행정안전 위원회에 보고(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집행 투명성 제고(제도개선)
2023회계연도 결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 마련 방안 검토(제도개선)
2024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 마련(제도개선)
2025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위원회)	최근 5년간 위탁선거경비의 연도별 수입, 집행 및 잔액 현황과 별도계좌 관리방식을 공개하고, 해당 자금을 국가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입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산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제도 개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에 대한 재정통제를 확보하려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 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⁸⁾

8)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 법적근거 및 입법지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수용하며, 위탁선거경비의 재정통제 강화를 위해 산출기준 및 결산서 국회 제출·보고 외에도 자체 예산집행심의회에서의 경비 운용 회계 심의 및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감사·점검 등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현 황

A-WEB 운영지원 사업¹⁾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근거하여 A-WEB 사무처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00만원(27.0%)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A-WEB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제교류협력	908	995	995	934	△61	△6.1
A-WEB 운영지원	729	586	586	744	158	27.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A-WEB 운영지원 예산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감축 권고에 따라 2026년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목적수행경비를 증액 편성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자체재원 확충 실적과 실제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명식 예산분석관(kunajo@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132-345의 내역사업

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 명칭: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목적: 선거관리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 회원기관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지원
☐ 설립: 2013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설립
☐ 조직: 총회(2년 주기), 집행이사회(20개 기관, 매년), 사무처(인천 연수구 송도)
☐ 회원: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 등
☐ 주요 활동
-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 선거 참관,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 재원: 회원기관의 회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WEB 운영지원의 증액은 주로 목적수행경비 1억 5,500만원이 순증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목적수행경비는 정기회의 개최 지원 7,000만원,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4,000만원, 회원기관 선거법 개선 장려 및 자문 2,000만원, 세계선거제도 비교분석 1,000만원, 펀드레이징 및 홍보활동 1,000만원, 선거기관관계자 미디어 역량개발 연수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7년은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로, 정기회의 개최 지원 7,000만원은 집행이사회 개최 지원 경비이다.

[A-WEB 운영지원 예산 구성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본예산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인건비	439	439	439
경상경비(사무실운영비)	238	147	150
목적수행경비(A-WEB 사업비)	59	-	155
합 계	736	586	7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하여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사업개선)에서 A-WEB의 최소한의 운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재고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 순감되었던 목적수행경비를 다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A-WEB 운영지원 사업은 2022년과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모두 ‘감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5년 평가는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지 않으므로 펀드레이징을 강화해 보조금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은 1억 5,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출구조조정 실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동 사업이 국회 지적사항에 따른 연례적 감축 계획을 이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업개선’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평가는 2026년도 A-WEB 보조금 예산은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운영지원 보조금을 감액할 경우 A-WEB의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보조사업 실적 자체가 사라지고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재 예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와 최소한의 운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재고하는 사업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WEB 운영지원 관련 사업 평가 결과]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행률이 낮으며, 국회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3년 예산 일정수준 감축 • 사업방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EB 운영지원” 내역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도전적 목표지표로 사업방식 변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이 높지 않고 재정수요의 적정성 또한 다소 미흡하므로 펀드레이징 강화로 보조금 규모 감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EB의 자체재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연회비 인상 등 보다 구체적인 자체재원 증대 방안 마련으로 적극적인 자생력 강화 노력 필요 - 현재 A-WEB의 운영 예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와 최소한의 운영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재고하는 등 사업개선 노력 필요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편집

이와 같은 경과를 고려해 볼 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된 목적수행경비를 2027년에 다시 편성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당초 감액의 취지 및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국고보조 의존도 완화라는 평가 방향과 다소 상충할 수 있으므로,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방향이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WEB 재정구조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527	1,447	1,041	1,253	1,106
ODA제외(A)		1,083	1,003	1,041	1,253	1,106
국고 보조금	ODA사업	444	444	-	-	-
	운영 지원	929	869	782	912	736
자체재원 (B)	연회비	154	134	259	341	370
	기부금	-	-	-	-	-
자체재원 비율(B/A)		14.2	13.4	24.9	27.2	33.5

주: 1. 연회비는 기관별 1만 USD, 2017년부터 연회비 납부 개시하였으며, 환율에 따라 금액 및 비율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2. 2025년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자체재원 확충 실적과 비 총회 연도의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1

현황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7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	-	-	472,406	472,40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6년 하반기 개청에 따른 본청 및 전국 6개 지방청의 안정적인 청사 확보, 청사 리모델링 및 수사실 등 필수 사무·시설 구축을 위하여 청사 임차료·관리비 및 공사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708억원), ②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척결을 위한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24.8억원), ③ 첨단·지능형 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및 AI 수사 인프라 구축, 수사기법 연구·개발이 신규 편성되었고(+145.3억원), ④ 형사사법절차 연계를 위한 중수청 맞춤형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72.9억원), ⑤ 인권친화적 조사 및 수사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시설·장비 등 환경 구축, 피의자 진술 녹음 및 현장 영상 녹화장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20.5억원), ⑥ 가상자산 추적 전문성 강화 및 전국 전담반 수사활동 지원, 국제 자금세탁 방지 공조를 위해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제 자금세탁 방지 공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신규 편성되었다(+7.1억원).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제에 따라 수사관 등 총 2,874명의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2027년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2026년 10월 2일) 기준 현원이 1,900명에 불과(현원 비율 66.1%)하므로, 충원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업무 수행 및 경찰청과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이전하고 받을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기 위해 ISP 수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계획상 중대범죄수사청 KICS는 2029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이전 서면 송달과 온나라 시스템 활용 및 경찰청 KICS 공동활용 업무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 4,72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① ‘중수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및 ‘수원 중수청 청사 이전·공사비 등’ 사업은 ‘26년 하반기 개청에 따른 본청 및 전국 6개 지방청의 안정적 청사 확보, 청사 리모델링 및 수사실 등 필수 사무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② ‘디지털·사이버 수사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능화·고도화되는 가상자산·사이버·자본시장 범죄 추적을 위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및 빅데이터 기반 AI 수사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③ ‘형사사법절차 연계를 위한 중수청 맞춤형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은 공소청, 경찰, 법원 등 유관 사법기관 간 원활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연계를 위한 중수청 전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동 환경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3개)	중수청시설운영	96,182
	국제협력지원	771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9,476
	중대경제범죄수사	56,187
	반부패공공범죄수사	8,171
	마약범죄수사	10,280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3,922
	과학수사역량강화	13,219
	중수청업무정보화(정보화)	13,488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5,616
	중수청운영인건비(총액)	229,929
	중수청운영기본경비(총액)	8,482
	중수청운영기본경비	16,683
	합 계	472,406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중수청 인력의 적기 충원 및 관리 필요

가. 현 황

중수청운영인건비(총액)¹⁾은 중수청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총 2,92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299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중수청운영인건비(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수청운영인건비(총액)	-	-	-	229,929	229,929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나. 분석의견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제에 따라 수사관 등 총 2,874명의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2027년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2026년 10월 2일) 기준 현원이 1,900명에 불과(현원 비율 66.1%)하므로, 충원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관 총 2,567명, 일반직 공무원 268명 및 경찰공무원 39명 등 총 2,874명을 운용하는 것으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직제 편성 인원(2,874명) 및 청원 경찰 48명²⁾ 총 2,922명에 대하여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001-100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에 따른 정원]

(단위: 명)

구분	수사관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합계
중대범죄수사청	333	63	-	396
소속기관	2,234	205	39	2,478
합계	2,567	268	39	2,874

주: 청원경찰 48명은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

자료: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재구성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³⁾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부터 2026년 8월 7일부터 20일까지 1차 특례 임용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 임용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당일에는 특례임용 지원자 중 1,837명과 행정안전부 등 다른 기관의 공무원 24명을 포함하여 수사관 및 일반직공무원 총 1,861명과 경찰공무원 39명을 합산한 1,900명으로 출범하여 2027년 예산안의 인건비 편성 인원 중 청원경찰을 제외한 총 2,874명 중 1,900명(66.1%)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2) 중대범죄수사청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2027년부터 임용 및 운영할 예정이다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4) 청원경찰의 경우 2026년 10월 기준 아직 채용공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27년 12개월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기준 운영 현황]

구분	정원(A)	현원(B) (B/A)	결원(A-B)
수사관	2,567명	1,689명	878명
일반직공무원	268명	172명	96명
경찰공무원	39명	39명	-
합계	2,874명	1,900명 (66.1%)	974명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특례임용을 통한 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은 미충원된 인력은 향후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일 기준 별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⁵⁾ 이미 검찰청의 두 차례의 특례임용을 받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추가 특례임용 소요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용의 경우 2026년 검사 채용은 약 5개월, 검찰공무원은 약 4개월~9개월의 기간이 채용 절차에 소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026년 10월 2일) 이후에 채용계획을 마련해 절차를 시작하고 유사한 절차를 거칠 경우 2027년 중에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7년 초에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에 따른 인력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12개월 근무를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 예산 중 일부가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⁶⁾

5) 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경력채용 TF를 구성해 경력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 이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은 추가 특례임용은 일반 채용 절차에 비해 단기간이 소요되고, 경력경쟁채용은 신규 공개경쟁채용보다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2026년 검사 및 검찰공무원 채용 소요기간]

구분	검사	5급공채	7급공채	9급공채
원서접수	'26.3.	'26.1.	'26.5.	'26.2.
1차(필기)시험	'26.5.~8.	'26.3.	'26.7.	'26.4.
2차(필기)시험		'26.7.	'26.9.	
면접시험		'26.10.	'26.11.	'26.5.
최종합격자 발표	'26.8.	'26.10.	'26.12.	'26.6.
소요기간	약 5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4개월

자료: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자료를 재구성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은 특례임용을 통한 실제 인력 확보 현황과 향후 채용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인력 충원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인건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중수청 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사업¹⁾은 중수청 자체 수사업무 전자화 추진계획을 통해 수사환경 대응력 강화 및 행정업무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억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중수청 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수청 업무 정보화(정보화)	-	-	-	13,488	13,488	순증
중수청 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	-	-	3,073	3,073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사업 내 중수청 자체 KICS 구축 사업은 중대범죄수사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을 구축하기 위한 ISP 수립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중수청 자체 KICS 구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내역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수청 자체 KICS 구축	-	-	-	326	326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3-500

나. 분석의견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업무 수행 및 경찰청과 공소청에 관련 자료를 이전하고 받을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기 위해 ISP 수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계획상 중대범죄수사청 KICS는 2029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이전 서면 송달과 온나라 시스템 활용 및 경찰청 KICS 공동활용 업무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이 공소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공소청에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고 있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KICS ISP를 수립하고, 해당 ISP에 따라 2029년에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계획에 따라 KICS가 구축되더라도 2029년까지는 자체 KICS 시스템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²⁾

[중대범죄수사청 자체 KICS 구축 계획]

ISP 수립	→	구축	→	구축 및 완료
2027년		2028년		2029년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은 자체 KICS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수기 장부 활용, 온나라 시스템 및 경찰청의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³⁾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2) 중대범죄수사청은 ISP 수립 완료 후 그에 따라 KICS 구축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개청일(2026년 10월 2일)에 사건 접수 및 배당 기능 등을 구축하여 운용 중(1단계 구축)이고, 사건처리, 통계 등을 포함한 기능은 2026년 12월 초에 운용(2단계 구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면으로 수기 장부를 활용하는 방식은 자료의 작성·전달·접수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유실이나 훼손 위험이 있고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은 본래 정부기관 간 일반 행정문서를 유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수사·기록·증거자료를 구조화하여 관리하는 KICS와 같은 형사사법업무 전용 시스템이 아니다. 이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더라도 사건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검색하는 것이 어려워 담당자가 개별 문서를 수작업으로 확인·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경찰청 KICS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 역시 서버·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운영은 경찰청에서 담당하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처리를 위한 KICS 시스템 개선 및 기능 변경 시 경찰청에 협조 요청 및 운영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처럼 자체 KICS 구축 완료 전까지 수기 장부 활용, 온나라시스템 활용 및 경찰청 KICS 공동활용 방식은 업무 효율성 저하, 보안상 취약점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구축이 지연될수록 그동안의 업무 차질 및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자체 KICS 구축 전 업무 비효율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 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입은 없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2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5억원(84.7%) 증가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5,242	12,408	22,919	10,511	84.7

주: 총계 기준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나. 재정구조

2027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없다.

2027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6년중 과거사 정리법 전부개정('26.2.5)을 통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26.2.26.)하면서 2026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2027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 ① 진실규명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2026년 1,763백만원 → 2027년 4,758백만원), ② 조직 확대 소요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별정직 및 전문 임기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2026년 3,575백만원 → 2027년 10,403백만원), ③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소폭 증액 편성하였다.(2026년 7,070백만원 → 2027년 7,758백만원).

2027년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은 없으며 ①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진화위운영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② 조사인원 증원에 따라 진화위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진화위운영	-	1,447	4,758	3,311	229
	진화위인건비	-	3,575	10,403	6,828	191
	진화위기본경비	-	7,070	7,758	688	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